

2008 공통교재

세외수입



시·도 공무원교육원

세 외 수 입

시 · 도 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윤리헌장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오늘도 민족중흥의 최일선에 서서 겨레와 함께 일하며 산다.

이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위해 봉사한다.

충성과 성실은 삶의 보람이요, 공명과 정대는 우리의 길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 앞에 다하여야 할 숭고한 사명을 민족의 양심으로 다지며,
우리가 나가야 할 바 지표를 밝힌다.

우리는 민족사적 정통성 앞에 온 신명을 바침으로써 통일 새시대를 창조하는
역사의 주체가 된다.

우리는 겨레의 엄숙한 소명앞에 솔선 헌신함으로써 조국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의 선봉이 된다.

우리는 창의적 노력으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민주한국을 건설하는
국가의 역군이 된다.

우리는 불의를 물리치고 언제나 바른 길만을 걸음으로써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국민의 귀감이 된다.

우리는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국리민복을 추구함으로써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겨레의 기수가 된다.

공무원의 신조

1.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1. 국민에게 정직과 봉사를
1.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1. 직장에선 경애와 신의를
1.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머 리 말

그 동안 국가 경제성장과 지방분권 정책에 힘입어 지방재정은 100조원 규모로 크게 성장했다. 지방재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이 좌우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러한 지방재정의 중요성과 역할 변화에 맞춰 지방재정·세제분야의 전면적인 혁신을 통해 재정운영의 틀을 정비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과거 통제위주의 지방재정 운용방식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선진형 재정운용시스템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으며 사업별 예산제도와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정착되면 그 변화의 폭과 속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민선자치 10년을 지나면서 이러한 중앙정부의 노력과 자원만을 가지고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방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 가장 살기 좋은, 매력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스스로의 힘으로 지역의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원을 효과적으로 마련하고 운영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세외수입 업무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세외수입은 세원의 지역적 편중 등으로 중장기적 노력이 요구되는 지방세 개편과 달리 자치단체 노력 여하에 따라 효과적으로 지방의 경영전략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며, 간접적으로는 다양한 경영수익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고용기회 창출, 공공시설정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 동안 행정자치부는 세외수입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수입 기반 확충을 위해 두 가지 큰 노력을 해왔다. 하나는 지난 2003년부터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전 자치단체에 보급하여 세외수입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치단체간 수수료 격차를 줄이고 원가이하로 징수되고 있는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대통령령인 표준요금 규정을 제정하여 세외수입 기반을 확충한 것이다.

이러한 성과와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2008년에도 세외수입 업무의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220개 자치단체에 보급 완료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쓰기 편하고 활용가치가 높은 살아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자 한다. 현행 시스템은 CS방식의 특별회계가 관리되지 않는 점 등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포털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고자 예산확보 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자치단체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끊임없이 관련정보와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완벽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수수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06년 제정에 이어, '07년 개정을 통하여 현행 16종의 수수료를 통일함으로써 미약하나마 자치단체 재원확충에 기여하고 있고, '08년에는 현실화 대상 수수료 범위를 현재 16종에서 30여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치단체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관련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세외수입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규정에 반영되지 않은 다른 수수료의 경우도 원가분석 등을 통해 자체적인 현실화 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세외수입 업무집행에 있어 항상 걸림돌이 되었던 법령의 미비로 자치단체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았다. 그나마 지난 11월 23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과태료에 대한 법이 마련되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지만 세외수입 전 분야에 대한 일반법도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면 이르면 '08년도에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혁신성과를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 한다. 고객인 주민의 입장에서 세외수입 부과·징수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점검하여 관련 중앙부처,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제도 개선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민선자치 10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맞춰 자치단체 스스로 세외수입분야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정착시켜 나갈 때, 진정한 의미의 지역살림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고 자치시대 재정전문가로서 역할과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제 1 장 세외수입 총론	3
제1절 세외수입의 개요	3
1. 세외수입	3
2. 세외수입의 분류	5
제2절 세외수입의 종류와 내용	7
제3절 세외수입의 특징	18
제4절 세외수입의 과징절차	19
제 2 장 지방세외수입 각론	54
제1절 경상적 세외수입	54
1. 재산임대수입	54
2. 사용료	81
3. 수수료	99
4. 사업 수입	111
5. 징수교부금 수입	115
6. 이자수입	128
제2절 임시적 세외수입	133
1. 재산매각수입	133
2. 이월금	149
3. 융자금 원금수입	151
4. 부담금	152
5. 잡수입	158
6. 과년도수입	173

제 3 장 세외수입 실무	176
제1절 체납처분	176
1. 체납처분의 개념	176
2. 체납처분의 근거	176
3. 압류의 요건	176
4. 압류의 제한과 금지	177
5. 압류대상재산	178
6. 압류의 절차	179
7. 압류금지 재산	181
8. 압류물건과 처리방법	182
9. 압류의 효력	185
10. 압류의 해제	186
제2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187
1. 교부청구	187
2. 참가압류	189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192
1. 매각의 의의	192
2. 매각의 성질	192
3. 매각의 방법	193
제4절 납부의무의 소멸	197
1. 납부의무의 소멸	197
2. 제척기간의 경과	197
3. 소멸시효의 완성	198
제5절 결손처분	202
1. 결손처분의 의의	202
2. 결손처분의 요건 및 절차	202
3. 사후관리	206
《 부 록 》	
1. 지방세외수입관련 판례	208

제1장 세외수입 총론

제1절 세외수입의 개요

1. 세외수입

가. 지방세외수입의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공공복리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하는 재원 즉 세입은 크게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체수입은 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며 의존수입은 중앙정부 또는 상위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각종 보조금과 교부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 세외수입과 지방세

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에서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을 세외수입이라 하였으므로 우선 지방세를 이해하고 나면 그 나머지가 되는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간주하여도 좋겠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헌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 헌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법률주의, 그리고 지방세법령과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재산 또는 수익 등에 대하여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인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이다.

지방세는 다시 그 세입의 귀속주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는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로 나누어지고, 기초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는 시세·군세·구세로 나누어진다.

2007. 1. 1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에는 모두 16종의 세목이 있으며, 그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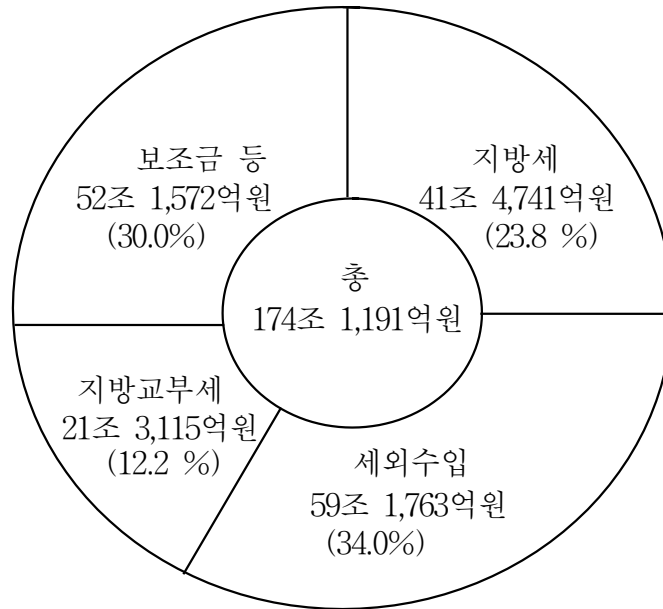
다. 자체수입과 의존수입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재정권한의 유무에 따라 이를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체수입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권을 행사하여 얻게 되는 수입을 말하고, 의존수입이라 함은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의 외부로부터 출연, 보조 또는 차입의 형식을 빌려 충당하는 수입을 말한다.

자체수입으로는 지방세와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이 있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국비·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재정조정교부금, 차입금 등이 있다.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총규모는 174조 1,191억원으로써 이를 구조별로 비율을 살펴보면 지방세 23.8%, 세외수입 34.0%, 지방교부세 12.2%, 보조금 등 30.0%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수입의 구조('07 세외수입 연감)



2. 세외수입의 분류

지방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제공하는 공물의 사용이나 서비스제공 등에 대하여 이용자나 수혜자에게 반대급부 또는 대가적 성격으로 징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가. 광 의

광의의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수입 중 자체수입에서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수입을 포괄한 수입이다. 따라서 광의의 세외수입에는 전입금, 이월금, 과년도수입 등 회계의 조작에서 생기는 수입도 포함된다.

행정자치부 '0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매뉴얼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구조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지방채수입으로 분류하고 있다.

나. 협의

위에서 말한 광의의 세외수입 중에서 행정기관 내부에서 회계조작 상으로 발생하는 전입금, 이월금 등과 같은 명목적수입과 당해연도에만 특별한 요인으로 세입이 이루어지는 기부금, 재산매각수입 등과 같은 임시적수입을 제외한 실질적 세외수입을 말한다.

협의의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의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수입(경영수익사업)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세외수입증대라는 경우의 세외수입은 협의의 세외수입을 말한다.

다. 최협의

최협의의 세외수입은 협의의 세외수입에서 특별회계 사업수입을 제외한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의 경상적 수입만을 지칭할 때에 사용하는 개념이다.

제2절 세외수입의 종류와 내용

1. 종 류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일반회계는 다시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특별회계는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으로 구분된다.

- 일반회계 : 주민의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 기능유지를 위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행정수요에 쓰이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말한다.
- 특별회계 : 지방직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설치하는 회계로서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한다.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

2.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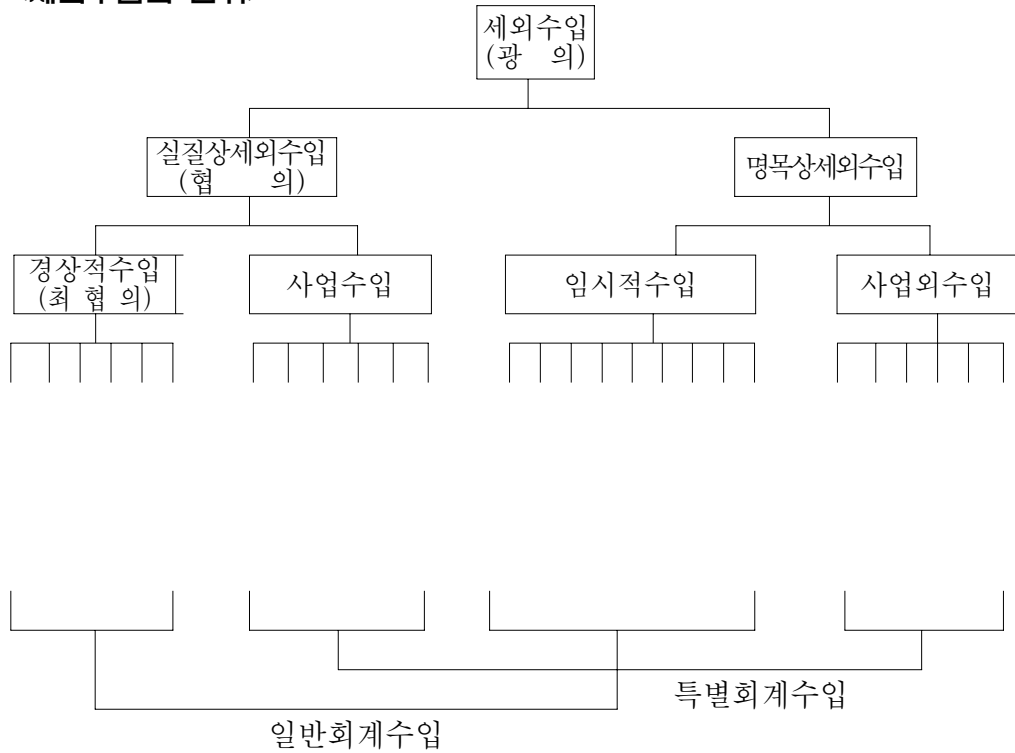
세외수입은 보통 수입의 규칙성을 기준으로 하여 경상적수입과 임시적수입으로 구분된다.

경상적수입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이 이에 해당되며 세외수입중 수입원이 가장 많고 지방자주재원확충에 기여를 많이 하는 수입이다.

임시적수입은 불규칙적이고 일시적인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융자금, 기부금, 부담금, 전입금, 지방채, 과년도수입, 잡수입 등 예측하기 어려운 수입을 말한다.

세외수입의 종류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외수입의 범위>



가. 경상적수입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회계년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 세외수입 중 수입원이 가장 많고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수입이다.

(1) 재산임대수입

재산임대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재산임대수입에는 국·공유재산을 매각·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은 제외되며, 지방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국유재산 임대수입과 공유재산임대 수입으로 구분되는데 국유재산임대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유토지(임야포함) 및 건물임대수입을 말하며, 공유재산임대수입은 지방재정 법령 및 관련조례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행정·보존재산의 사용료와 잡종 재산의 대부료를 말한다.

(2) 사용료수입

사용료는 공공시설의 이용이나 재산의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수입을 말하며 이 경우 공공시설이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사용료는 개별적 보상원칙에 의해 강제징수 하는 점에 있어서는 수수료와 같으나 수수료가 자치단체의 특별한 활동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에 부과하는데 대하여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을 개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받는 경우에 부과하는 점이 다르다.

지방세입 예산과목 상 사용료수입은 도로, 하천, 하수도, 가축시장, 도축장, 운동장, 공연장, 복지회관, 시민회관 등 공공시설에 대한 입장료 및 사용료가 있다.

(3) 수수료수입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제공한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가치를 말하며(지방자치법 제137조) 호적, 주민등록, 인감, 도시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등 제증명 발급에 대한 수수료수입과 보건소의 수입 시·도,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관한 증지수입,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등이 있다.

(4) 사업장 수입

사업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시행하면서 징수하는 수입으로써,

사업장생산수입, 주차요금수입, 통행료수입, 청산금수입, 분담금수입, 매각사업 수입, 기타 사업수입이 있다.

(5) 징수교부금 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시·도세, 하천사용료 및 도로사용료 등을 도, 시·군이 징수할 경우 징수위임 기관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은 징수교부금은 형식적으로는 위임한 세입 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상하는 성질의 수입금을 말한다.

〈 징수교부금의 예 〉

- 국가의 징수교부금 수입 -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징수교부금 등
-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 - 하천, 도로 등 사용료 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

(6) 이자수입

이자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수입금을 금고·은행에 예치함에 따른 과실수입으로서 보통예금에서 발생하는 예금이자수입과 여유자금의 예치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타 이자수입이 있다.

나. 임시적 수입

임시적수입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대체로 규모는 크나 수입원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세입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수입이다.

(1) 재산매각수입

재산매각수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그 재산을 계속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장래에 활용가치가 없는 경우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입과 공유재산과 타인재산과의 재산교환에서 발생하는 교환차액 수입도 포함된다.

(2)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당해연도 예산에 편입되어 새로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악성 지방채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연도 세출예산에 구매됨이 없이 원리금과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다.

(3) 이월금

전년도 결산결과 미집행 되어 다음년도로 이월된 것으로서 세입세출예산상 지방의회의 승인여부에 따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구분된다.

○ 명시이월비(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사고이월비(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인원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계속이월비(지방재정법 제50조제3항)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 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조금 사용 잔액

특정사업을 개발·촉진하기 위해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중 광역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전년도의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기초자치단체에 있어서는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의 사용 잔액으로서 다음연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국고 또는 시·도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5) 전입금

전입금이란 당해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자금의 이동으로 발생한 회계조작상의 수입이다. 전입금은 특별회계수입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고 반대로 일반회계수입의 특별회계 전입금이 있으며 전출금의 상대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6) 예탁금 및 예수금

예탁금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호간 및 특별회계내의 계정간의 예탁금을 말하고, 예수금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호간 및 특별회계내의 계정간의 예수금을 말한다.

(7) 부담금수입

부담금 또는 분담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을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지변하기 위하여 그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수익의 정도에 따라 징수하는 공과금으로 수익자 부담금 또는 특별부담금이라 한다.

부담금은 개개의 사업마다 법률로써 그 징수근거가 정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일반적인 징수근거를 설정하고 있지만(지방자치법제138조) 현재의 부담금은 징수를 규정한 법령에 따라 대부분 국고로 귀속되고 자치단체에는 징수비용을 일부 교부하고 있다.

※ 지방예산과목상 부담금수입은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수입도 포함된다.

[참고]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2001. 12. 31제정) : 101종

- 정부는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2001.12.31)하여 부담금은 동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 이 법에서 “부담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 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정의하고 있다.

◆ 2007.12.27 개정으로 현재 105종임

<1. 부담금의 부담원인별 분류>

분 류	부 담 원 인	비 고
수익자 부담금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사업경비 일부를 부담하는 것 (예, 공공사업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또는 이득이 예상되는 수익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그 공공사업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개발부담금
원인자 부담금	그 사업을 필요로 하게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는 것 (예, 민간부문의 사업과 행위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될 때 그 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손피자 부담금	그 사업으로 인하여 특정 시설을 손괴한 자에게 과해지는 부담 (예, 공공시설을 파손시키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당해 시설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도로법, 하수도법상의 부담
오염자 부담금	환경을 오염하는자가 공해방지시설의 설치, 유지관리비용, 오염된 환경의 복원비용 및 피해자의 인적, 물적 피해 구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	환경개선부담금

<2. 부담금의 종류 및 규모>

(단위 : 억원)

부담금	근거법률	배분율		2004 징수규모	비고
		국가	지방		
농지조성비	농지법 제40조	100	-	4,488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100	-	1,876	"
배출부과금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90	10	5,247	"
배출부과금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	90	10	67	"
배출부과금	오수및분뇨처리예관한법률 제29조	100	-	63	"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	50	50	2	배분금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	100	771	"
원인자부담금	수도법 제53조	-	100	1,111	"
공공시설수익자 부담금	지방자치법 제138조	-	100	1,564	"

※ 상기부담금은 현재 징수하고 있는 부담금중 일부임 (2004년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기획예산처)

(8) 잡수입

○ 불용품 매각대

사무용 비품, 차량, 기타 물품 등의 노후화로 그 용도를 폐기한 물품의 매각
으로 인한 수입을 말한다.

○ 변상금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여 가능한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거나 변상명령에 의하여 변상되는
수입을 말한다(예 : 세출예산을 무단지출한 때)

○ 위약금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지불할 것을 미리 약정한 경우 약정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는 금전으로서 계약보증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 과태료와 과징금

과태료와 과징금은 공법상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질서벌인 금전벌로서 형벌인 벌금과 구별된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이원화되어 있다. 1차적으로 과태료를 행정청이 부과·징수하되 이에 불복하는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바, 법원이 행정청에 부과결정을 전치시키지 아니하고 직접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데 이 경우의 과태료는 국고로 귀속한다.

그동안 법령상의 의무위반행위인 질서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과태료처분을 규율하는 총칙적 범규범이 마련되지 못하여 운용상 많은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태료의 실효성이 저조하여 법령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총칙적인 범규범을 마련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보완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법령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제정(2007.12.21) 법률 제 8725호, 시행일(2008.6.22) 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은 일반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하는 벌과금 수입이다. 현행 여객운수사업법(법률명변경 1997.12.21 법률 제 5448호)은 법령위반 등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같은법 제85조), 이는 행정벌과 부당이득 환수적인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태료와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수한다는 점에서 구

별하기 어려우나 과징금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과징금의 특징

- 일반적으로 개선명령의 후속조치로 부과되고 있고
- 그 모든 수입은 일반재원으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징금은 대부분 그 분야의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수입은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것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주 : 과태료(과징금)의 부과·징수방법은 각 개별법령마다 다양하므로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개별법령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운용하여야 함

○ 체납처분 수입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체납처분 예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에 붙여 체납처분비로 징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 보상금 수납금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서 수납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 기부금

기부금이란 개인, 기업, 공공단체 기타 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자의적인 의사에 따라 자치단체에 공여하는 금품으로서 용도를 지정하는 지정기부금과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기타(보통)기부금으로 구분된다.

○ 시·도비 반환금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년도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 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을 말한다.

○ 기타 잡수입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을 말한다.

(9) 과년도 수입

당해연도에 징수 결정된 수입금이 출납폐쇄기한인 익년도 2월말까지 수입되지 않고 그 후에 납부되었을 때에는 이를 당해년도, 즉 그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으로 하고 이를 과년도 수입으로 정한다.

실무사례(예시)

축산물가공업을 하는 A씨는 99년 상반기 축산 가공품 생산실적 미 보고로 2000.12.13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기일인 2000.12.28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그 이듬해인 2001.3.15에 이를 납부하였을 경우, 그 수입을 「과년도수입」이라 함.

다. 사업수입

사업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수입에는 상·하수도, 지하철·주택·공영개발과 기타 특별회계로 설치·운영하는 사업이 있다.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수입은 대부분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부사업을 제외하고는 수익성이 없어 적자(예: 지하철, 의료원 등)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라. 사업외 수입

특별회계의 사업외 수입은 일반회계의 임시적 수입과 같이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 투자를 위한 융자금회수 수입, 전입금, 이자수입 등 잡수입을 말한다.

제3절 세외수입의 특징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수입원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지속적으로 계획적인 확대·개발이 용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잠재 수입원이 될 수 있다.

둘째, 세외수입은 그 종류가 매우 많고 또 그 수입근거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그 수입근거를 보더라도 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 또는 사법상의 계약 등 다양하고 그 종류도 행정서비스에 수반해서 생기는 부담금, 사용료 및 수수료, 경제활동에 의한 재산임대수입 및 기부금 또는 다른 특별회계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전입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발생하는 경리 기술상의 수입인 이월금 등 다양하다.

셋째,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노력과 절차에 의한 수입이긴 하나, 수입원에 따라 사용되는 곳이 특정되어 있는 것이 많다. 예를 들면 하천사용료는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에 사용되고 있으며, 공원사용료 수입은 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내용에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특정세외수입은 특정세출예산과 직결되는 경우는 있지만 엄격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넷째, 세외수입의 징수형태로는 현금으로 징수하는 것 외에 수입증지로 징수하는 것이 있다. 수입증지는 주로 그 건당 수입금액이 적은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등의 징수시에 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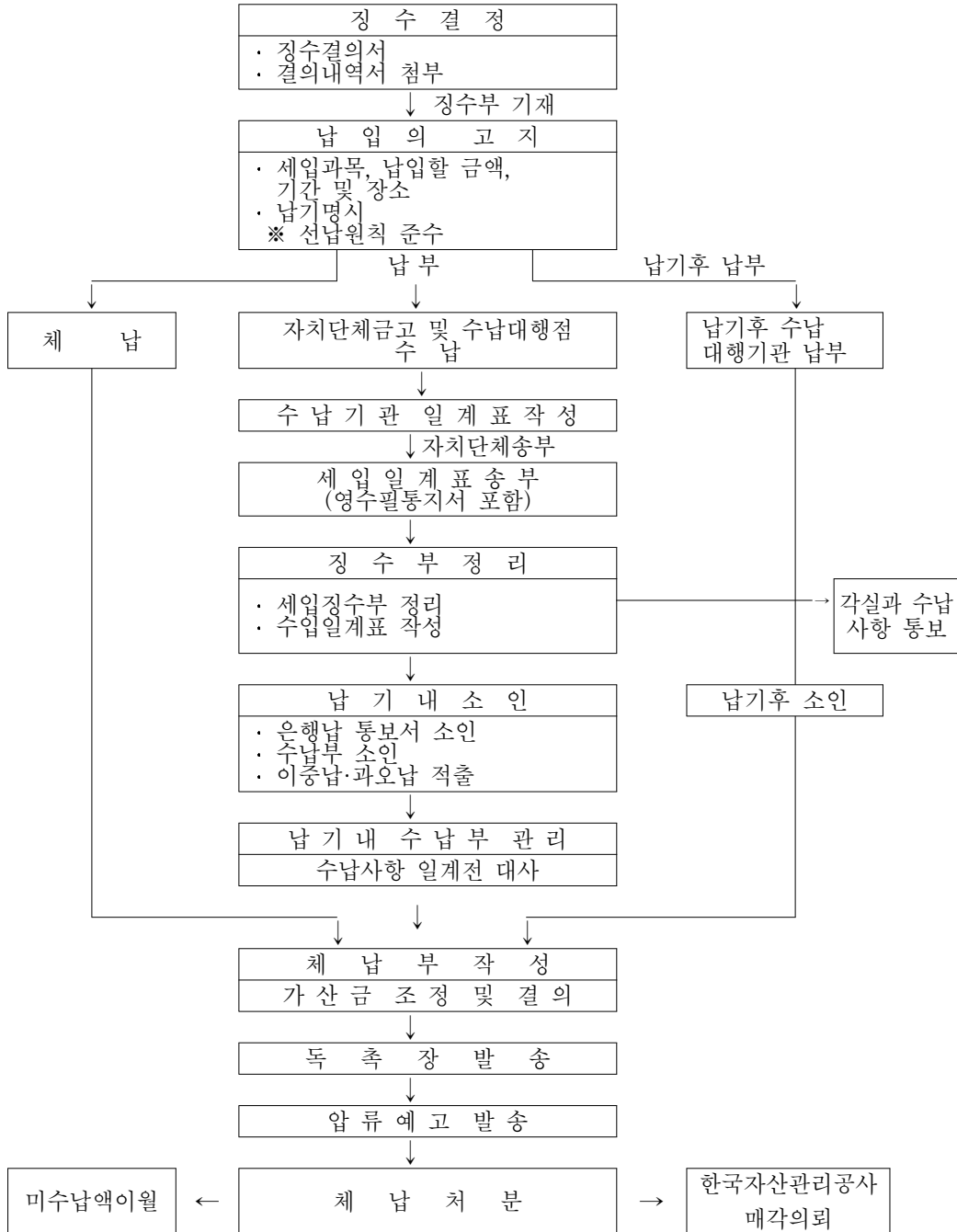
다섯째, 세외수입은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제공하는 공물의 사용이나 서비스 제공 등에 의하여 이용자나 수혜자가 그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적 성격으로 부담하며 또한 시설이나 서비스 이용 여부가 대부분 주민의사 결정에 따르므로 지방세에 비하여 조세저항이 적다.

제4절 세외수입의 과징절차

세외수입 징수관 임무 수입금출납원

- 모든 세입금은 부과근거를 첨부하여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거 반드시 징수결정
- 납입된 모든 세입금은 납입통보와 일계표에 의거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반드시 징수부등재 정리
- 납입된 모든 세입금은 정확한 납부여부를 확인 후 소인처리
- 납입되지 않은 체납세외수입금은 법령이 규정한 절차와 서식에 의거 정확한 체납부 작성
- 체납된 모든 세외수입과목은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거 독촉고지 후 채권 확보
- 모든 세외수입금은 월말(분기말, 연도폐쇄기)에 일계표, 납입통보서, 징수부를 납입기관(수납은행)과 대사 징수보고
- 모든 세외수입은 세입의 부실관리로 인한 불납·시효결손 방지

세외수입 업무처리 흐름도



1. 징수결정

가. 징수결정

개 념

징수결정은 징수관만이 할 수 있고 여하한 경우라도 징수결정 없이 징수 및 수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징수결정시에는 징수결의서를 작성하고 징수부에 등재한 후 해당 납부서 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며 징수결의서 작성시에는 징수결정 사유가 첨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납과 동시에 징수결정 해야 할 사항은 수납과 동시에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

(1) 징 수 관

-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지방세 등 세입의 징수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여야 하나, 필요할 경우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세입징수를 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징수관 또는 경리관 등 회계관계 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임코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에 설치된 회계관직을 지정함으로써 부과·징수를 위임할 수 있다.

(2)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62조, 제91조

(3)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 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4) 징수관의 업무 : 세입금의 징수결정, 납부의 고지, 징수부의 기재, 과오납금의 처리, 독촉, 이월 및 불납결손처분, 세입징수보고

(5) 징수결정

- 징수결정은 납세의무자 또는 각 개별법령이나 계약 기타의 사유로 납입의 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기로 하는 독립적인 행정행위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이다. 내부의사가 결정되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입의무자에게 고지서가 송달될 때 비로소 납입의무자가 발생한다. 징수관은 세입을 징수해야 할 채권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세입금으로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 징수결정의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이 있다.

(가) 사전 징수결정

-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지방세 등
-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나) 수납과 동시 징수결정

- 수납과 동시 징수 결정하는 수입
→ 기부금, 보조금, 이자수입, 교부세 등
- 전입금, 기타 사전징수결정이 곤란한 수입
(재무회계규칙 제 37조 제3호 규정에 의한 별지 제26호 서식 또는 제 25-2호 서식)

(다) 징수결정 없이 하는 수입

- 수입증지 첨부에 의하여 수입되는 것은 따로 세입 징수결정이나 수납 절차를 취하지 않고 소인수납으로서 수입 처리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6) 허가 및 계약에 의한 징수결정

- 허가나 계약에 의한 징수결정은 허가부서나 계약부서의 통지에 의해서만 징수결정

- 허가 없는 경작지는 조사하여 허가부서에 허가나 단속을 촉구하고 그 결과통지에 의거 징수결정 여부를 결정

(7) 징수결정의 취소, 경정 또는 결손

-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중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 또는 경정이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변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
- 불납결손의 사유를 명백히 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결손처분 및 취소 또는 경정한 후 결정
- 징수결의서에 주서로 표시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 납입고지서의 취소와 정정발행 등 절차에 의하여 처리(재무회계규칙 제33조)

(8) 징수결정의 단수계산

- 징수관은 징수결정시 국고금 단수계산법을 적용 수입금액이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 그 단수는 징수결정하지 아니함
- 분할하여 수입하는 금액은 그 총액에 대하여 10원미만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 분할금액이 10원미만일 때 또는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분할금액 또는 단수는 최초의 수입금에 합산(국고금관리법 제 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09조의 2) ※국고단수계산법은 2005.1.27 폐지됨)
- 2개 이상의 물건에 대하여 징수결정시 단수계산
 - 각 물건별 단수를 적용하지 않고 전체를 합산한 금액에서 단수가 있을 때에 10원미만은 절사하여 징수결정

(9) 징수결정액의 이월

-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기한(다음년도

2월말)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

- 전년도 세입으로부터 이월된 징수결정액으로서 계속하여 수납되지 아니한 것(재무회계규칙 제34조)
-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연도 4월 1일까지 하여야 하며 징수부의 해당과목에 당해연도분과 구분하여 기재하고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징수보고서 최종월분 제출시 세입이월액계산서(재무회계규칙 제34조 별지 제24호 서식)를 시·도지사(시·군·구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과오납금의 반환

- 과오납금은 과납금과 오납금을 통칭한 것으로 징수결정의 중복, 납입 후의 감면, 착오, 법률·조례의 개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과오납금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액결정
- 납입자에게 과오납사유 및 금액과 환급청구 또는 타세입금으로 충당 절차를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과오납금의 충당
 -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당해 납부의무자의 미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그 사실을 과오납금 청구자에게 통지
 - 과오납금의 청구 및 심의
 -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부과고지한 자치단체의 장(소관징수관)에게 반환청구서(재무회계규칙 제43조 제1항 별

지 3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 반환청구를 접수한 징수관은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를 작성하고
- 자치단체금고에 과오납금반환명령(통상명령, 송금명령)발행
(재무회계규칙 제43조제2항 별지 제34호, 제35호서식)
- 자치단체 금고는 채주에게 과오납금을 지불하고 세입세출일계표를 작성하여 징수관에게 제출
- 징수관은 세입세출일계표에 의하여 과오납금정리부 정리(재무회계규칙 제43조 별지 제36호서식)
- 과오납금의 연도 구분
 - 과오납금은 환부하는 연도의 수입금중에서 환부하여야 하나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수입금중에서 환부(지방재정법 제66조)
- 과오납금의 반환
 - 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시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에 수입하기 전 일때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수입금중에서 이를 반환토록 할 수 있으며
 - 과오납금의 반환명령은 금고에서 통상지급명령 또는 송금명령으로 하고 과오납금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재무회계규칙 제43조 제4항 별지 제 36호 서식)에 정리
- 반환금 가산이자
 - 반환금 이자는 과오납이 납부된 날의 익일부터 계산하여 과오납금의 지급을 통지한 날 또는 충당한 날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 ※ 가산이자율은 법령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세외수입 종류별

관계법령의 규정을 참조

- 과오납환부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관련 업무처리
 - 과오납금환부금과 환부이자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환부금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 여기서 환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 즉, 환부청구권 소멸시효기산일은 과오납금을 환부하기로 결정한 날을 말한다.
- 과오납금 미환부액의 처리
 - 과오납금 미환부액은 수시로 권리자의 주소지를 파악하여 조기에 환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과오납금 환부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난 과오납금의 미환부액은 시·군·구 금고은행에서 지급명령서 등을 반송 받아 과오납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과오납금 환부에 대한 시효가 완성되어 환부의무가 소멸된 과오납금 미환부액에 대해서는 해당금액을 세외수입(기타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하고 지급명령서를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

(11) 지출금의 반납

○ 반납금의 여입

-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출된 세출과목에 여입(지방재정법 제65조, 동법시행령 제50조)
 - ※ 다만,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잘못 지급한 금액은 이를 반납할 수 없음

○ 반납금의 세입편입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된 후의 반납금)을 세입에 편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비를 지출한 지출원이 징수관에게 세입편입 및 징수결정을 요구(지방재정법시행령 제49조, 재무회계규칙 제42조)

나. 징수결정통지

○ 징수관이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정 내용을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재무회계규칙 제32조 별지 제23호 서식, 재무회계규칙 제32조 별지 제 21호, 제 22호, 제 22-1호 서식)하여야 하며, 세입징수결의로 갈음할 수 있음.

○ 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 수입금출납원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사후 징수 결정하였을 때에는 당월분을 일괄하여 다음달 5일까지 통지(재무회계규칙 제32조)

다. 기 타

○ 먹는 피임약 및 반출증용지 등 도수입에 관련된 제반수입은 반드시 징수결정하고 불입

라. 징수결의서 편철

○ 징수결의서는 징수결정 순서에 따라 과목별, 일자별 순서에 의하여 월별로 지출증빙서 편철요령과 같이 편철한다.

2. 납입의 고지

개 념

징수관이 징수결정을 한 세입금은 고지를 함으로써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납부고지서는 납부자의 주소지에 송달하여 납부자에게 도달되어야 비로서 고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납입고지는 신중히 검토 후 발행하여야 하며 이는 징수관의 징수결정에 따라서 납입고지서의 사용도 달라지므로 정확히 판단하여 하고 납입자의 주소, 성명, 납입할 금액, 납입기간 및 장소, 회계연도, 회계구분 및 소관세입과목과 징수관명을 명백히 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납입고지서는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납기개시 5일전에, 납기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의 납입고지는 징수결정을 할 때에, 그리고 법령, 기타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것은 그 기간만료 다음날에 한다.(재무회계규칙 제35조)

가. 납입고지서

사전 징수결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입으로서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재무회계규칙 제37조 별지 제25호 서식)

※ 납세고지서 : 지방세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고지

나. 납부서

수입과 동시 징수결정하는 수입으로서 기부금, 보조금, 이자수입, 전입금, 기타 사전징수결정이 곤란한 수입과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입서 이외의 수입(재무회계규칙 제37조 제2호 별지 제26호 서식 또는 제 25-1호 서식)

다. 납입서

수입금출납원이 영수한 현금을 시·도 금고에 납입하는 수입(재무회계규칙 제37조 별지 제27호서식)

- ※ 전산처리로 납부(입)서를 고지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납부서·납입서를 OCR 고지서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재무회계규칙 제37조 별지25-1호 서식)

라. 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 전자 고지 또는 통지 : 납입고지서·납부서·납입서를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고지 또는 통지할 수 있다. (재무회계규칙 제37조의 2 제1항).
- 전자 납부 :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재무회계규칙 제 37조의 2제 2항).
- 전자문서의 발송 : 당해 전자문서의 송신지점이 컴퓨터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그 송신자가 발송한 것으로 본다(전자정부법 제 19조 제1항).
- 전자문서의 도달시기 :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며, 지정한 컴퓨터 등이 없는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전자정부법 제 19조 제2항).
- 당해 수신자의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로 인하여 기한내에 도

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송신자에 한하여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전자정부법 제19조 제3항).

- 발송한 전자공문서가 판독할 수 없는 상태로 도달된 경우에는 적법하게 도달된 문서로 볼 수 없다(전자정부법 제19조 제4항).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자정부법으로 법령변경(2007.1.3 법률 제8171호)

마. 고지서 등의 기재사항

납입고지서, 납부서, 납입서, 납세고지서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과목, 연도, 기한, 금액, 금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납입고지서의 경우 고지서상에 중요한 기재사항을 누락시킬 경우 고지서의 효력에 문제가 있게 된다.

-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 납입고지서에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적법한 부과처분이 라고 볼 수 없으므로 납입자의 성명, 주소, 납부금액, 납부기한, 법적 근거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이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95누 1729, 1995. 9. 26)

바. 고지서 발부시기 및 송달

납입고지서의 발부시기는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납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것은 징수결정을 한 때에 발부하며,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유예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에 고지한다. (재무회계규칙 제 35조)

따라서, 납부기간이 2008. 3. 16 ~ 2008. 3. 31인 하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환경개선비용 부담금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조 별표3)의 경우에는 늦어도 2008. 3. 10 24:00까지는 납입고지서가 납입의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만일 위 기일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체납이 된다면 그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기 때문에 납입의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겠다.

사. 보조장부의 비치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를 발행할 경우에는 각각 발행부를 비치 기재하고 발행

3. 세입의 회계년도 소속구분

개 념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세입회계년도 소속 구분은 납기가 정하여져 납기말일에 속하는 연도로 구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징수결정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연도로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조)

가.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 소속의 회계년도내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나. 수시수입

-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수시수입으로서 기본수입에 부수되는 수입은 그 기본수입이 속하는 연도
-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단, 지방채증권·차입금·부담금·교부금·보조금·기부금·상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수입은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
- 계약에 의하여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된 것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한 날이 속하는 연도

4. 세입금 수납

개 념

- 지방세 및 기타의 세입금수납은 수입금출납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수납을 위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 수입금출납원이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63조 제2항)

가. 징수부의 정리

- 징수관은 재무회계규칙 제39조 및 제106조에 의하여 시·도금고, 수입금출납원, 분임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 및 납입통지서를 송부 받아
- 재무회계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한 수입일계표(별지 제 29호 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나. 수납액과 보고서 작성

- 수입금출납원과 분임수입금출납원 및 금고에서 수납한 금액을 수납액이라 한다.
- 징수보고서 작성은 징수관이 징수부(별지 제 37호 서식)에 의해서 작성(재무회계규칙 제45조)토록 되어 있으므로 오직 징수부에 의해서만 작성을 해야 하고 읍·면·동 분임수입금출납원이 수납하였으나, 징수관과 수입금출납원에게 미납입되어 징수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납금은 징수보고서에 포함되지 아니함

다. 수입금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의 납입

- 금고소재지는 그 다음날까지
- 그 이외의 곳은 5일 이내(지방재정법시행령 제7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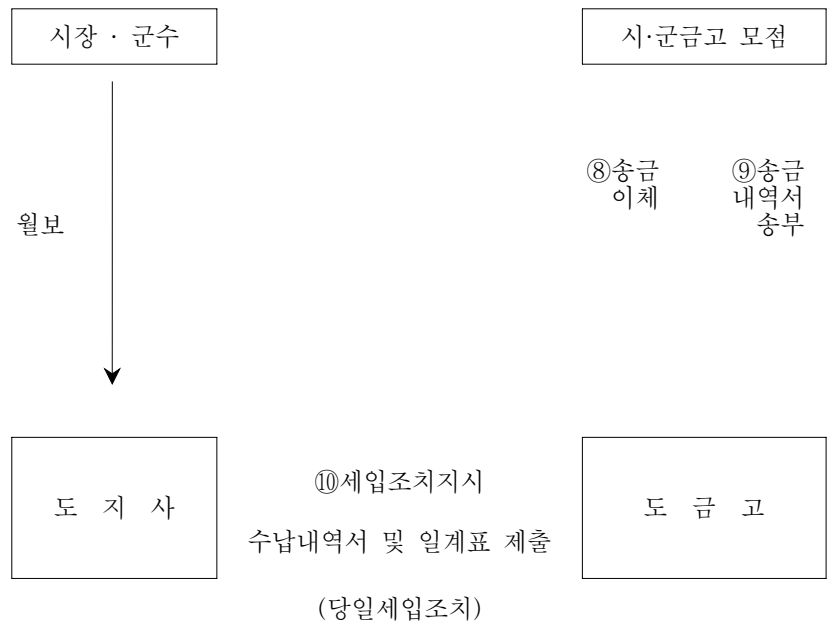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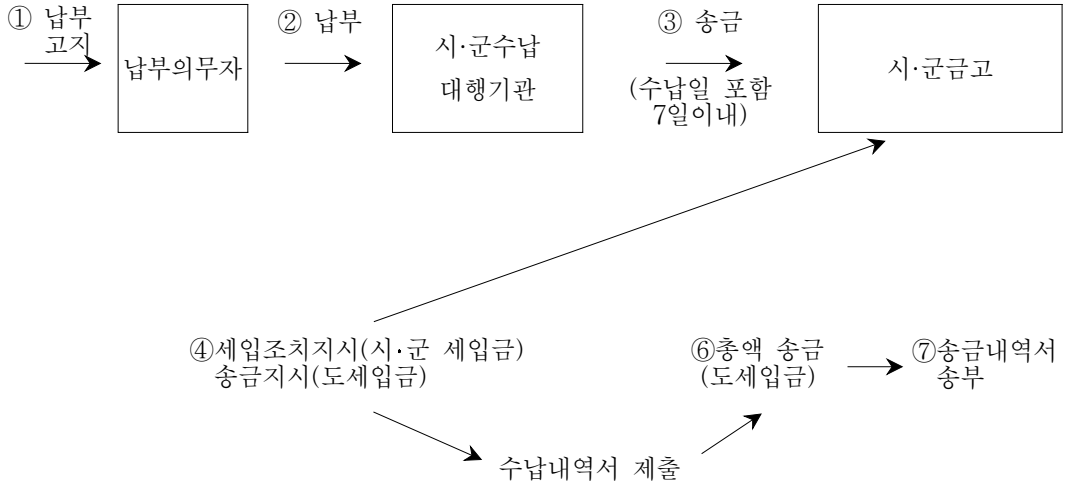
라. 자치단체 세입금 금고불입

- 자치단체 세입금을 자치단체 금고 및 수납대행점에서 수납하였을 경우에는 자치단체 금고 회계별 계좌에 다음과 같이 송금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 자치단체 금고에서 수납 → 수납한 다음날까지(또는 수납당일)
 - 자치단체 금고수납대행점 → 수납일을 포함한 7일 이내

마. 종속수입에 대한 관리철저(이자수입)

- 정기예금
 - 월별이자 인출 세입조치 → 세입의 극대화
- 기타 일시 예탁금
 -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 상반기는 6월말, 하반기는 12월말일 기준으로 각 회계별로 세입조치

□ 세입금 수납 송금절차(도·시·군)



5. 세입금 관리 및 예탁

가. 세입금의 보관 · 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기타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 자치단체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2항)

나. 현금의 보관

-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자치단체 금고, 금고지출대행점 또는 공금 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소재지 이외의 곳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재무회계규칙 제87조 제1항)
- 상기 경우 이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재무회계규칙 제87조 제2항)

다. 지방자치단체금고취급 금융기관 구분(재무회계규칙 제99조)

- 금고 : 자치단체금고, 자치단체금고 수납대행점, 자치단체금고지출대행점
- 자치단체금고 : 자치단체소관의 현금, 유가증권을 출납·보관하는 총괄 금융기관

- 자치단체금고 수납대행점 : 자치단체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 자치단체금고 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 자치단체 공금지급대행점 : 자치단체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 관서

라. 이자수입의 증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희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당해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다.(재무회계규칙 제74조 제1항)
-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한 『예금』은 은행법에 의하여 계리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수신거래를 의미하고 있어 신탁업법에 의해 신탁회사의 수신거래를 의미하는 신탁과는 별개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일종이므로 원본보전 및 이익보전(원리금 보전) 의무가 없는 신탁상품(기업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 개발신탁 등)은 재무회계규칙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포함되지 않음.
 - ☞ 재경 13300-366('96. 5. 15) 서울시의 유희자금운용에 관한 질의회신

6. 이의신청, 가산금징수, 체납처분 및 결손

가. 이의신청

- 사용료·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판단하에 이의가 있는 자가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을 말하며(지방자치법 제140조)

-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권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아 사용료 등을 부과한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의 도로점용료 징수권은 원칙적으로 서울특별시장에게 있으나, 그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면 처분청인 구청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 사례: 대법원 1981. 80누502 -

- 개별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지방자치법개정 추진중 60→90일 이내)

<이의신청기한 연장 사유>

- 천재, 지변, 사변, 화재
- 이의신청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때
- 정전·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 이의신청의 처리

-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 통보

-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 지방자치법 제140조 및 지방세법 제73조 및 75조내지 77조의 규정 준용

- 이의신청 결정불복 - 관할 행정법원에 소제기

- 자치단체장이 기한내에 결정을 하지 않을 때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 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과태료 이의신청의 처리 예외> —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와 지방자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 과태료의 이의신청은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가산금 징수 및 독촉

- 세외수입 중 개별법령이나 조례 등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징수
 - 가산금은 사용료 등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행정 처분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적 성격 및 이자적 성질로서 원금에 가산하여 징수
- ※ 다만, 주민등록에 대한 신고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별도로 과하는 주민등록과태료나 무허가 건축물 및 건축법 위반시 동 건축물의 선별정리를 위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 관계법령상 의무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함(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6호서식)
- 사용료 등을 정당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납부의무자에게 독려하고 촉구하는 통지행위이며, 체납처분의 전제조건이 된다.
 - 사용료·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기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며, 독촉장은 납기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의 납부기한을 붙여 발부한다.

다. 체납처분

- 납입고지된 세외수입금을 독촉하였을 경우 독촉기한까지 납부치 않을 때 강제집행수단으로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함으로써 체납된 세외수입금을 강제징수하는 것
 - ※ 반대급부적 세입금인 사용료·수수료는 선납되어 체납처분 대상이 거의 없음
- 체납처분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2항에 의거 지방세 징수예(예)에 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예 : 폐기물관리법 제48제3항)

라. 결손처분

- 결손처분 근거 : 지방세법 제30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 결손처분 사유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징수금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지방세법 제35조의 5)
 -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때
 -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회사정리법 제241조)
-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회하여야 한다.

7. 징수보고서 작성

가. 징수보고

- 징수관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3조 및 재무회계규칙 제45조)
 - ※ 징수실적이 없을 때도 징수보고서 제출
- 징수관은 소관사항에 속하는 제반수입을 누락 없이 징수결정해야 하고 징수결정하는 제수입 과목을 총망라하여 징수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실질적인 계산증명과 같이 취급보고하여야 함
- 최종 징수보고서의 유의사항
 - 매회계년도의 출납정리기한(출납폐쇄기한 경과후 10일까지)까지 장부를 마감하여
 - 당해 회계년도의 세입으로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연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하여야 하고 최종징수보고서에 세입이월액 계산서를 추가 첨부하여야 함 (재무회계규칙 제34조)
 - 이월액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1일자로 한다.

나. 징수보고의 정정

- 징수보고서의 과목별 계수의 착오나 계산의 착오를 다음달에 정정할 시는 반드시 전월분 보고서와 대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 징수관은 징수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당해 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정정을 한달의 징수보고서의 분월분에 증감을 표시하여 정정하고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 징수관은 최종 세입징수보고서의 계수 착오시에는 증감작성한 수정 최종 세입징수보고서를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다. 월계대사표의 증명

- 징수관은 시·도금고로부터 세입금월계표를 송부 받았을 때에는 징수부 및 징수보고서와 대사하여 계수를 확인하고 그 중 1통을 징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보고하되 하단에 징수관은 직인과 사인을 날인함

라. 차액 명세서

- 징수관은 월계표의 수납액과 징수부 및 징수보고서 징수액 계수가 상이한 때에는 차액명세서를 작성 징수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함

마. 기 타

- 징수관이 징수보고서는 소정의 서식을 사용하되 징수관명을 명시하고 직인과 사인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며, 수입이 없는 경우라도 징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월보는 다음달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감사원장에게 제출하는 분기별 세입징수액계산서 작성은 소정의 양식(계산증명규칙 제16조)을 사용하되 징수관명을 명기하고 직인과 사인을 반드시 날인하여 분기별로 작성, 다음달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 상철부분과 뒷면 봉합부분에 직인과 사인을 날인

8. 장부기록

가. 장부의 기록

- 세입징수관과 자치단체의 금고는 관계법령 및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징수관의 장부

- 징수부(재무회계규칙 제139조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2-1호 서식)
- 징수총괄부(본청)
- 과오납금정리부(재무회계규칙 제139조 별지 제36호서식)

다. 분임징수관의 장부

- 징수부
- 과오납금정리부

라. 수입금출납원(분임수입금출납원)의 장부

- 현금 출납부
 - ※ 재무회계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일계표로 같음하고
이의 비치, 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마. 채권관리관의 장부

- 총괄채권관리부(재무회계규칙 제140조 별지 제99호서식)－총괄채권관리관
- 채권관리부(재무회계규칙 제140조 별지 제100호서식)－채권관리관

바. 자치단체 금고의 장부

- 세입·세출원장(재무회계규칙 제104조 별지 제73서식)
- 세입금내역장(재무회계규칙 제104조 별지 제74호서식)
- 세출금내역장(재무회계규칙 제104조 별지 제75호서식)
- 자금운용내역장(재무회계규칙 제104조 별지 제76호서식)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재무회계규칙 제104조 별지 제77호서식)
- 유가증권수급장(재무회계규칙 제104조 별지 제67호서식)

사. 지방자치단체 금고 수납대행점

- 예금원장 : 세입징수관별, 회계별, 연도별로 구분 정리

아. 보조부의 비치

- 고지서 발행부(재무회계규칙 제148조)
- 납부서 발행부(재무회계규칙 제148조)
- 납입서 발행부(")
- 기타 필요한 장부(")

자. 장부기재상의 주의점

- 장부에는 세입결의서 또는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재무회계규칙 제149조)
- 장부의 기재요령
 - 각 계좌의 색인(견출)을 붙인다.

-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 매월 말에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작성한다.
- 잔액의 난에 기입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색 글씨로 “0” 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을 초과하였을 때는 초과액을 기입하고 그 머리 부분에 “+” 기호를 붙인다.
- 장부의 상단 첫 란에는 “첫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앞쪽에서 이월” 사항을 기재하고 하단 마지막 난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9. 세입의 결산

가. 결산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결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1회계 년도의 세입을 마감정산하기 위한 것으로
- 출납폐쇄정리기한까지 수납한 세입금의 부과징수 실적을 일정한 형 식으로 정리한 기록의 표시이며 자치단체의 재정감독을 하는데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함
- 세입예산의 부과징수실적을 예산과목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한 기록의 표시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에게 1년간 활동실적을 계수로 나타내는 것.
- 세입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이며 결산으로 나타난 결과를 다음 연 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Feed Back)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 지방재정법 제51조, 제52조,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38~40조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31조

나. 세입결산과정

- 세입금 징수 마감 : 출납폐쇄기한 경과후 10일까지
- 세입출납사무완결 : 3월말까지
 - 제반 장부 마감
 - 결산상 잉여금 처리(지방재정법 제52조)
 - 각 실과·사업소로부터 결산설명자료 요구
- 세입결산서 작성 : 4월 30일까지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 5월말까지(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2항)
- 결산검사(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 의회 승인 신청 :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다. 결산서 작성

- 회계년도에 징수결정한 세입금을 출납정리기한까지 수납하고 징수결 의서와 징수부 및 세입일계표의 일치 여부를 대사
 - 검토한 후 징수부를 마감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함(지방자치법 제140조)
- 세입결산서 작성 책임자
 - 시 · 도 : 세정과장(재정담당관)
 - 시·군·구 : 재무·세정·세무과장
 - 결산서 총괄 : 회계과장(시·군·구의 경우 재무·회계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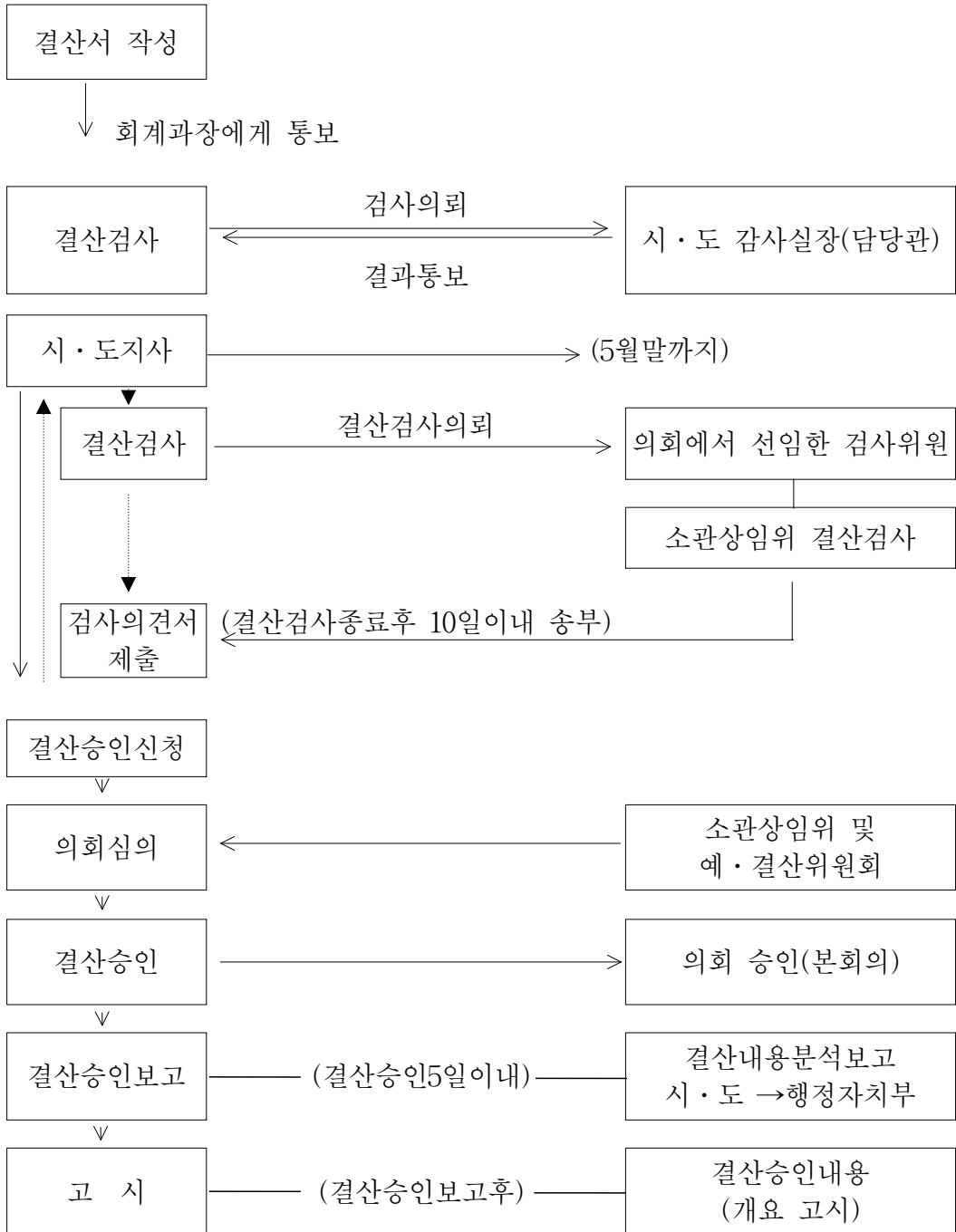
라. 결산서 내용

○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세입 :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과오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원인별 내역 : 무재산, 행불, 시효완성, 공매시 무배당, 기타)

※ 세출 :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 등 증감액, 초과지출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세입결산절차>



10. 채권관리 및 운영

가. 채권의 정의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나. 채권으로 관리하여야 할 채권의 범위

-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그 이행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채권
 - ※ 채권관리 적용 제외(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9조)
- 과태료 기타 이와 유사한 채권
- 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채납처분에 관한 채권
- 증권으로 된 채권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
-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예탁한 예금에 관한 채권
- 보관금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 외국인이 채무자인 채권
- 기타 세입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채권

다. 채권관리관의 관직 지정

- 채권관리관의 임명 및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기관에 설치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재무회계규칙 제3조1항)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지방재정법 제91조)
- 시·도 채권
 - 시·도 총괄채권관리관 : 재무(자치행정)국장
 - 채권관리관 : 소관 담당관 및 과장
 - 시·군·구 채권관리관 : 부시장, 부군수, 총무국장
- 시·군·구 채권
 - 총괄채권관리관 : 부시장, 부군수, 총무국장
 - 채권관리관 : 소관 실국장

라. 채권관리관의 장부

- 총괄채권관리관 : 총괄채권관리부(재무회계규칙 제140조 별지 제99호 서식)
- 채권관리관 : 채권관리부(재무회계규칙 제140조 제100호 서식)
- ※ 기타 : 채권에 관한 징수결정결의서, 수납부, 이자계산서, 소인대장, 현금출납부 등

마. 채권관리 방법

-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원인 또는 내용에 따라 자치단체의 이익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채무자, 채권금액 및 이행기한, 기타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뿐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87조, 재무회계규칙 제153조)

-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를 하여야 하며(재무회계규칙 제154조 제1항 제106호서식)
- 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부에 채권의 발생·변경·소멸, 채권의 독촉이행기간의 연장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바. 채권운영 관리상황 보고

- 채권발생·소멸사항 보고(재무회계규칙 제154조 제1항)
 -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또는 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06호서식에 의거 회계별, 채권별로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채권현재액 보고
 -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총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채권현재액보고서를 수합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채권현재액 보고시에는 건수 및 금액을 반드시 표시하고 “잔액”란의 금액에 해당되는 세부내역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보고

○ 채권 결산 보고

- 채권관리관은 회계년도내에 발생한 채권에 대한 수납을 출납폐쇄기한까지 마감하고 회계별, 종류별 채권현재액 결산보고서를 작성 총괄 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총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으로 결산사항을 수합하여 회계별, 종류별, 채권증감 및 현재액 결산서를 작성 다음연도 5월까지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한 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치단체의 채권분류표]

분 류	정 의	예 시	발생원천	회계개념	
보증금채권	계약상의 권리행사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예치하는 경우 발생하는 채권	임차보증금, 전세 보증금, 전화가입 보증금	임대차계약, 전화가입	보증금	
융자금채권	자금을 융자해 준 후 만기도래시 융자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기 위한 채권	주택사업융자금, 의료보호기금융자금, 학자금융자금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학자금 융자	융자금	
미수금채권	자치단체소유의 재산 매각,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에서 발생하는 채권	재산매각미수금, 분양미수금, 사용료 등 미수분	재산매각분양상환, 사용료, 수수료	미수금	
적용제외채권	투자채권	자치단체가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형태의 채권	민관 공동사업출자금, 출연금	제3섹터 사업, 출자출연단체에 대한 출연 등	투자유가증권
	금융채권	지방자치단체 금고 및 기타 금융기관 예치금에 대한 채권	예금 및 적금	금고 및 금융기관 자금예치	현금 및 현금 등가물, 금융상품
	지방세채권	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 관련채권	지방세 미수납액	지방세 징수결의 등	미수세금
	보조금, 기부금채권	보조금 및 기부금 관련채권	국고보조금 미수분, 기부금 미수분	보조금 및 기부금 교부	미수보조금 등
	과태료 등 채권	과태료와 이와 유사한 채권	과태료	과태료징수	미수금
	자치단체내채권	자치단체내 회계간 내부거래에 의한 금전의 수수에 따른 채권	회계간 전출입금	회계간 자금거래	자치단체내채권
	외국인채권	외국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미수분, 수수료 미수분 등	외국인대상 채권발생	미수세금, 미수금 등
기금채권	기금예산을 보증 융자해 준 경우 발생하는 채권	각종 보증금, 융자금	기금을 이용한 융자보증사업	기금예산	
기타채권	기타 위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채권	기간경과이자, 상표권	이자기간경과, 상표출원 및 등록	미수수익, 산업재산권	

제2장 지방세외수입 각론

제1절 경상적 세외수입

1. 재산임대수입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로 구분되며, 국유재산임대료는 국유재산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 중 지방자치단체가 현지에서 관리하는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와 잡종재산을 대부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와 임대료로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국가 50%, 자치단체50%)을 말하며,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자치단체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행정·보존재산의 사용료와 잡종재산의 대부료를 말하는 것으로 재산매각 수입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가. 국유재산임대료

개 념

국유재산 중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현지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와 잡종재산의 피대부자에게 반대급부로 과징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임.

1) 국유재산의 의의

가) 광의의 국유재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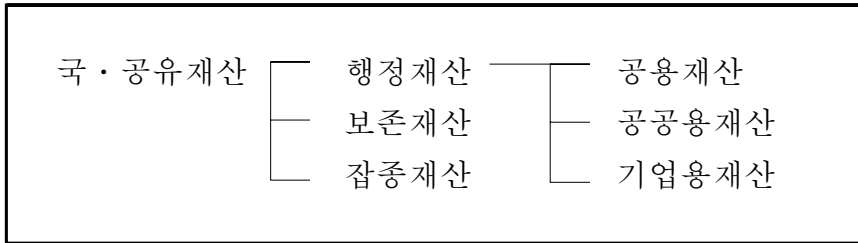
- 국가목적에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 범 위
 -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선박, 항공기
 -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출자증권, 사원권, 의결권, 이익배당청구권, 사채권, 기타유가증권)
 -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의 무체재산권
 - 현금, 물품, 기타동산 및 국가채권
 - 기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나) 협의의 국유재산

- 국유재산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가의 재산
- 국유재산법 제2조와 동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으로서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것을 말함.
 -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과 그 종물
 -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 정부기업 또는 정부시설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투자증권 등
 -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2) 국유재산의 종류

국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되며 이 중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으로 분류된다.



가) 행정재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공유물 중 공공성과 공익성이 가장 큰 재산이다.

행정재산은 공용, 공공용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매각·교환·양여·대부·사권설정·신탁이 불가능한 재산이다.

※ 행정재산의 범위확대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를 3차례 개정하여 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은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으로 그 범위를 확대함 (대통령령 제17788, 2002.11.29)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공용재산

공용재산은 청사, 학교, 관사와 같이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 또는 사업용, 공무원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1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된 재산을 말한다.

② 공공용재산

공공용 재산이란 도로, 하천, 제방과 같이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1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③ 기업용재산

기업용재산이란 정부기업(철도, 통신, 양곡, 조달)이 직접 그 사무용 또는 사업용이나 당해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1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나) 보존재산

보존재산이란 보존임야, 문화재, 사적지와 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보존재산 역시 행정재산과 마찬가지로 대부·매각·양여·교환·신탁·사권설정이 금지되어 있다.

다) 잡종재산

국유재산 가운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이외의 국유재산을 말한다.

3) 부과·징수근거

- 국유재산법 제24조 (사용수익허가)
- 국유재산법 제25조 (사용료징수)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사용료율과 평가방법)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 (사용료조정)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 (대부료등의 귀속)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31조의2 (사용료의 귀속)

4)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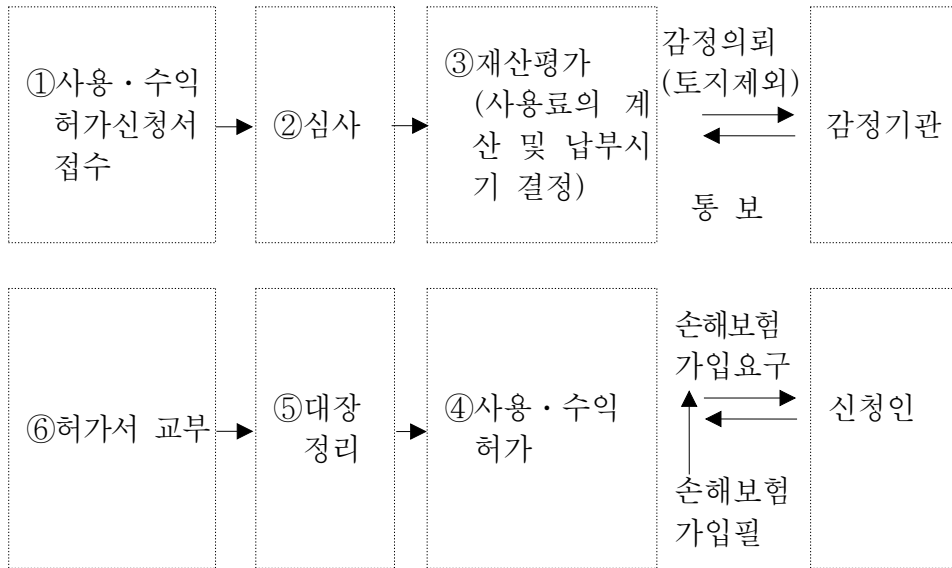
가) 의 의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행정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존재산은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허가 할 수 있음.

나) 근거법령

국유재산법 제24~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1조

다) 사무처리 흐름도



라) 사무처리요령

① 사용·수익허가신청서 접수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접수

② 심 사

-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허가 하여야 함.
- 보존재산은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사용·수익을 허가하여야 함.
-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재산상의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다만, 관리청이 그 행정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한 축조는 가능함.

③ 재산 평가 (사용료의 계산 및 납부시기결정)

- 사용료산정 : 연간사용료 = 재산가액 × 사용료율

㉓ 사용료율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 행정목적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때 : 당해재산가액의 1,000분의25이상
- 공무원 후생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 : 당해재산가액의 1,000분의 40이상
- 경작목적 : 공시지가의100분의5 (2001.7.1부터)
- 기타의 경우 : 당해재산가액의 1,000분의50이상, 다만 주거용의 경우는 1,000분의25이상

※ 단, 다른 법령에서 국유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함

＜ 사 례 ＞

○ 지방공기업에 시장용지를 사용허가 할 경우 사용료율은?

(99.2.2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 시유재산을 지방공기업인 마포개발공사에 직접 사용허가 한다 할지라도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사용료율의 결정은 당해 재산의 위치, 용도, 이용 상황에 따라 당해 재산관리관이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 다만, 재량권 행사시에 고려할 사항으로는 공공의 목적에 불특정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공공용요율(재산평정가격의1,000분의25)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상인 등 특정인이 수익적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요율(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50)을 각각 적용해야 할 것임.

㉔ 재산가액평가(재산의 가격결정)

- 토지의 경우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허가기간 중 매 회계연도마다 결정

- 토지외의 재산의 경우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1개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액으로 결정하고, 결정 후 3년 이내에 한하여 적용. 다만, 건물을 10㎡이하의 소규모 면적으로 사용 허가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 표준액에 의함.

< 사 례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규정중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란?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2항 제1호 규정중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란 대부 목적 또는 대부자의 사용용도가 동일 필지 내에서(예 :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일부를 도매시장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조항임.
- 따라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에서 경매물품의 보관과 유통과정상의 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냉동제빙 기계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주요기능이라고 판단되는바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유재산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 99. 9. 29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

- 건물의 산출량 산출기준
- 건물 전체의 사용·수익 허가자에 있어서는 건물가액과 부지가액 (당해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 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포함)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함.
- 2층 건물을 층별로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에는 건물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재산의 가액으로 함.
 - 1층은 부지가액의 3분의2
 - 2층은 부지가액의 2분의1

- 지하층은 부지가액의 3분의1
- 3층 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에는 건물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함.
 - 1층은 부지가액의 2분의1
 - 2층은 부지가액의 3분의1
 - 3층은 부지가액의 4분의1
 - 4층 이상은 부지가액의 각 5분의1
 - 지하1층은 부지가액의 3분의1
 - 지하2층은 부지가액의 4분의1
 - 지하3층 이하는 부지가액의 각 5분의1

㉔ 사용(대부)료의 조정

- 조정대상
 -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료
 - 잡종재산의 대부료, 변상금
- 적용대상 : 시행령 제26조의2
 - 대상자 : 동일인이 동일한 국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신규로 점유 또는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적용불가)
 - 적용대상 증가율 : 전년도보다 산출사용료가 10%이상 증가한 경우
- 산출요령
 - 전년도 사용료의 산정 :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사용료(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사용료로 환산)------(1)

· 산출사용료의 산정 :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당해연도의 연간사용료(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로 환산) -----(2)

· 산출사용료의 증가율 계산

$$\text{산출사용료의 증가율} = \frac{(2)\text{산출사용료} - (1)\text{전년도사용료}}{(1)\text{전년도사용료}} \times 100 \text{---(3)}$$

- 증가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정수로 계산

예) 10.49% → 10%

· 납부할 사용료의 산출 : 위 (3)의 증가율이

- 10% 미만인 경우 : (2)의 산출사용료

- 10% 이상인 경우 :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조정계수에 전년도 사용료를 곱하여 산출

$$\text{납부할 사용료} = \text{전년도사용료} + (\text{전년도사용료} \times \text{조정계수})$$

· 과오납금의 반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5장(과오납금의 처리)을 참조하여 처리

㉔ 사용료의 납부시기

○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청은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의 이자를 붙여야 함

㉓ 사용료의 면제

- 행정재산 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 승계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때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 사용료의 면제기간 : 시행령 제28조
 - 사용료 면제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할 때까지
 - 건물 기타 시설물의 기부를 채납한 경우에는 그 건물, 기타 시설물의 부지사용료를 위 ㉒의 사용료 총액에 합산. 다만, 부지사용료를 따로 받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재산가액은 사용·수익허가 당시 기준

㉔ 사용·수익허가기간 : 국유재산법 제27조

-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경신할 수 있고 경신할 때마다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㉕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 국유재산법 제29조

- 당해 재산을 허가받은 자가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사용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음(국세징수법 중 채납처분에 관한 규정 준용)

㉖ 가산금의 징수 : 시행령 제31조

- 가산금은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때에 이를 정함

· 가산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가산금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

· 납부기한은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함

④ 심사 후 기준에 적합하면 사용·수익허가 함

⑤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8조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허가부 정리

⑥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의한 별지 3호 서식의 허가서 교부

5) 잡종재산의 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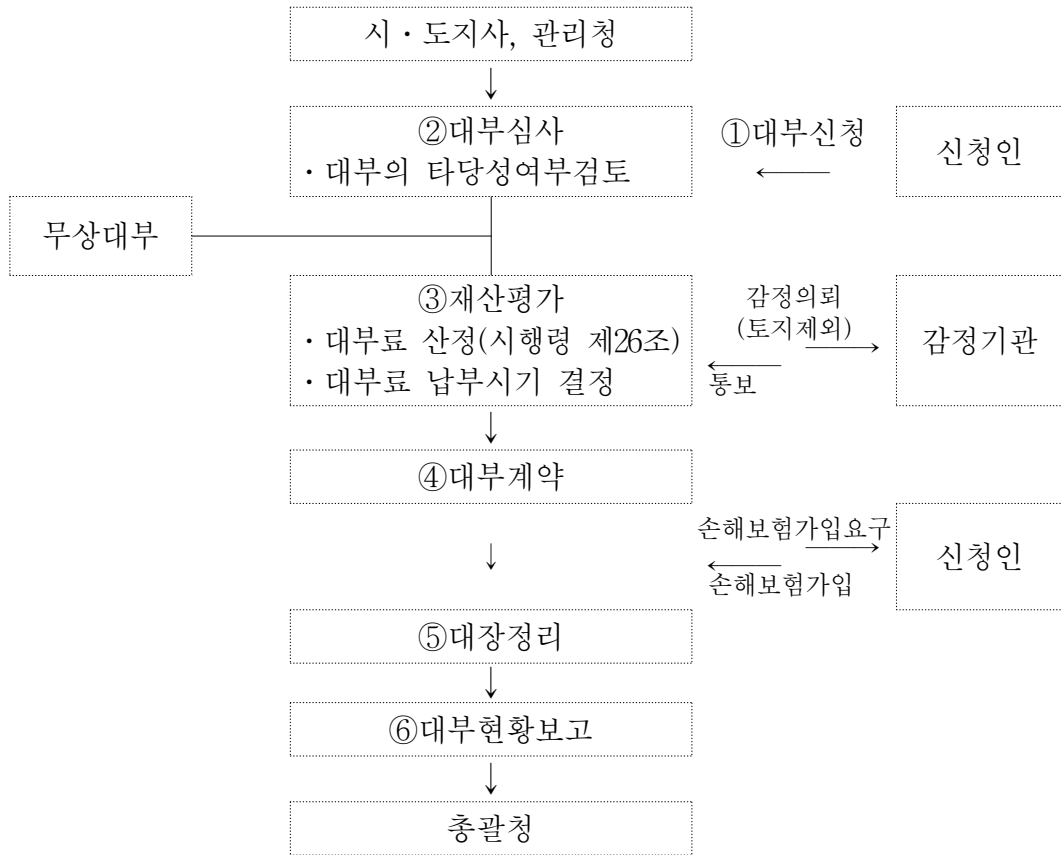
가) 의 의

잡종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신탁할 수 있으며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나) 근거법령

- 국유재산법 제31조~제45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48조의4, 동법시행규칙 제29조~제44조의2

다) 사무처리 흐름도



라) 사무처리요령

- ① 대부신청서 접수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36조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 검토
- ② 심사시 유의사항
 - 국유재산은 그 용도가 행정목적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 다만,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을 다른 관리청이 직접 공용, 공공용 등 행정목적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산소관관리청은 대부에 우선하여 다른 관리청에 관리이관 또는 사용 승인하여야 함.

-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대부받을 자를 결정하여야 함.
- 대부중인 재산을 다른 관리청이 직접 공용, 공공용 등 행정목적수
행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재산소관관리청은 대부계약을
취소한 후 다른 관리청에 관리전환 또는 사용 승인하여야 함.
- 국유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분할납부중인 재산으로서 재산가액의 2분의1 이
상의 대금을 납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건축을 전제로 한 사용승인
을 할 수 있음.
- 산림훼손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초래하는 골프장에 대한 국유지
의 대부는 골프장 조성 예정지의 입지조건상 편입이 불가피한 경
우에 한정하고, 대부된 국유임야관리 특별회계소관재산을 국유림
확대 집단화사업을 위하여 교환재원으로 우선 활용하여야 함.
- 재정경제부소관 잡종재산의 무상대부시에는 관리계획(대상재산목
록)에 계상하여야 함.
- 건물 기타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대부는 그 설치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아니면 하지 못함.

<무상대부할 수 있는 경우>

- 행정·보존재산의 경우와 같음

<대부기간>

- 조립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 10년
- 조립이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 기타의 물건 : 1년

※ 갹신기간은 대부기간 범위 내에서 가능

③ 재산평가(대부료산정 및 납부시기 결정)

· 잡종재산의 대부료, 무상대부, 대부계약, 해제 및 해지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경우와 같음

· 대부료는 징수한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고에 납입

④ 대부계약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36조 제3항 별지 제9호 서식의 계약서 작성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재산은 보험계약 체결

⑤ 대장정리

· 국유재산대장(별지4호 서식) 정리

⑥ 대부현황보고

· 기초자치단체(익년도 1. 20까지)→광역자치단체(익년도 1. 31까지)

→재정경제부장관(총괄청)

마) 대부료의 귀속 및 용도

· 귀속비율 : 국가 50%, 지방자치단체 50%

· 용도 : 가급적 국유재산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나. 공유재산임대료

개 념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관리하는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사용·수익한 자에게 반대급부로 부과 징수하는 사용료와 잡종재산의 피대부자에게 대부를 약정하면서 받는 대부료 수입금

1) 공유재산의 의의

가) 광의 :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산(지방자치법 제133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여 소비 또는 공용되는 금전, 기타 물적 수단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금전, 기타 물적 수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귀속되는 모든 것을 광의의 공유재산이라 함.

나) 협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공유재산

- 광의의 공유재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공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만을 의미

※ 지방재정법에 의해 관리되어 오던 공유재산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2005. 8. 4)

-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다음 각호의 재산을 의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부잔교(부잔교)·부선거(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저작권·특허권·의장권·상표권·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및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2) 종 류(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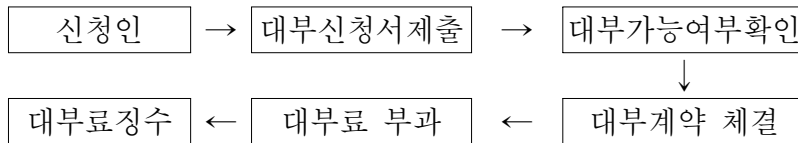
-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 잡종재산의 대부료

3) 부과 · 징수근거

- 지방자치법 제136조 (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행정재산 등 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잡종재산의 대부 및 대부료)

4) 업무처리 흐름도



5)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가) 의 의

- 행정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때에 허가는 공법상 허가이며 대등 당사자간의 관계인 사법상과의 계약과는 다르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 일반적으로 허가사용이나 특허사용의 경우도 있음.
 - 허가사용 : 행정재산의 사용내용이 일반사용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러한 내용의 자유로운 사용을 금지하고 특정한 경우에 그 금지를 해제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청사의 매점, 하천의 유수, 도로상의 작업 등)
 - 특허사용 : 행정재산의 주체가 그의 공물관리권에 의하여 특정인에 대하여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공물사용의 권리를 설정(도로상 전주가설, 가스관 가설)

나) 사용료 산정, 사용료율, 사용료의 조정 등

- 잡종재산의 대부규정을 준용토록 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다) 사용·수익허가기간, 사용료의 납부

- 국유재산의 경우와 같음

라) 사용료의 면제

- 행정재산 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재산을 그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계승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때
 - 사용료면제기간 : 기부채납한 재산의 사용료총액이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하는 기간
 -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 그 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은 사용·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시키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할 경우

마) 사용허가의 제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은 다음의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

- 재산을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래의 경우에 행정·보존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 도로·하천·제방·구거 등 공공용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
 - 공용·기업용 재산이 해당목적에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계속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
- 절 차
 - 관리기관장의 결정(공유재산심의회 자문)
 - 대장정리(행정재산대장 폐지, 잡종재산대장 등재)

〈 행정·보존재산의 용도 폐지범위 확대 〉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8조
- 확대내용 : 행정·보존 재산을 행정·보존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용도폐지할 수 있도록 개선
- 확대 이유
 - 행정·보존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는 당해 재산의 전부가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계속 존치할 수 없는 때에만 용도폐지를 하여 왔으나
 -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물 특히, 복합 수익시설물(예 : 월드컵 축구경기장, 지하도로 상가, 관상복합건물 등)은 사용·수익 허가를 하는 관계로 잡종재산의 대부에 비해 사용기간 제한 등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어
 - 동 수익시설의 일부를 용도폐지토록 하여 잡종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토록 행정·보존재산의 용도폐지 범위를 확대함

6) 잡종재산의 대부

가) 의 의

-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경쟁입찰방법으로 대부계약하는 것이 원칙
- 잡종재산의 대부는 유상대부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 무상대부를 인정
- 대부행위는 사법적 성격의 법률행위이나 공익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특별규정을 두고 있음.

나)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시행령 제38조 제1항)

-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대부할 때
-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고자 할 때
- 임야를 목축·광업·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할 때
-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 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재산을 대부할 때
-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할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할 때
-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의 대부
-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때
- 건축불가능 소규모부지로서 이해관계인의 인접사유지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때
- 재산평가액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때
- 2회에 걸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잡종재산 수의계약 범위 확대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8조

○ 확대내용

-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당해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때
-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의 경우는 3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대부하는 때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 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해 대부하는 때

○ 확대 이유

- 종전에는 건축이 불가능한 소규모 자투리 부지를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그 부지를 대부하였으나
- 건축법상 건축이 불가능한 부지 면적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건축법상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를 인접 사유지 소유자에게 대부할 수 있음.
-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재산가격이 높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재산평가액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인구집중유발기업(학교, 공장, 공공시설물 등)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

다)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경우(시행령 제75조)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정부투자기관에는 무상사용 불가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시키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해당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할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 당해 시·도,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 천재지변 기타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대부하는 경우
 -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 ※ 무상대부시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 잡종재산 무상대부범위확대 〉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5조

○ 확대내용

-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천재·지변 기타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대부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 확대 이유

-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천재, 지변 기타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복구가 완료되는 기간까지)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한 이유는 현재도 재해가 발생하면 학교시설 등에 일정기간 재해지역주민을 수용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이 이를 행하고 있는 바
-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며 다만, 이 조항이 기존의 대부자에게 까지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일정기간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오해하여 잘못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게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잡종재산의 무상대부 대상을 추가함. 따라서 앞으로 지방공사 의료원 등이 법적 근거 없이 공유 재산을 무상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새로운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필요한 조치가 요망됨.

다.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시행령 제35조)

-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산업단지의 전부 일부를 분양 받아 외국인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의 공유재산
 - 지방산업단지 · 농공단지의 공유재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감면 대상지역 범위를 정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완료기간동안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음.
-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7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 2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사용허가(임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전액 또는 50%를 감면함

라. 유상대부 절차 및 요건

- 1) 계약 :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는 별지 12호 서식에 의거 작성

2) 대부기간(법 제31조)

가)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나) 기타의 물건 : 1년

4) 대부료

가) 납기

-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매년 정기에 이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초년분과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납부
- 대부료의 납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
 -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 경작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대부계약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다만, 계약종료의 연도에 있어서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전에 납부)

나) 대부재산의 평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토지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장 최근
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
- 토지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다)
 - 첫째연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만으로 할 수 있다.
 - 둘째연도 이후 : 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의 가격에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 대부료율

-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일할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재산평정가격은 나)항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평정가격(토지의 경우)은 사용·수익허가기간 중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평정가격(토지외의 재산의 경우)은 결정 후 3년 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5) 연체대부료(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

가)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함.

나) 대부료의 시효기간은 5년이며, 시효중단도 민법규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납입의 고지로서 시효중단 됨.

6)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

-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부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수익한 경우 당해 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 징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손해보험계약의 체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3조
- 건물·선박·중요한 공작물 및 기계기구를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대부받은 자에게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함.

마. 잡종재산의 가격평가 기준(시행령 제27조)

1) 잡종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하는 경우의 당해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정평가를 생략하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으며,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2) 시가결정

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나)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1년 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

다) 재산가격이 300만원(특별시·광역시와 총괄청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1천만원)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라) 법명이 없어 조문 확인 불가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대장가격을 당해재산의 가격으로 한다.

[재산의 종류]

종 류	국 유 재 산	공 유 재 산
○ 행정재산 - 공용 재산 - 공공용 재산 - 기업용 재산	<p>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1년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청사·관사·학교 등)</p> <p>국가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앞으로 1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향만 등)</p> <p>정부기업(철도, 통신, 양곡, 조달)이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해당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1년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p>	<p>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사업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 또는 앞으로 1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청사·도서관, 각종 회관 등)</p> <p>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 또는 앞으로 1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도로, 하천, 공원, 구거 유수지 등)</p> <p>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 또는 앞으로 1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상·하수도, 지하철 등)</p>
○ 보존재산	<p>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앞으로 5년내에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보존임야, 문화재)</p>	<p>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앞으로 5년내에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문화재 등)</p>
○ 잡종재산	<p>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p>	<p>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공유재산</p>

2. 사용료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 점·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점용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사용료는 개별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자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므로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공익원칙을 적절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즉 당해시설의 설치목적, 이용대상자의 범위, 당해시설이 주민에게 필수적·기초적 시설인지의 여부 등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사한 시설의 요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요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사용료는 실비를 한도로 징수하는 점 및 이익을 받는 특정인에게 징수한다는 점 등에서 수수료와 같은 성격을 가지지만, 사용료는 공공시설이나 재산의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것이고, 수수료는 행정주체의 인적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용료의 종류에는 도로점·사용료, 하천점·사용료, 공유수면점·사용료, 시장사용료, 도축장사용료, 입장료, 기타 사용료로 구분된다.

가. 도로 점·사용료

개 념

도로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축·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수입

1) 도로의 정의

-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11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도로법 제2조 제1항)
- 도로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도로법 제2조 제2항)

2) 도로의 종류와 관리(도로법 제11조, 제22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 제1항)

등급	종 류	관 리 청	비 고
1	고속도로	건설교통부장관	○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관할구역내의 상급도로(고속도로 제외)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임
2	일반국도	”	
3	특별시도 광역시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4	지방도	도지사	○ 면·리도, 농도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적용
5	시도	시장	
6	군도 면·리도, 농도	군수	
7	구도	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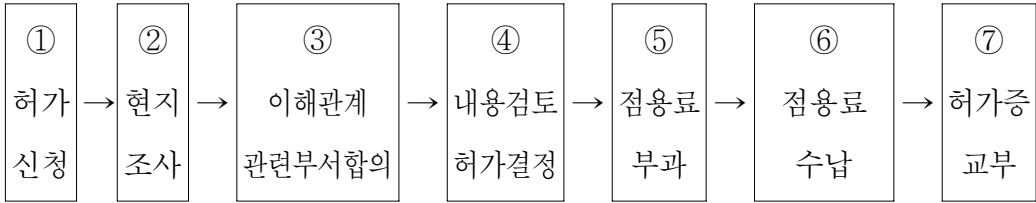
3) 부과근거

- 도로법 제40조 및 제43조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및 제19조
- 자치단체 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도, 시·군·구)

4) 도로점용 처분절차

-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도로법 제40조)

○ 점용허가 과정



5) 점용료 산정기준

-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점용료 산정 기준표 적용
- 연액산정시
 - 1년 미만 : 매1월 = 12분의1년(1월미만 단수 계산제외)
- 점용면적, 표시면적(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의 면적) 산정시
 - 1평방미터 미만의 단수산정 제외
 - 총면적 1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산정
- 점용물의 길이 산정시
 - 1미터미만의 단수 산정제외
 - 총 점용면적이 1미터 미만인 경우 소수점이하 첫째 자리까지 산정
-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
 -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인접한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

6) 점용료 부과 징수

-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3, 자치단체 도로점용료징수 및 징수규칙
- 징수시기
 - ▷ 점용기간 1년 미만 : 허가시 전액 부과·징수

- ▷ 점용기간 1년 이상
 -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가하되
 - 당해연도분 : 허가시
 - 이후년도분 : 당해연도 개시후 3개월 이내 부과·징수
- ▷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점용료 분납, 납부기한 연기 가능
- 징수방법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 발부
- 징수결정 및 납부(자치단체 도로점용징수조례 및 징수규칙)
 - 신규허가 및 변경시 : 즉시
 -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 : 다음연도부터 매년 1월납기로 하고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징수
- 점용료금액이 5천원미만인 경우 : 부과하지 않음(도로법시행령 제26의3③)
-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예 : 1,999원 → 1,900원)
- 징수대장비치

자치단체 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에 의거 대장 작성 비치
- 점용료의 반환
 - 반환사유 : 관리청의 점용허가 취소, 허가받은 자의 도로 미사용, 점용기간단축
 -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위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 반환

7) 점용료의 조정

- 도로법시행령 제26의4, 자치단체 도로점용료징수조례
-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 자치단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이상 증가한 때
-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 점용료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8) 점용료의 감면(도로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5)

- 점용료 전액 면제
 -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 점용료 감면
 -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 점용료 1/2감액
 -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등
 - 도로법시행령 별표2 점용료산정기준 제6호의 경우로 지하점용물 상단의 깊이가 지하20m이상인 경우
- 점용료 4/5감액
 - 도로법시행령 별표2 점용료산정기준 제6호의 경우로 지하점용물 상단의 깊이가 지하40m이상인 경우

9) 징수의 위임

- 시·도지사는 자치단체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점용료의 부과 징수

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 점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 경우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

나. 하천 점·사용료

개 념

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 토석·사력 등 하천 산출물의 채취 및 사용자에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수입

1) 하천의 정의(하천법 제2조)

- 하천이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한다.
- ※ 하천부속물 : 제방, 댐, 하구둑, 호안, 수제, 보, 갑문, 수문, 수로터널, 운하, 관측시설 등

2) 부과근거

- 하천법 제38조
- 하천법 제 12조
- 자치단체 하천공유수면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시·도, 시·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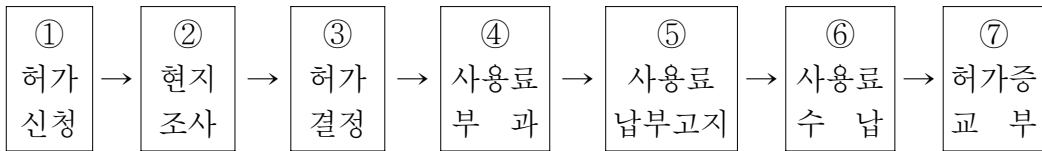
3) 하천의 종류와 관리

종 류	관 리 청	점용허가 및 점용료 과징업무
· 국가하천	· 건설교통부장관	· 시장·군수·구청장
· 지방1급하천	· 시·도시사	· "
· 지방2급하천	· 시·도지사	· "

4) 하천점용의 구분

- 일시점용 : 토석 · 자갈채취 · 스케이트장 · 채빙용 등
- 계속점용 : 댐 · 전기사업 · 농경을 목적으로 한 전답 · 대지 등

5) 하천 점 · 사용 부과징수 절차



6) 점 · 사용료 산정기준

- 1건의 점용료가 600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음
-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정하되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은 단수를 계산하지 아니함.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1/365년으로 한다.
- 점용 면적이 1㎡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함. 다만, 총 점용면적이 1㎡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부당이익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7) 점 · 사용료 과징

- 하천점용료는 일시점용과 계속점용으로 구분
 - 일시점용 : 토석, 자갈채취, 스케이트장, 채빙용 등
 - 계속점용 : 댐, 전기사업, 농경을 목적으로 한 전, 답, 대지 등
- 점용료 징수
 - 징수시기

- 회계연도별 구분 징수
 - 가. 점용허가 연도분 : 허가 또는 허가처분 통보시 선납
 - 나. 이후 연도분 : 당해연도 3월이내 징수
- 토석, 사력 등 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농지세 납기와 동일
- 기타 그 성격상 선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음.
- 점용료 징수 방법
 -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
 -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
 - 가. 당해연도 허가분 : 허가증 교부와 동시 징수
 - 나. 다음연도분 :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납기로 징수

8) 점·사용료의 감면

- 점용료 등 감면기준 제8호의 감면대상은 다음에 의한다.
 - 군사시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100%
(다만, 도급계약에 의한 군사시설 공사시행을 위한 점용은 제외)
 - 주민자력에 의한 새마을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점용 : 100%
 -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1조의 2의 규정을 준용 결정

9) 점·사용료의 반환

- 이미 납부한 점·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하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와 관리청이 잘못으로 토석사력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

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개 념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비법정하천 또는 공유수면과 비법정하천 공유수면내의 자원을 점용허가나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과·징수하는 수입

1) 의 의

- 공유수면이라 함은 바다, 바닷가, 하천, 호, 소, 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수류)로서 국·공유인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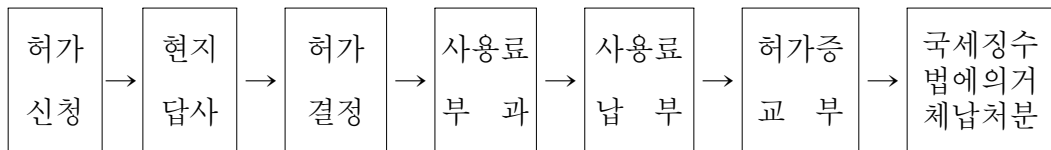
2) 부과근거

- 공유수면관리법 제 9조
-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 16조
- 자치단체 하천공유수면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3) 공유수면의 종류 및 관리

구 분	종 류	법상관리청	점용허가 및 점용료 과 정 업 무
공유 수면	○ 특정지역 (국토건설종합계획법제6조 제2항)	건설교통부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 (권한위임)
	○ 국가공단, 지역안 공유수면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6조)	"	"
	○ 지정항만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2조)	해운항만청장	"
	○ 기타공유수면	시·도지사	"
하 천	비법정하천 (군천,면천,리천)	시장, 군수 구 청 장	"

4) 점·사용료 부과·징수 절차



5) 점·사용료 산정기준

- 1건의 점용료가 600원 미만은 미부과
-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은 단수를 계산하지 아니함.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365년으로 한다.
- 점용면적이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함. 다만, 총 점용면적 1㎡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부당이익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6) 점·사용료 과징

- 점용료 징수

· 징수시기

- 회계연도별 구분징수

점용허가 연도분 : 허가 또는 허가처분 통보시 선납

허가이후 연도분 : 당해연도 3월 이내 징수

- 토석, 사력 등 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

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농지세 납기와 동일

- 기타 그 성격상 선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시·도시사가 따로 정할 수 있음

· 점용료의 징수 방법

-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 즉시 징수

-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당해연도 허가분 : 허가증 교부와 동시 징수

익년도분 : 전년도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납기로 징수

7) 점·사용료의 감면

- 점용료등 감면기준 제8호로 감면대상은 다음에 의한다.

- 군사시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100%

(다만, 도급계약에 의한 군사시설 공사실행을 위한 점용은 제외)

- 주민자력에 의한 새마을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시행 점용 : 100%

-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을 준용 결정

8) 점·사용료의 환부

- 이미 납부한 점·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와 폐천 및 폐구거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공유수면 등에 의한 요금반환의 경우
 -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

라. 시장사용료

개 념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구입의 편의를 도모하고 상업의 정상적인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징수되는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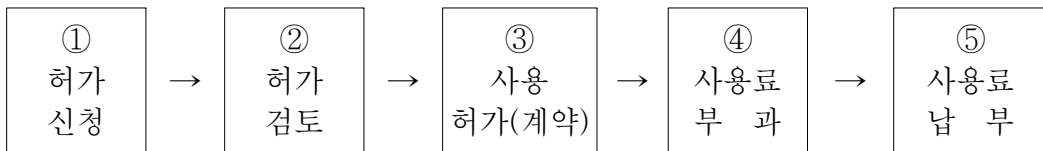
1) 부과근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35조
- 자치단체 공설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시·군·구)
-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시·군·구)

2) 시장의 종류와 관리

시장의 종류		관 리 운 영 자
상 설 시 장	점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가 직접관리 ○ 상설시장은 법인, 정기시장은 사회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가능
	장옥	
	노점	
정 기 시 장	장옥	
	노점	
시한 및 노상 시 장	시한	
	노상	

3) 시장사용허가 처분절차



4) 사용료 산정기준

- 자치단체 조례의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에 의한 산정기준표
- 자치단체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 사용료는 년액·월액·일액으로 함
 - 년 액 : 선납
 - 월 액 : 16일이상일 때, 16일 미만일 때 반액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

5) 사용료의 감면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 변영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마. 도축장사용료

개 념

식용에 공급할 목적으로 가축을 도살·해체하기 위하여 도축 작업장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는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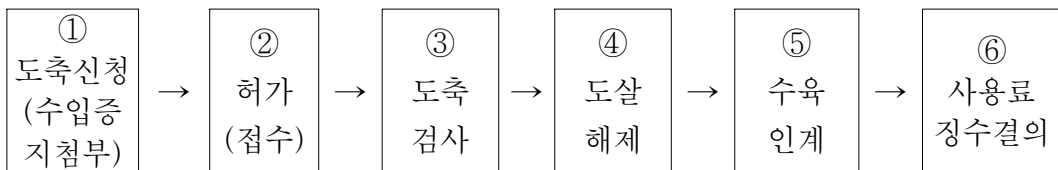
1) 부과근거

-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8조 (97. 12. 31 법명변경)
-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23조
- 자치단체도축장설치운영조례

2) 도축장 종류와 관리

- 도축장 종류 : 도축장, 간이도축장, 도계장, 간이도계장, 도토장
- 관리자 : 자치단체 또는 민간위탁 운영

3) 도축장 사용료 과징절차



4) 사용료 산정기준

- 자치단체 도축장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한 산정기준표
- 사용허가취소 및 사전신고없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사용료는 신청시 수입증지로 소인함

바. 입장료

개 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문화창달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사용자(이용자)에게 징수하는 공연장 등의 입장수입을 말함

1) 부과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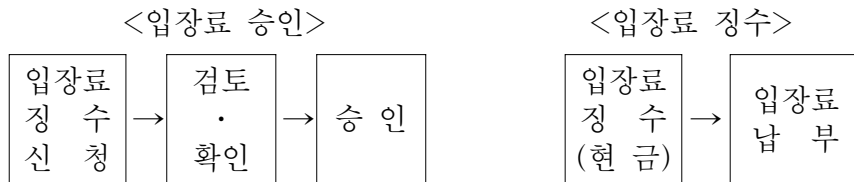
- 관광진흥법 제67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40조 (법명변경, 2005. 3. 31)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6조
- 문화재 보호법 제44조
- 자연공원법 제37조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3조
- 자치단체 각종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장료 종류와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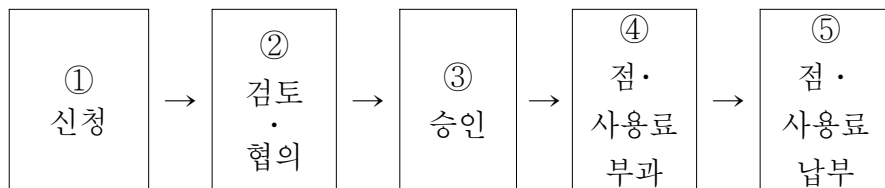
구분	종 류	지 정 자	관 리 자	비 고
관광 사업	· 관광지 · 관광단지	· 건설교통부장관	· 자치단체장 · 사업시행자	관광시설열람 및 이용시 관람료 또는 이용료 징수
도시 공원	· 어린이공원 · 근린공원 · 도시자연공원 · 묘지공원 · 체육공원	· 행정구역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공원관리청 · 공원관리자	도시공원내 점용허가시에는 점용료징수
문화재	· 유형문화재 · 무형문화재 · 기념물 · 민속자료	·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체육부장관 · 시도지정문화재 · 시도지사 · 문화재자료 · 시도지사	소유자, 보유자 관리단체 자치단체	
자연 공원	· 국립공원 · 도립공원 · 군립공원	· 환경부장관 · 특별시장, 광역시장 · 시장, 군수	관리공단 자치단체	공원의점용 및 시설사용자에 대하여는 점·사 용료 징수

3) 입장료 등 징수절차

○ 입장료



○ 점·사용료



4) 입장료 산정기준

- 자치단체 공원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한 산정기준표
- 물가상승율과 유사공원의 입장료와 비교하여 관리청의 조정위원회 심의 산정
- 점·사용료 : 점·사용의 종류에 따라 토지임대, 수확예상액, 시가 등으로 하여 산정
 -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함
 - 점·사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함
 - 점·사용기간이 1년미만일때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
 - 1월미만일 경우 15일초과는 1월로, 15일이하는 2분의 1월로 계산

5) 입장료의 감면

-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경
-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
- 6세 이하인 어린이 및 경노우대 대상자
- 기타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사. 기타 사용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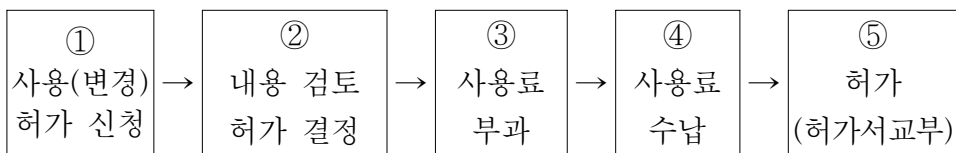
개 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사용료 수입중 공유수면 점·사용료, 시장 사용료, 도축장사용료, 입장료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료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공원, 운동장, 묘지, 복지회관, 시민회관, 화장장 등의 공공 시설 및 재산의 사용료 수입 등이 있으며 자치단체별 그 종류가 다양함

1) 부과근거

-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7조 및 제139조
- 지방재정법 제31조
- 지방자치단체 조례(시·도, 시·군·구)

2) 과징절차



3) 사용료금

지방자치단체별, 공공시설별로 사용요금에 각각 달리 규정되어 있으나 대개는 ①기본시설사용료, ②부대시설사용료, ③기타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부과징수

3. 수 수 료

가. 의 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인에게 제공한 역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역무에 대한 비용 및 보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수입증지)를 말한다

☞ 수수료와 사용료의 차이

- 수수료는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징수
-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나 영조물 사용이익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

나. 징수근거

- 지방자치법 제139조,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수수료 표준요율규정 제정 〉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06.6.29)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발급 수수료 등 5종의 제증명 수수료에 대하여 현실화하여 전국적 통일을 기함

○ 개정

-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수수료 중 현실화 대상 수수료를 추가로 선별하여 『수수료 표준요율 규정('06.6 제정)』에 반영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신고 등 인허가 관련 수수료 11종 추가

○ 현행규정

종 류	금 액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80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지방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납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수수료	1건당 5,000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연장) 신청수수료	1건당 3,000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 증명 수수료	1통당 1,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0원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다. 종 류 (2005. 6. 30 현재)

- 개별법령에 의한 수수료 : 304종, 조례에 의한 수수료 : 2,214종

라. 수수료징수의 3원칙

- 특정성의 원칙 - 특정인에게 역무를 제공(주민등록등·초본, 제증명 발급 등)
- 응익성의 원칙 - 특정인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한 행위와 관계될 때(산림벌채허가, 하천점·사용허가 등)
- 비용변상의 원칙 - 특정인을 위한 사무처리로 인한 비용 범위내의 변상(분뇨수거수수료 등)

마. 징수방법

- 현금 또는 수입증지

바. 수수료 원가계산요령

- 원가계산절차
기초조사 → 원가계산 → 실비보상분석
- 기초조사항목
 - 당해수수료명칭, 담당부서, 근거법규, 현행요율, 최근3년간 평균처리건수 증가율
 - 업무처리흐름 및 소요시간
 - 신청서접수, 관계공부확인, 현지조사, 결제 등
- 원가계산항목
 - 인건비, 여비, 감가상각비, 인쇄제본비, 광열비, 소모품비, 기타경비

(원가계산의 예)

기 초 조 사 표

조 사 항 목	내 용
1. 수수료명칭	토지지목변경신청
2. 담당부서	도·시·군 지적과
3. 근거법규	지적법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
4. 현행요율	500원
5. 3년간평균처리건수 증가율	5%
6. 업무처리흐름 및 소요시간	① 신청서접수 : 2분 ② 관계공부확인(지적도, 토지대장 등) : 5분 ③ 사실조사 및 확인 : 30분 ④ 지목변경신청서결재 및 관계공부정리: 5분 ⑤ 지목변경 처리통지

원 가 계 산 표

(단위 : 원)

구 분	산 출 기 초	원 가 액	
계		3,554.74	
원 가 항 목 별	인 건 비	1,559,837원 ÷ 30일 ÷ 480분 × 42분	4,549.5
	여 비	5,000원 ÷ 240분 × 30분	625.0
	인쇄제본비	3(신청서+복명서+통지서) × 6.46 (A4복사용지가격)	19.38
	광 열 비		
	소모품비	현상액, 복사액, 복사지, 풀, 인주, 스탬프, 볼펜 등	3.8
	기타경비	전화 등 기타경비	40

※ 참고 - 공무원연금기여금조건표, 조달청판매가격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등

(1) 수입증지 수수료

(가) 징수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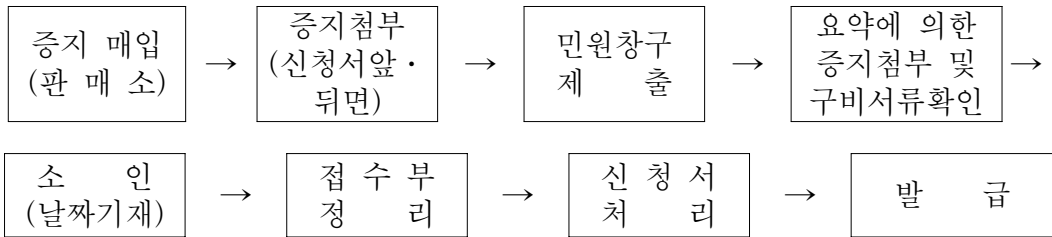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9조
- 시·도 및 시·군·구 수입증지조례

(나) 종 류

- 서울특별시 : 18종(자치구 17종), 기타 시·도 : 13종

(다) 처리기관 : 시·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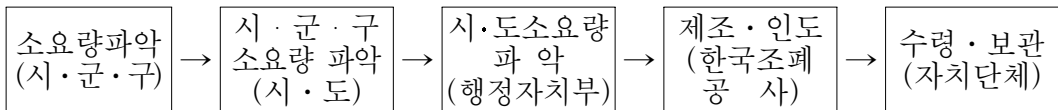
(라) 처리흐름도



(마) 사무처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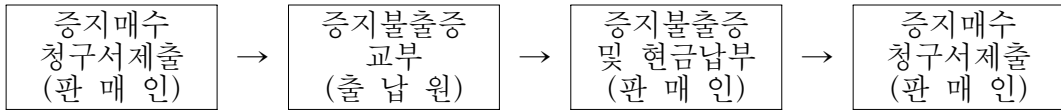
○ 수입증지 제조

- 지방자치단체의 발행 요청으로 한국조폐공사에서 인쇄
다만, 증지 하단에 각 지방자치단체명을 문자로 표기



○ 수입증지 보관 및 판매

- 수입증지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보관
- 수입증지는 위탁판매하되 판매인을 지정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판매(위탁판매 수수료 지급 : 5%)



- 증지판매소는 민원실내 또는 민원실로부터 500m내에 설치
- 금고에서는 매일 증지 불출상황을 출납원에게 통보
- 판매인은 장부를 비치하여 증지 수불상황을 기록관리
- 수입증지 판매신청
 - 시·도 수입증지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시·군·구 수입증지 - 시장, 군수, 구청장

(바) 수입증지의 첨부 및 소인

- 수입증지는 각종 민원신청서의 여백 및 이면하단에 첨부
- 수입증지는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체에 걸쳐 명백히 소인(소인날자 반드시 기재)하며, 신청서가 2통 이상일 경우 각통마다 수입증지 첨부
- 소인된 증지와 훼손된 증지는 무효
- 수수료의 성질상(고액) 수입증지를 첨부키 곤란한 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증 첨부

(사) 계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

- 금고소재지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 지역은 5일안에 금고에 납부
- 인증기 사용수입금은 수입증지 요금관리대장에 의거 일일결산
- 계기의 고장 및 기타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함

- 요금계기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는 위탁판매 수수료가 없음

(2)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개 념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및 지정된 청소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1톤 미만의 사업장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지정된 봉투를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

(가) 징수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 13조 및 제 14조
- 시·도 및 시·군·구 조례

(나) 용어정의

- 폐기물 : 쓰레기, 연탄재, 오수, 폐유, 분뇨, 동물의 시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 대기(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대형폐기물 :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 재활용가능품 : 종이류, 캔류, 고철류, 병류, 플라스틱류, 의류, 스티로폼 등을 재활용품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한 폐기물

(다) 종량제 폐기물 종류 및 배출방법

○ 생활폐기물 처리

- 처리대상 : 가정쓰레기 및 소규모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일반쓰레기 등
- 처리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작 판매하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

○ 가정사업계용 폐기물 처리

- 처리대상 :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 깨진유리, 스티로폼, 이·미용실에서 배출되는 머리카락 등의 쓰레기
 -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 처리방법 : 가정사업계용(황색)봉투에 담아 배출

○ 대형폐기물 처리

- 처리대상 : 가구나 전자제품같이 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쓰레기
- 처리방법 : 배출한 폐기물 전면에 조례로 정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지정된 수거일 및 장소에 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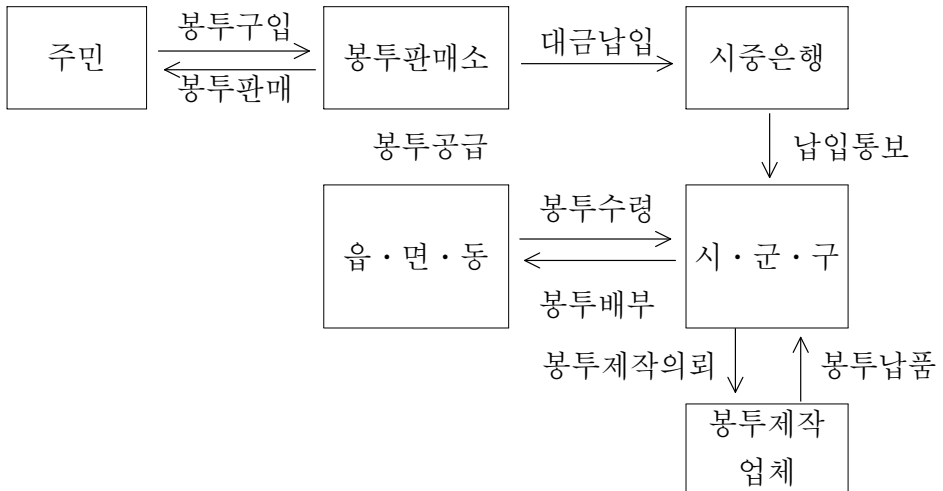
○ 기타 폐기물 처리

- 다량 배출자의 폐기물 : 배출자 스스로 또는 폐기물 업자에게 위탁하여 배출
- 재활용 가능폐기물 :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배출 및 수집·운반·처리 방법은 조례로 정하여 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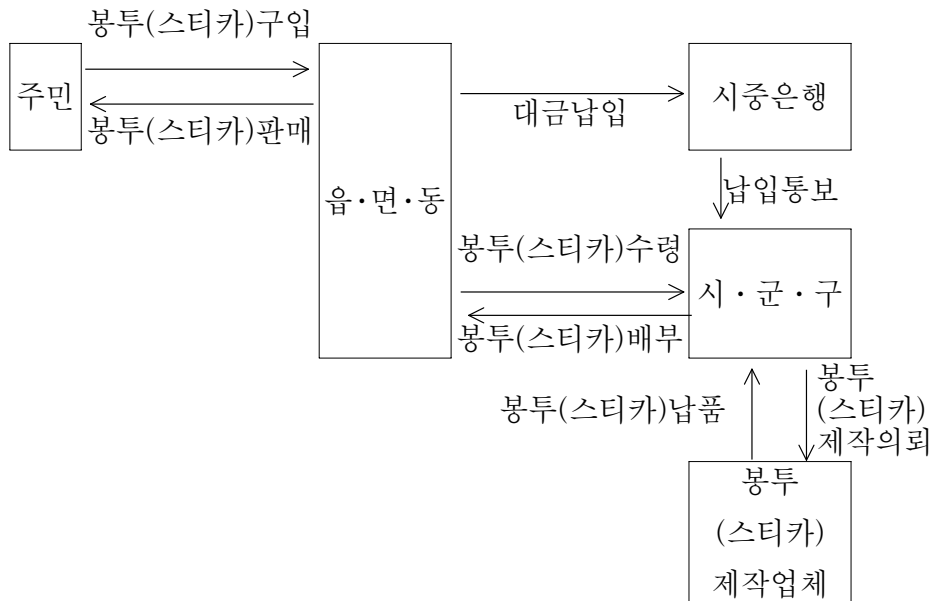
(라) 종량제 폐기물 처리기관 : 시·군·구

(마) 종량제 폐기물 처리과정

○ 생활폐기물 처리



○ 가정사업계용 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처리



(바) 봉투의 종류 및 규격

- 봉투의 종류 및 규격
 - 일반용과 공공용, 별도처리용으로 구분
 - 봉투의 용량은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제작
- 종량제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
(예시)

봉투용량(ℓ)	봉투규격 (가로×세로, cm)	두께(mm)	용도
5	26 × 46.5	0.020	일반용
10	33 × 56.5	0.020	일반용
20	42 × 69.5	0.025	일반용
50	56 × 91.5	0.030	일반용, 공공용
100	71 × 113.5	0.050	일반용, 공공용
30	48 × 57	0.06	별도처리용봉투
60	60 × 72	0.08	별도처리용봉투
125	80 × 90	0.1	별도처리용봉투

(사) 봉투 가격(수수료 요율)

인천중구 예시(2004. 1현재)

(단위 : 원)

기관별	구분	일반용					별도 처리용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30ℓ	60ℓ	125ℓ	p.p 60
인천시	공급가	150	289	570	1,418	2,821	2,950	4,850	9,540	2,820
	소매가	160	310	620	1,540	3,060	3,220	5,290	10,400	3,070

□ 산정 기준

- 일반용봉투가격 = 【봉투단가(ℓ 당) × 수수료자립도 × 봉투규격(ℓ)】 + 판매수수료 + 봉투제작비
- 사업장용봉투가격 = 용량(ℓ) × ℓ 당 처리비 + 운반비 + 봉투제작비

(3)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개 념

지방자치단체 도시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중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을 수집·운반·선별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입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 46조 제 1항 및 제 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6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폐기물 재활용자가 처리하고 있다.

(가) 징수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8조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
- 시·도 및 시·군·구 조례

(나) 종 류

종이류, 캔류, 병류, 금속류, 플라스틱류, 기타 등 재활용성 폐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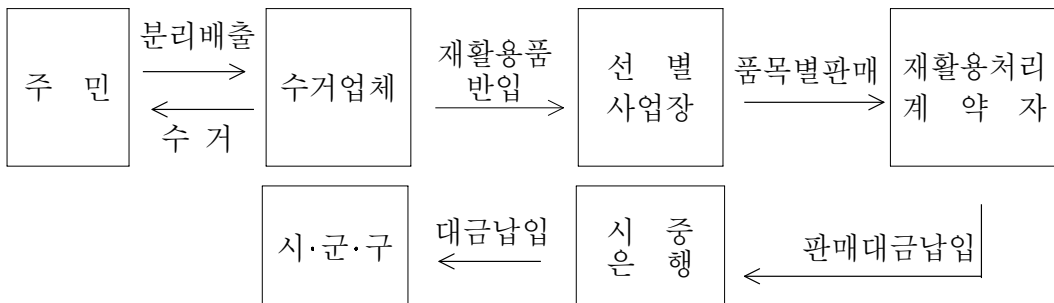
(다) 처리기관

시·군·구

(라) 재활용품 판매금 산정기준

- 실거래 가격에 의한 단가결정
- 무게(kg) × 단가 = 수입

(마) 사무처리절차(흐름도)



(바) 사무처리내용

○ 재활용품 수거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주민이 직접 분리·배출
- 중점수거대상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의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품목
-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회수체계를 지역실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정함

○ 종류, 성상별 판매

- PET, 플라스틱 등 종류별, 성상별 재분류
- 중간처리업체에 판매처리

(4) 기타 수수료

개 념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수입중 증지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을 제외한 수수료 수입을 총칭함

(가) 징수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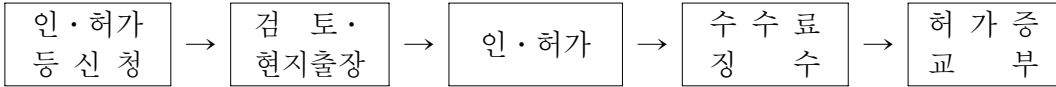
- 지방자치법 제137조
- 개별법령 또는 자치단체 조례

(나) 종 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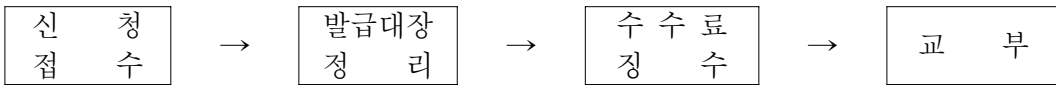
- 현금징수수료

(다) 징수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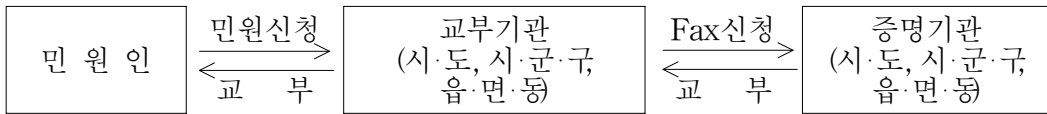
○ 인·허가



○ 제증명등 발급



○ FAX민원 발급



4. 사업 수입

가. 사업장생산(생산) 수입

개 념

사업장 생산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각종 사업장을 운영하여 얻어지는 생산물 및 부산물을 주민에게 보급·매각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입

(1) 부과근거

양곡관리법, 잠업법, 국립종축원 규칙, 농촌진흥청 규정, 자치단체 조례 등

(2) 사업의 종류

분야	사업명	법적근거	처리기관	비고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원종 및 보급종 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보급종 • 밭작물 원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자, 옥수수, 밀, 보리, 콩, 팥, 참깨, 땅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곡관리법 • 물품관리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원종장 • 옥수수원종장 • 감자원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작물 시험 및 증식 ○ 전작물시험 ○ 과채류시험 ○ 과수 및 약초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진흥청 훈령 (생산물처분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진흥원 • 농업기술원 • 농촌지도소 	
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분양 및 생산물 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우, 유우, 종돈, 흑염소 등의 분양 및 매각 • 낙농, 우유생산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종축원 종축배부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축장 • 축산기술연구소(센터) • 농축산사업소 	
산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림수 및 관상수 판매 ○ 종실 매각 및 분양 ○ 잔디매각 및 분양 ○ 송이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관리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환경연구원(소) • 녹지사업소 • 도유림사업소 	
수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어분양 및 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어, 송어, 은어, 뱀장어, 잉어, 산천어, 이스라엘잉어, 빙어, 탈피아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면(개발)시험장 • 수산(자원개발)연구소 	
잠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종 및 절각견 매각 ○ 묘목 및 부잠사 매각 ○ 누에가루 생산 및 수분별 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업법 • 공유재산관리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업검사소 • 잠종장 • 잠사곤충사업장 • 농축산사업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굴착복구용 아스콘 판매 ○ 역청생산 매각 ○ 생활·공업용수 사용료부과 ○ 공원부산물(녹용·동물)매각, 분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안전관리사무소 • 도로관리사업소 • 공단관리사무소 • 공원관리사무소 	

(3) 사업장 수입

○ 과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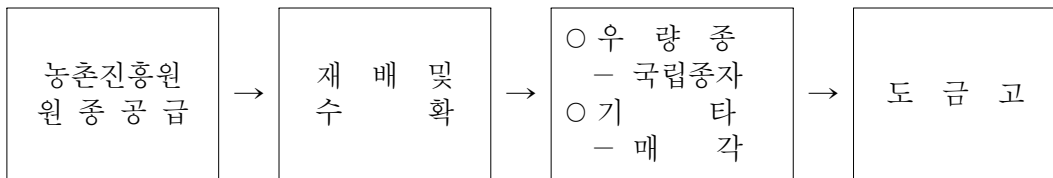
- 사업장수입은 각 사업장별로 징수방법이 상이
- 우량종자 국립종자공급소 공급(국비보조)
- 우량종자 이외의 종자 부산물 매각수입
- 우량묘목 및 접·삽수 묘목공급 징수

○ 요율 및 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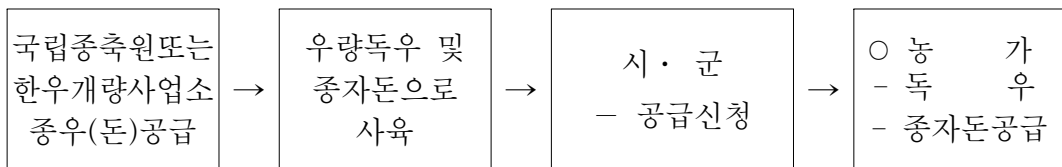
- 조례에 의한 요율표 및 시가에 의거 징수

(4) 사업장 생산수입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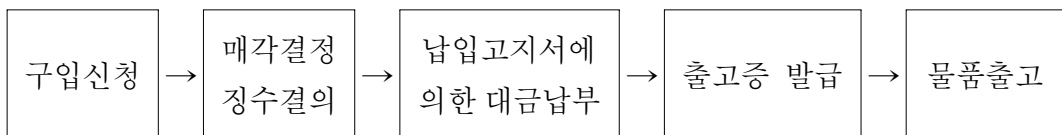
○ 농산물 원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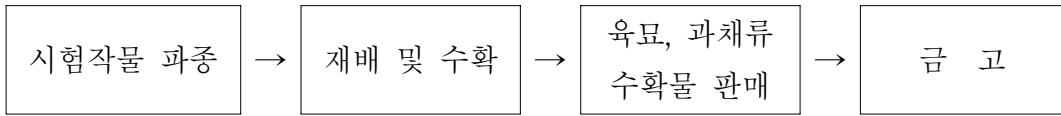
○ 종축장(축산기술연구소)



○ 산림환경연구소(녹지사업소)



○ 농촌진흥원(농업기술원)·농촌지도소



나. 주차요금수입

개 념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장운영 요금수입

(1) 부과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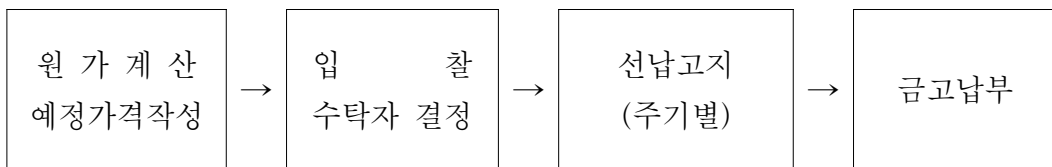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자치단체 조례

(2) 사업의 종류

- 사 무 명 : 주차요금
- 처리기관 : 시·군·구

(3) 징수절차

<위탁운영의 경우>



(4) 사무처리내용

- 부과기준 : 급지별, 시간별 요금이 상이

- 징수방법
 -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 주차카드 부착방법
 - 주차표 교부방법 등
- 면 제
 - 도로교통법 제2조, 6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 주차장설치비용 납부로 인한 면제

5. 징수교부금 수입

가.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개 념

특별시 및 시·도의 소관세입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과 및 징수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고 징수금중 일정율의 교부금을 처리비로 교부함으로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수입

(1) 징수근거

- 지방세법 제53조 (도세징수의 위임)
-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도세의 징수교부율)
- 자치단체 (시세, 도세)조례 (시세, 도세 징수교부금)

(2) 징수교부금 대상 세목

- 시세 :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지역개발세, 레저세, 공동시설세, 과년도 시세수입
- 도세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레저세, 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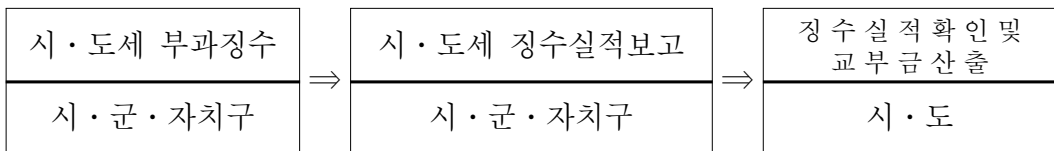
도 도세수입

(3) 징수교부금 교부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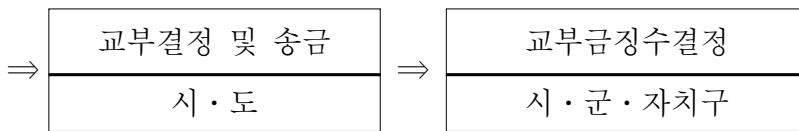
○ 근거 : 시·도 조례

○ 시기 :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매분기말 또는 매월말 등)에 의한 징수실적을 근거로 하여 다음달 20일까지 교부

(4) 처리흐름도



※ 다음달 15일까지(재무회계규칙 제45조)



※ 다음달 20일까지(도세징수금교부금조례)

(5) 징수교부율

○ 시·도세 : 징수금의 3/100

※ 공동시설세는 인구에 관계없이 3/100적용

나. 사용료 징수교부금

개 념

시·도 세입에 속하는 하천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도로점용료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징수하여 광역자치단체에 납입할 경우 징수위임기관인 시·도에서는 납입한 징수금을 세목별 관련규정에 의한 교부율에 따라 교부하므로써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수입

(1) 근 거

- 하천공유수면 점·사용료
 - 하천법 제38조 (점용료등의 징수)
 - 하천법시행령 제57조 (권한의 위임)
 -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 (점용료등의 징수)
 -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점용료 또는 사용료)
 -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점용료등)
 - 자치단체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시·도)
- 도로점용료
 - 도로법 제43조 (점용료의 징수)
 -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점용료의 산정기준)
 -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3 (점용료의 부과·징수)
 - 자치단체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도)

(2) 하천에서 생긴 수입금의 사용제한 및 사용기준

- 근거 : 하천법 제57조 (수입금 사용제한)
 - 하천법시행령 제40조 (수입금사용의 기준)
- 수입금사용제한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천에서 생기는 부담금, 점용료, 사용료, 양여받은 폐천부지로 인한 수입금 및 기타 수입은 하천의 관리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 수입금 사용의 기준 :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 선순위 2개항을 우선 사용
 - 하천의 유지관리비
 - 하천 구역안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 지방하천 및 준용하천의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과 하천대장 작성, 관리 소요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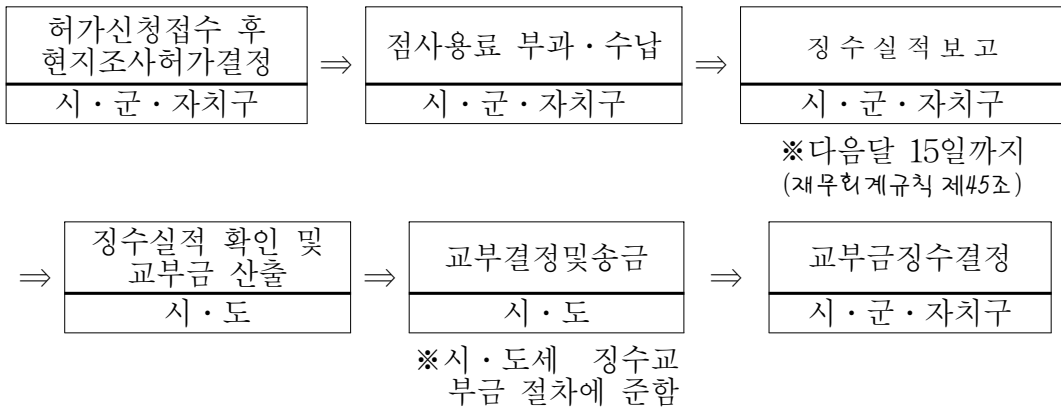
- 하천수입 관리대장 및 폐천부지 관리대장의 작성·관리 소요비용
- 폐천부지의 관리 처분비용
- 하천 공사비
- 기타 하천관리 소요비용

(3) 징수교부금 교부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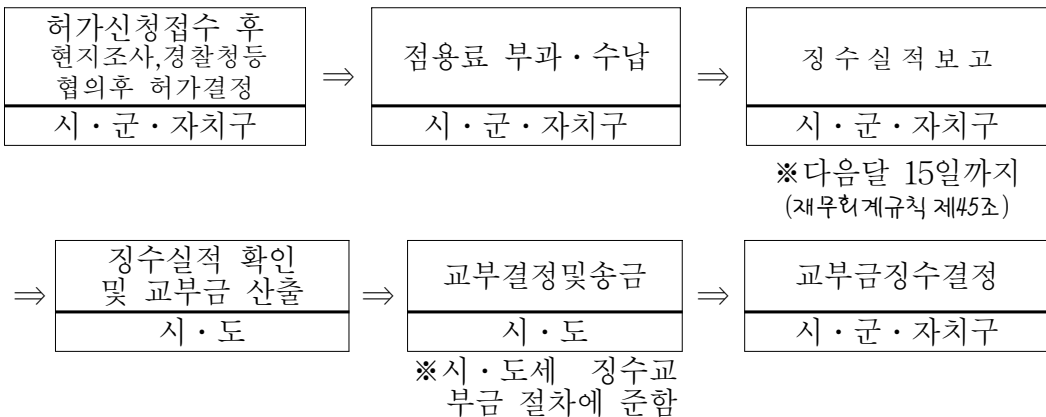
- 자치단체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도세 징수교부금 교부시기에 준하여 처리함이 바람직함
- ※ 다음달 20일까지 교부

(4) 징수교부금 교부절차

- 하천·공유수면 점·사용료



- 도로점용료



(5) 징수교부율

○ 하천 공유수면 점·사용료

· 근 거 : 자치단체조례로 정함 (하천법 제38,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3조)

· 내 용

－ 점·사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군·자치구 위임시 :

징수액의 30/100

－ 점·사용료 허가업무와 부과징수를 시·군·자치구 위임시 :

징수액의 50/100

※ 위임을 받은 시·군·자치구가 징수업무를 타 시·군·자치구에 위탁할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5/100를 징수기관에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업무와 부과징수 업무를 동시에 위탁할 경우에는 30/100을 해당기관에 교부

○ 도로점용료

· 근 거 : 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도로법 제43조 제2항)

· 내 용 : 징수액의 50/100

다. 벌규위반차량 과징금 징수교부금

개 념

시·도 소관의 벌규위반차량 과징금 세입업무중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과·징수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징수금중 일정율의 교부금을 처리비로 교부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수입

(1) 징수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과징금의 부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31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 자치단체 관련조례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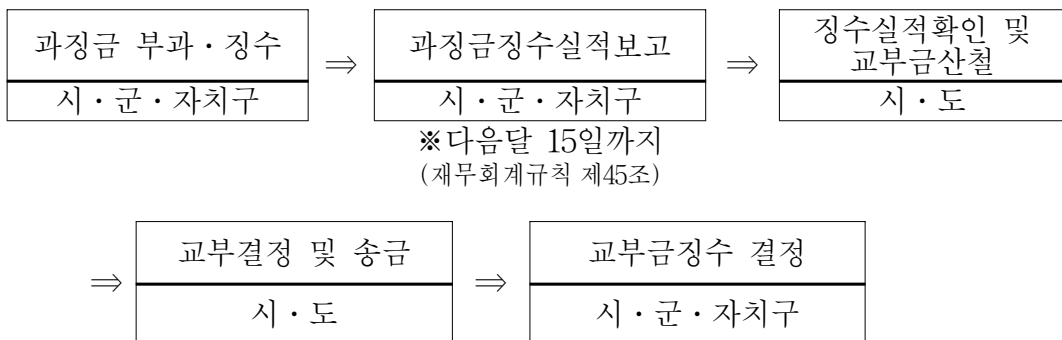
(2) 과징금 사용용도 제한

- 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제4항 (사용용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 (과징금의 용도)
- 과징금 사용용도
 - 화물터미널의 건설 및 확충
 - 공동차고지(사업자단체·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임차한 차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 및 확충
 - 경영개선 기타 화물에 대한 정보제공사업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징수교부금 교부시기

-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이외에는 시·도세 징수교부금 교부 시기에 준하여 처리함이 바람직함 (다음달 20일까지 교부)

(4) 징수교부금 교부절차



(5) 징수교부율

- 과징금 징수액의 30/100

라. 각종 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 수입

개 념

부담금 및 부과금별 개별법령에 의하여 부과 및 징수업무를 위임받은 자치단체가 관련업무를 수행하면서 징수금의 일정액을 업무처리비용으로 관련부처 또는 위임받은 기관으로부터 교부받는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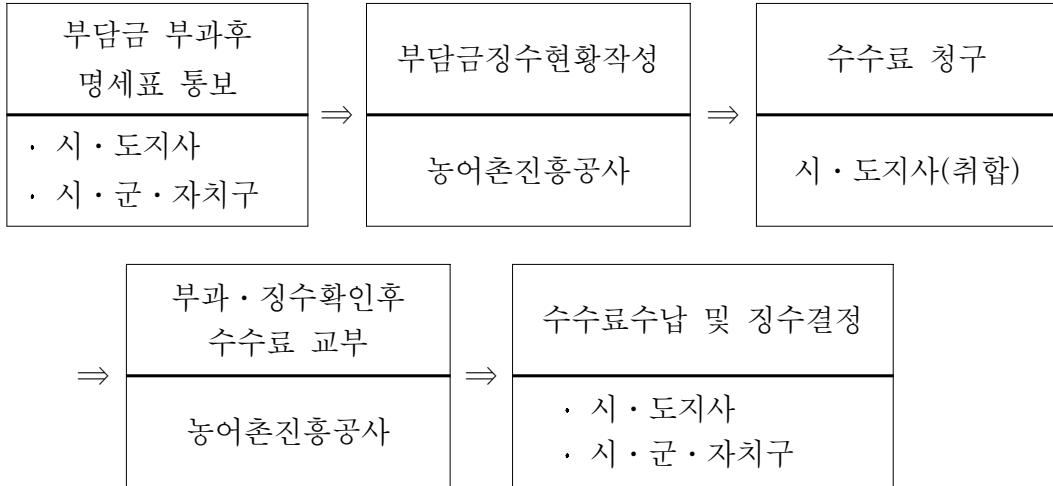
(1) 농림부 소관 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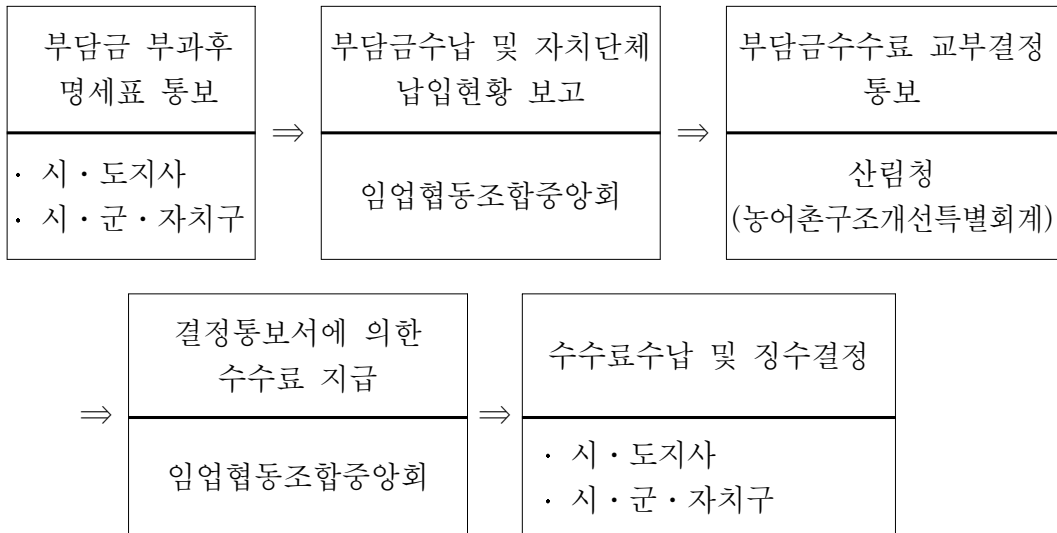
교부금명	관계법령	교부금사용범위	교부방법	교부율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수수료 수입	·농지법 제 38조 및 제 55조	·부담금 부과에 따른 인건비, 현지출장여비 등의 업무비용 및 농업부문 투자 비용		·시·도 및 시· 군·자치구 : 납입액의 8% ※ 농어촌진흥공 사는 납입액의 2%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산지관리법 제 19조 ·산림관리법시행령 제 25조	·부담금 부과 결정 에 따른 인건비, 현지확인을 위한 출장여비 등과 산 림사업의 투자 비용	·매분기별로 산림청장이 징수실적 확인하여 징수자치단체별 교부	·시·도 및 시 ·군·자치구 :납입액의 5%

○ 처리흐름도

·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교부금



· 산림전용부담금 수수료 교부금



(2) 환경부 소관 부담금 및 부과금 징수교부금 수입

○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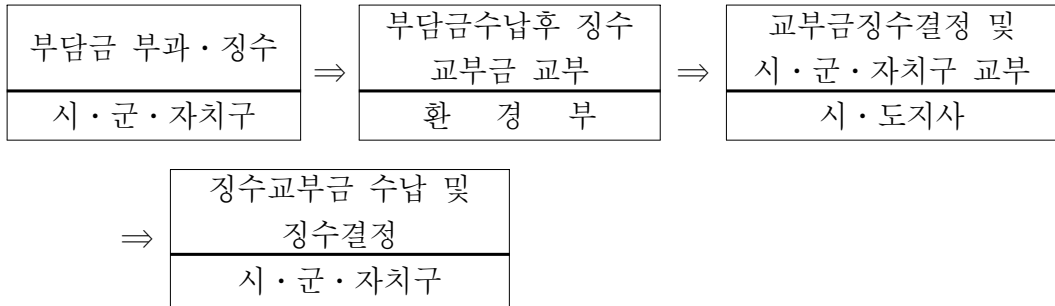
교부금명	관계법령	교부금사용범위	교부방법	교부율	비고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11조 · 환경개선비용부담금부과 징수업무처리규정 (환경부훈령)	· 부과징수비용 등	· 환경부에서 수납기관 별로 구분 시·도 일 괄교부 · 환경부훈령에 의하여 시·군·자치구에 재 교부	· 징수액 의 30%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 먹는물관리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 먹는물관리법시행규 칙 제26조	· 먹는물샘물제조 업자 기타 샘물 개발허가자에게 징수한 50/100 은먹는물, 지하 수등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사용 · 환경부소관 50/ 100중 20%는 부과·징수 경비 사용	· 먹는물관련 사업 기타 샘물 개발허가자가 소 재한 시·군·자치구에 교부 · 환경부에서 징수 실적 에 따라 수납기관별교 부	· 징수액 의 50%	· 환경부소 관50% 중 20%
수질오염배 출부과금 징 수 교부금	·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 · 수질환경보전법시행 령제28조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2007.5.17)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 부과·징수 비용 등	· 환경부에서 매월 정산 하여 다음달까지 시· 도 교부 · 시·도는 시·군·자치 구에 재교부	· 징수액 의 10%	
대기오염 배출 부과금	· 대기환경보전법제35조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7조	· 부과·징수 비용 등	· 환경부에서 매월 정산 하여 다음달까지 시· 도 교부 · 시·도는 시·군·자치 구에 재교부	· 징수액 의 10%	
가축분뇨의 처리비용부담	· 2006.9.27제정 · 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법 시행규칙 25	· 징수비용 등	· 환경부에서 매월 정산 하여 다음달까지 시·도지사에게 교부 ·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에 재교부	· 징수액 의 10%	

※참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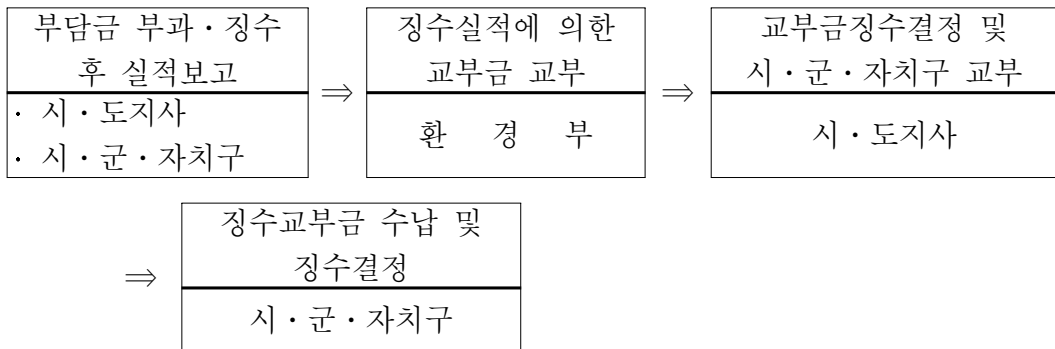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은 1996. 9. 27 폐지함과 동시에 오수 및 분뇨 처리비용은 하수도법 제 6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 35조 원인자 부담금으로 개정, 축산폐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서 가축분뇨처리 비용으로 개정 운영하고 있음

○ 처리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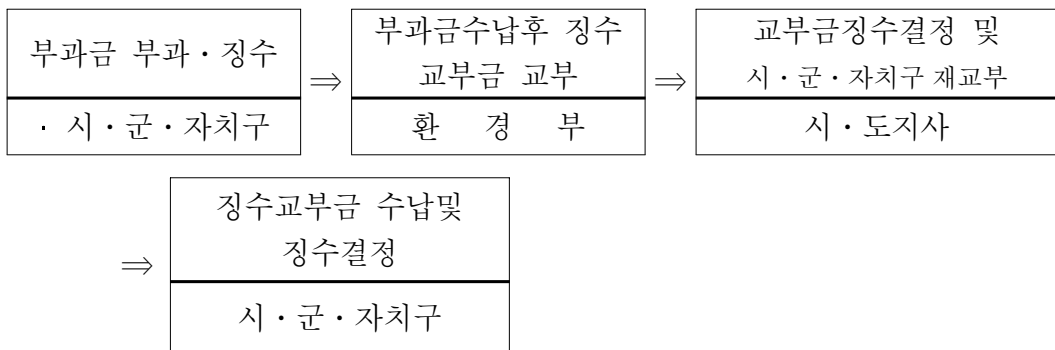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 기타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수질오염, 대기오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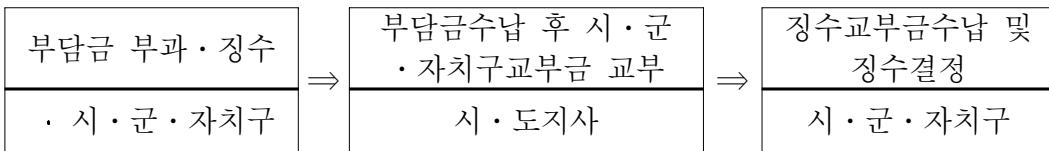
(3) 건설교통부 소관 부담금 징수교부금

○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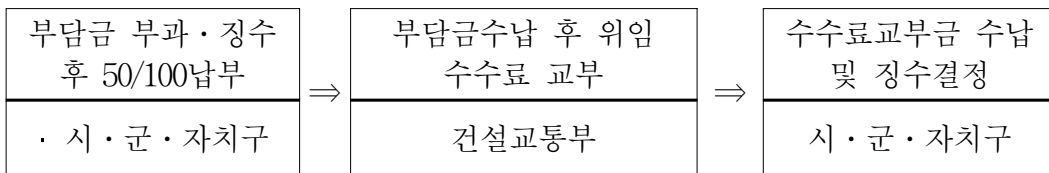
교부금명	관계법령	교부금사용범위	교부 방법	교 부 율	비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자치단체수입)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8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제29조 · 시·도조례	· 교통시설관련사업 및 부과·징수업무 등	· 시·도조례에 의하여 시·군·자치구에교부	· 징 수 액 의 30%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3조,4조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	· 관련법 제4조에 관련되는 사업에 징수금의 50/100 사용 · 건설교통부소관50/100 중 7%는 부과·징수경비사용(분기종료 다음달 지급)	· 건설교통부에 서기한내 교 부	· 징수액의 50/100은 시·군·자치구 귀속 · 건설교통부 소관50%중 7%	

○ 처리흐름도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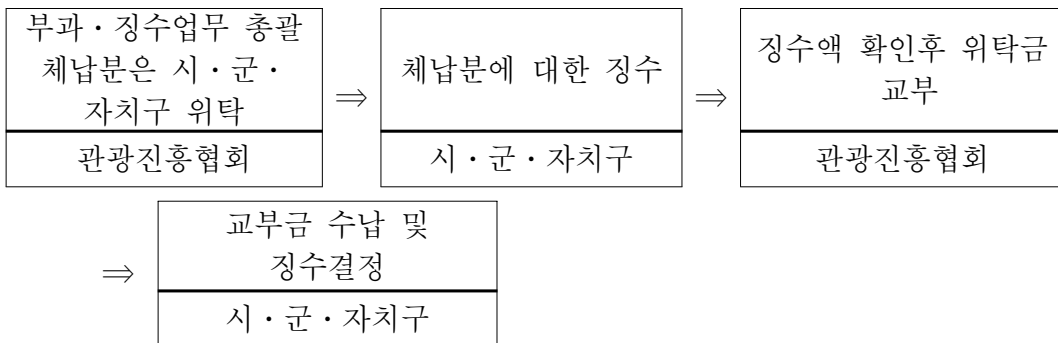
(4) 문화체육부 소관 부담금 징수교부금

○ 현 황

교부금명	관계법령	교부금사용범위	교부방법	교부율	비고
관광지개발 이용자 부담 금및 원인자 부담금	· 관광진흥법 제64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54조	· 징수에 필요한 비용	· 관광진흥협회의 정관에 의함	· 징수액의 10%	

○ 처리흐름도

- 관광지개발 이용자 부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마.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

개 념

시·군·자치구가 결핵으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결핵약제를 보급한후 징수한 수수료를 결핵 퇴치 재활용사업비로 당해 시·군·자치구에 교부함으로써 생기는 수입

(1) 징수근거

○ 결핵예방법 제29조 (전염성결핵환자의 의료)

○ 자치단체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 시·도 위임조례로 위임된 경우는 시·군·자치구 자체수입으로 처리

(2) 항결핵제 수수료 사용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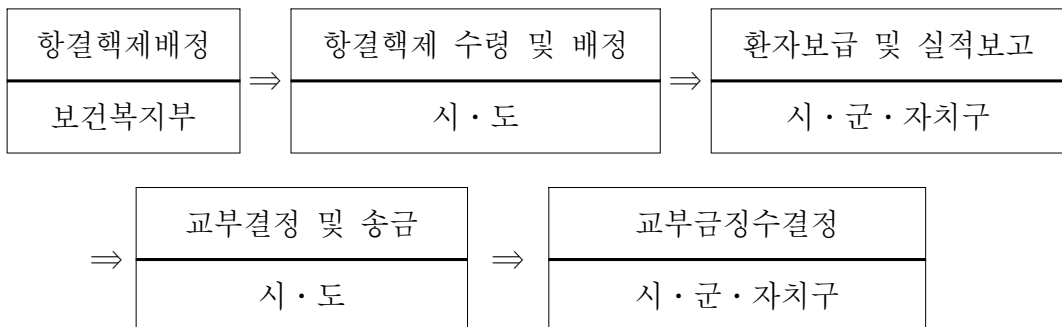
○ 결핵관리요원의 여비

○ 결핵관리요원의 기동력 확보를 위한 장비구입

○ 우수결핵관리요원의 시상금

○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핵사업비

(3) 처리흐름도



(4) 징수교부율

○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금의 30/100

6. 이자수입

개 념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금을 금고에 예치함에 따른 과실수입으로서 특히, 세입과 세출의 시차에 의하여 발생한 유휴(여유)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관리(운용)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

가. 자금관리의 의의

- 자금관리란 공공조직의 현금 유·출입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유동성)을 즉시 확보하는 동시에 유휴자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금관리의 목표는
 - 공공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 필요한 유동성을 즉시 조달할 수 있게 하며
 - 투자가능한 자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자금관리는 재정수입확충, 공금의 안전성, 행정의 효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수단이 되며, 효과적 자금관리는 투자수입을 얻게 함으로써 세입증대의 효과를 낳고, 수납담당자 및 자금운용 기관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게 하며, 철저한 입출금 통제를 통해 징수실현율을 높임

나. 징수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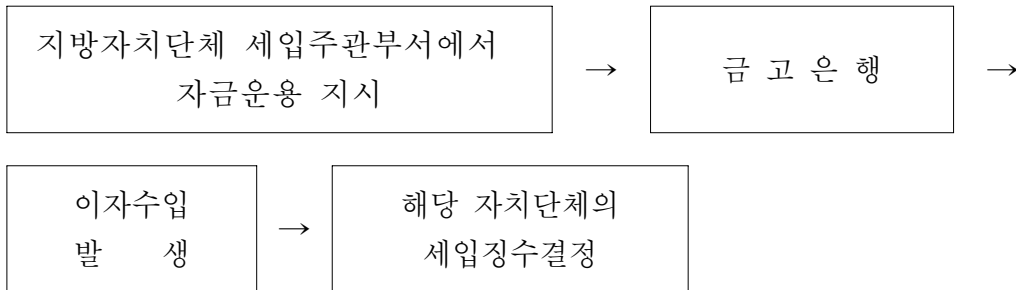
- 지방재정법 제77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4조
- 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74조 및 제87조

다. 이자수입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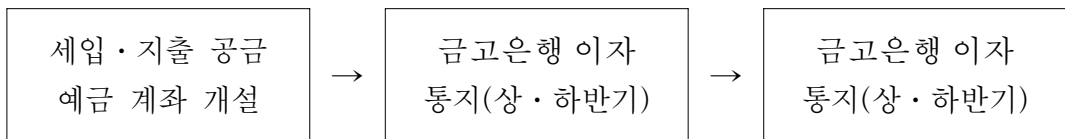
- 공공예금이자수입 : 공공예금(보통예금), 정기예금, 양도성예금(CD),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환매채(RP) 등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 기타이자수입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따른 이자중 법령, 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 및 계약 당시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이자수입

라. 업무처리 흐름도

- 정기예금, CD, MMDA, RP, 표지어음 등 자금운용시



- 세입세출외현금등 공공예금 이자수입 세입시



마. 사무처리내용

- 자금관리 및 금고관련 제규정
 - 현금의 보관 (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87조)

-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을 당해 금고 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소재지 외의 곳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함
- 자금운용 (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제74조)
 - 지방자치단체장은 유희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당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음
 - 자금의 관리는 세입담당과장이 주관함
- 자금수급계획 (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제47조)
 - 각 실·과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를 작성하고 예산담당부서에 통지
 - 각 실·과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예산담당부서에서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작성하고 관계부서에 통지
- 자금배정 (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제48조)
 -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에 근거하여 월별로 지출원, 금고, 해당부서에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을 통지
- 금고의 구분 (재무회계규칙 제99조)
 - 금고 : 자치단체금고, 자치단체금고 수납대행점, 자치단체 지출대행점
 - 자치단체금고 : 자치단체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을 총괄하는 금융기관
 - 자치단체금고 수납대행점 : 자치단체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 자치단체금고 지출대행점 : 지방자치단체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 자치단체 공금지급대행점 : 자치단체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 금고계약의 방법 (재무회계규칙 제100조)
 - 자치단체금고 : 자치단체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 작성
 - 자치단체금고 수납대행점 : 자치단체, 자치단체금고 및 당해 금융기관 3자가 계약서 작성
 - 자치단체금고 지출대행점 : 자치단체, 자치단체금고 제1관서 및 당해 금융기관 4자가 계약서 작성
 - 자치단체금고 공금지급대행점 :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의 승낙에 의함

○ 이자수입 증대

- 자금수급계획서(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유휴자금을 자치단체금고에 이자율이 낮은 공공예금(지출준비금)을 최소화하고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양도성예금 저축 등 고금리상품에 가급적 장기로 예치
- 유휴자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예측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므로 자금관리부서와 지출부서간에 상호협조체제를 구축, 자금수지의 예측을 위한 정보수집 노력이 필요하며, 앞으로 금융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반드시 고수익 상품만을 선호할 것이 아니라, 예금자 보호 측면 등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여 자금운용

○ 세입세출외현금 이자귀속

- 재무회계규칙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조례·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구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지급기준 >

구분	예탁기간	대 상 종 류	이 자 율	비 고
정기예금예탁	만 6월이상	· 차액·계약·하자보수 보증금 ·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 법률에 의한 각종 예치금	당 해 지 방 자 치 단 체 취 급 점 (금 고)의 동예금 최고이자율	국가의 경우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별단예금예탁	만 6월 미만	· 정기예금 예탁대상중 만 6개월 미만인 경우 · 공공예금 예탁대상 이외의 모든 세입세출외 현금	별단예금으로 예탁하고 동예금 최고의 이자율	국가의 경우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을 제외한 보관금
공공예금예탁	예탁기간과 관련없음	원천세, 의료보험, 기여금등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이자 미지급	

제2절 임시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이란 주로 공공부문 및 내부에서의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회계조작상의 수입 등 그 수입의 발생이 임시적이고 과징예상이 명확치 않아 예산의 계상이 곤란한 수입을 말한다.

1. 재산매각수입

개 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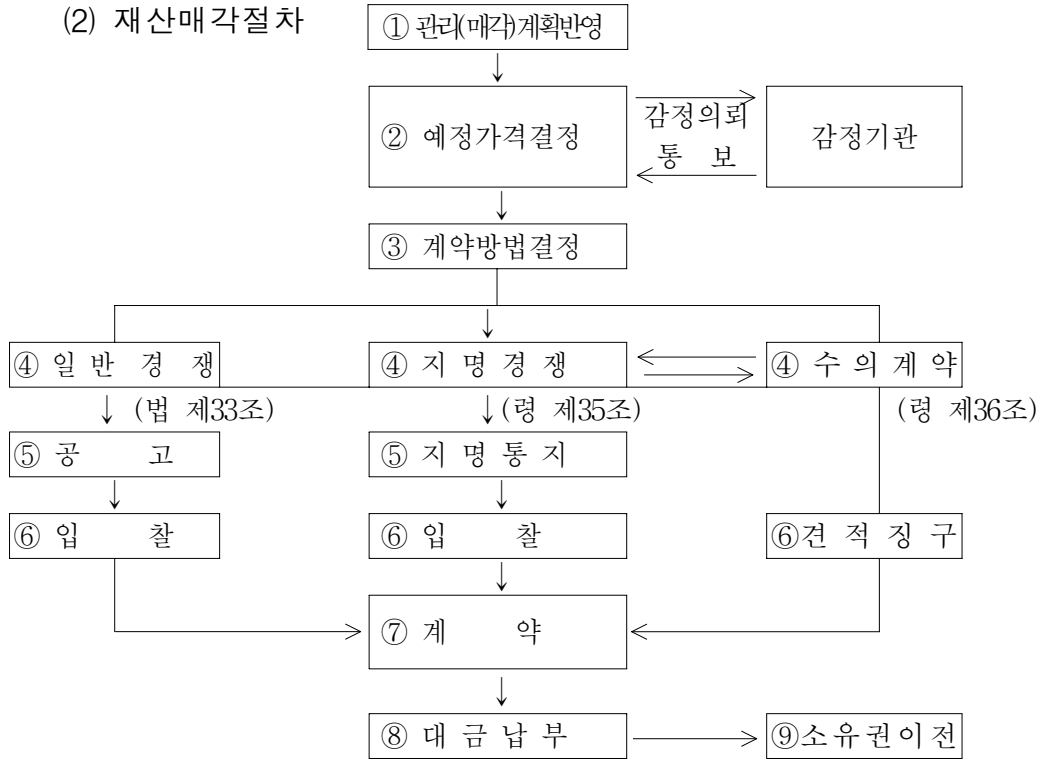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존,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장래에 활용 가치가 없거나, 공공단체의 업무수행 또는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사법상 계약
- 사법상의 계약이지만 국·공유재산의 성격상 공법상의 제약이 있으며 국·공유재산 매각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가. 국유재산 매각수입

(1) 재산매각근거

- 국유재산법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9조-제41조, 동법시행령, 제33조-제37조, 제43조-제45조
- 예산회계법 제76조-제79조, 동법시행령 제76조,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4조, 제85조, 제93조, 제97조, 제104조, 제105조, 제108조, 제119조, 제121조, 제122조

(2) 재산매각절차



(절차 설명)

① 관리계획 계상

- 관리계획에 계상된 재산에 한하여 매각

② 예정가격 결정

- 시가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 예정가격이 300만원 [특별시·광역시와 총괄청이 지정하는 지역 (인구 20만 이상인 시)은 1천만원] 이상인 재산은 감정평가법인 2이상의 평가액을 산술한 금액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2조 별지 제7호 가격사정표에 의거 예정가격 결정
- ※ 가격결정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토지외의 재산의 경우와 같음

③~④ 계약방법 결정

- 잡종재산의 매각 - 경쟁입찰이 원칙임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5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지명경쟁 계약가능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수의계약 가능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는 경우

1. 당해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을 경우
2. 농경지에 있어서 시장(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 군수가 인정하는 실경작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는 경우
3. 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4.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당해 기업체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5. 금융기관, 증권회사, 보험회사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매각하거나 그 매각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2회에 걸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현저하게 국가에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정한 경우에 한함.
2. 외교상 또는 국방상 이유에 의하여 처분행위를 비밀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직접 사용할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6. 인구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여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7. 주식의 매각을 증권거래소가 위탁하는 경우
 8. 금융기관, 증권회사, 보험회사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매각하거나 그 매각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
 9.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 등 출자자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에게 당해 기업체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 ⑤ 공고, 지명통지, 견적서 징구
- 일반경쟁 - 공고(입찰일 10일전에 공고)
 - 지명경쟁 - 지명통지
 - 수의계약 - 견적서 징구
- ⑥ 입찰
- 입찰참가자 - 입찰참가 신청서, 인감증명서 제출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납부
 - 예정가격 이상으로써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⑦ 계약
- 계약대상자 결정후 매매계약 체결
 -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납부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7조 별지 9호 서식의 계약서 작성

⑧ 대금납부

-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내에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연 8%의 이자를 붙여 10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음.

<납부기간 연장>

1. 풍해·수해·설해·한해·냉해·지진·산사태·해일 등 급격한 기상 변화 또는 지각변동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2. 전쟁·사변 등 매수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국가가 계속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정한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5년 이내 분할납부>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공공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3.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당해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년 이내 분할납부>

1.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진흥지역안의 농지중 군지역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1만제곱미터이하의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주택개발 사
업의 경우에 한한다)안에 있는 토지중 제1항 제4호의 사유건물에 의
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 인가당시의 점
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
을 얻어 매각대금잔액에 대한 연4%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하의 기간
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음.>

1. 공공목적에 사용할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대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때
2.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3.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⑨ 소유권 이전

○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위한 위임장 매도증서 교부

※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후 지정된 기간내에 용도
를 폐지할 때에는 당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특약등기하여야 함.

(3) 매매계약의 해제

-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때
- 매수자가 허위진술, 부실한 증거서류의 제시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
하여 매수한 때
-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
간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때

(구 비 서 류)

1. 입찰참가자 - 입찰참가 신청서, 인감증명, 입찰보증금 납부서
2. 수의 계약 - 국유재산 매수 신청서

(4) 매각대금의 귀속 및 용도

(가) 귀속비율

- 국가귀속 : 매각대금의 100분의 70
 - 지방자치단체 귀속 :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 도 귀속 : 매각대금의 100분의 10(건당 500만원이상의 경우)
 - 시·군 귀속 :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 ※ 매각대금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이하 범위에서 총괄청이 전년도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실적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

(나) 용 도

가급적 국유재산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나. 공유재산매각 수입

(1) 잡종재산의 가격평정기준

(가) 가격평정의 적용

잡종재산을 매각·교환·대부 또는 사용하게 하는 경우

(나) 재산가격 결정

잡종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고 이를 공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다) 시가결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시행령 제96조 제2항)

-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당해지역에 있는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
 -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이 있을 때에는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만, 재산의 노후 또는 지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재산의 가격이 과세시가표준액을 상회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시행령 제96조 제2항)
 - 재산가격이 300만원(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 있어서는 1천만원)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지가공시및토지 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를 생략. 다만,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할 수 없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함. (시행령 제96조 제3항)
 -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1년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 (시행령 제96조 제5항)
 - 잡종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당해재산의 가격으로 함. (시행령 제96조 제6항)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이 적용되는 사업은 당해법률에 의해 산정한 보상액(시행령 제96조 제7항)
- (라) 가격평정조서의 작성(예정가격조서)
- 재산가격을 결정하는 조서 작성
 - 조서 첨부서류
 - 감정평가법인, 감정서, 당해재산의 위치를 표시하는 도면, 기타 참고 서류

(2) 잡종재산의 매각

(가) 매각요건

- 잡종재산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매각할 수 있음. (시행령 제95조 제1항)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 영 제95조 제2항의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때
 - 기타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 재산을 집산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때

(나) 매각방법

<일반경쟁 입찰>

- 가격평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이 원칙(시행령 제95조 제2항)

<수의계약>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 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자 할 때
 - ② 농경지를 대부받는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
 - － 이 경우 매각하는 농경지의 범위, 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③ 영 제8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그 대부를 받은 자에게 매각할 때

- ④ 예정가격이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매각할 때
- ⑤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할 때
 - 이 경우 매각하는 재산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⑥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
- ⑧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매각할 때
- ⑨ 관광진흥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소정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때
- ⑩ 취락구조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공이용 시설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할 때
- ⑪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에 의하여 재산의 매각을 비밀히 할 필요가 있을 때
- ⑫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때
- ⑬ 인구분산정책에 따른 정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
- ⑭ 주식의 매각을 증권업자에게 위탁할 때

- ⑮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할 경우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 받는 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
- ⑯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육영단체에 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
- ⑰ 지방공기업법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
- 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할 때
- ⑲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정하여진 토지를 그 정하여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 ⑳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정하는 농공단지 등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집단복지공장이 직접 사용할 업무용 토지를 매각할 때
- ㉑ 농어촌정비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 개발로 조성된 재산을 농어민에게 매각할 때
- ㉒ 채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 ㉓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의한 도서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사업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할 때

- ㉔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에 의한 도서벽지외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때
- ㉕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
- ㉖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 ㉗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 ①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0,000㎡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
 - － 이 경우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경작자에게 매각하는 때임.
- ② 영 제95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3,300제곱미터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은 6,600제곱미터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함)에게 매각할 수 있음. 다만, 도지사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음.

1. 도시계획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 등의 공공시설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 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동산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
 2.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3. 폐천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함.
- ③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함.
- ④ 영 제95조 제2항 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음.
1.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

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함.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음.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매각>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음. (시행령 제98조)
 - ① 당해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을 때
 - ② 재산의 용도에 따라 매수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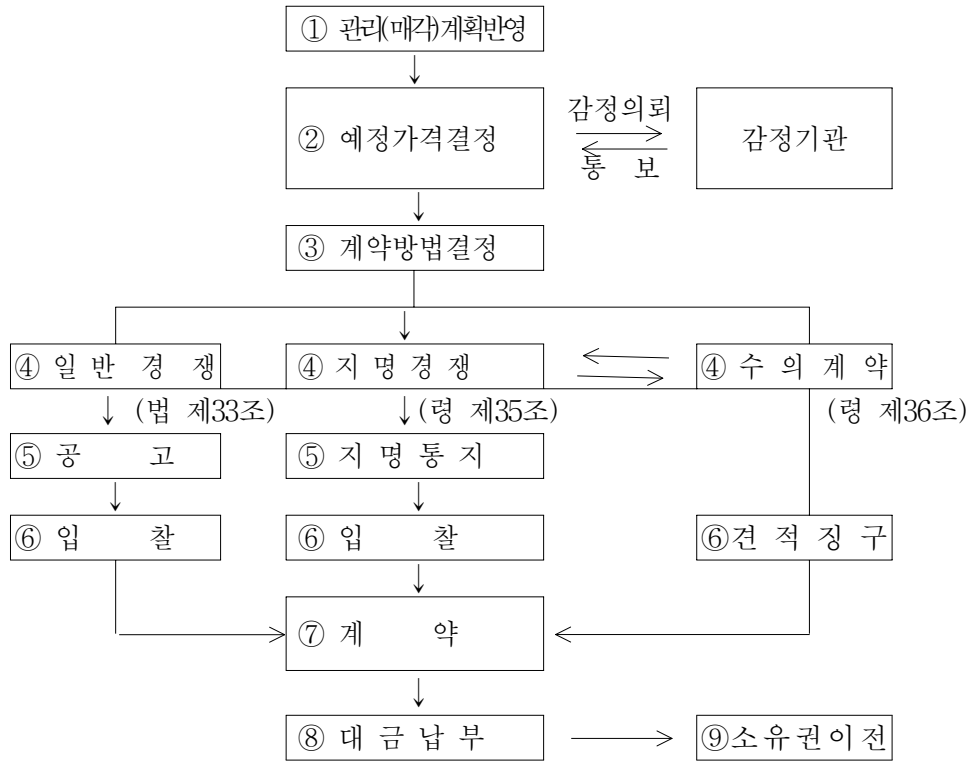
(다) 매각대금의 납부(시행령 제100조)

-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년 4%내지 6%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년 3%내지 6%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 전원개발·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 인구의 분산정책에 따른 정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라) 용도지정 매각재산의 특약등기제도(시행령 제95조의 2)

- 용도를 지정하여 잡종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기간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당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등기하는 제도임.
- 특약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시행령 제95조의2 제2항)
 - 매수자에게 당해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 잡종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시행령 제102조)
 - － 특약등기내용(시행령 제95조의2 제2항)
지방재정법 제84조 제1항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매매계약 또는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
- ※ 지방재정법 제84조 제1항 제2호 : 용도를 지정하여 잡종재산을 매각 또는 양여한 경우 매수자 또는 양수자가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후 지정된 기간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마) 매각절차



(바) 매각대금의 귀속

- 시·도 재산 → {
 - 시·도에서 매각하는 경우 : 전액 시·도 수입
 - 시·군·구에서 매각하는 경우 : 시·도 수입 70%
 - 시·군·구 수입 30%

※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 관리사무의 위임

2. 이 월 금

개 념

매회계년도의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중 당년도로 이월분을 말하며, 자치 단체는 매회계년도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의 이월금을 공제한 잔액은 그 잉여금이 생긴 년도의 다음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과 차입금에 상환할 수 있다.

가. 근거법령

- 예산회계법 제47조 및 제47조의2
- 지방재정법 제42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나. 잉여금 운용 및 관리

- 잉여금처리
 - 결산상 잉여금은 다른 법률에 의하는 것 이외에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등의 이월금을 공제한 잔액은 잉여금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년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원리금과 차입금의 상환이 가능하며, 공제한 잔액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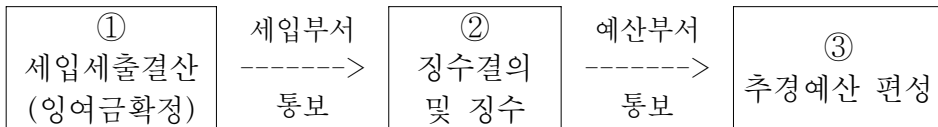
○ 잉여금의 결산전 이입

- 결산상 잉여금은 회계년도 개시 후 자금 형편상 부득이한 때에는 전년도 세입금으로서 지방채 및 차입금 등의 상환재원에 충당하고도 잉여금이 있을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결산이 전이라도 이를 당해년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음

1) 순세계잉여금

-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계산하여 자체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절차]



2) 명시이월금

-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세출예산액을 말한다.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

3) 사고이월금

- 세출예산중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액을 말한다.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

4) 계속비이월금

-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

은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년차로 이월, 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예산액을 말한다. (지방재정법 제40조제3항)

5) 보조금 사용잔액

- 전년도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의 사용잔액으로 국고 또는 시도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3. 용자금 원금수입

개 념

민간 또는 자치단체에게 용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금 수입

가. 근거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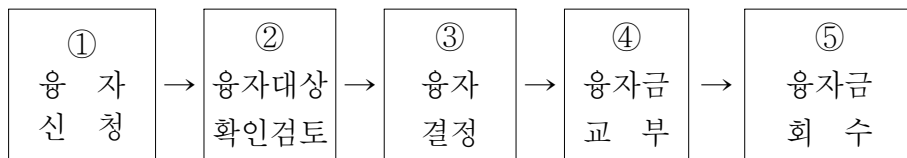
- 개별법령에 의해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
 - ※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농어촌소득사업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

나. 용자금 원금수입 유형

- 민간인 용자
 -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용자금, 농촌주택사업 용자금
 - 의료보호 용자금, 농어촌소득개발 용자금
- 자치단체 용자(시·도⇒시·군·구)
 - 지역개발기금자금 용자(상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등)

다. 용자금 원금수입 관리

-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된 기금 재원 등을 민간인, 자치단체에게 용자하여 분할납부등 용자조건에 정한 바에 의하여 원금을 회수(무이자 용자 : 의료보험용자금등)
- 용자금 원금에 대하여 연도별로 세입조치
- 분할납부의 경우 연도별 부과 납부대장 비치 관리



4. 부 담 금

가. 부담금의 의미

특정 공익사업과 특별한 이해관계인에게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

나. 부담금의 분류

-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 일반부담금
 - 수익자부담금 - 개발부담금
 - 원인자부담금 - 오염자부담금
 - 손괴자부담금

①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개 념

시·도가 시행하는 공익사업 등에 그 구역안의 시·군·구에 이익을 줄 경우에 수익받은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과금

㉠ 부과근거

- 지방재정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부담금 한도 및 정산

- 수익받은 자치단체가 동의한 한도 내에서 부담하고 부담경비의 집행 후 잔액이 있을 때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정산·환급

② 일반부담금

개 념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을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이익의 범위안에서 부과하는 공과금

㉠ 수익자 부담금

당해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공과금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 (부담금)
- 하천법 제58조 (하천부담금)
- 향만법 제54조 (향만부담금)
- 방조제관리법 제13조 (방조제관리부담금)
- 사방사업법 제18조 (사방부담금)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농지전용부담금)

- 수익자부담금의 요건
 - 공익사업의 결과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것
 - 부담금의 한도는 이익의 범위내 일 것
 - 당해 공익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것일 것

㉞ 원인자 부담금

그 사업을 필요로 하게 한 원인을 조성한 자에게 과해지는 부담금으로 도로원인자부담금, 하천원인자부담금, 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등이 있다.

- 법적근거
 - 도로법 제64조, 하천법 제56조, 하수도법 제32조 ①항 및 ②항
 - 수도법 제53조, 도시공원법 제16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5조 ②항
 - 사망사업법 제19조, 관광진흥법 제61조
- 요 건
 - 원인자의 행위에 대하여 필요로 하게 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인적 공용부담 원칙
- 유사개념
 -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7조), 시설부담금 (도로법 제31조)

㉟ 손괴자 부담금

- 법적근거
 - 도로법 제67조, 하수도법 제32조 ③항, 수도법 제54조,
 - 향만법 제53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1조
- 원인자부담금과의 구별
 - 원인자 부담금은 원인행위 그 자체가 따로 실천해야 할 공공목

적을 가진 적법행위로 인한 것인데 대하여 손괴자 부담금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시설의 손괴를 원인으로 한 것

㉠ 오염자 부담금

환경을 오염하는 자가 공해방지시설의 설치, 유지관리비용, 오염된 환경의 복원비용 및 피해자의 인적·물적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비용 등을 부담하는 공과금(원인자부담금제도의 발전된 형태)

○ 법적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책임)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 종 류

-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내지 제11조)
 - 징수교부금 : 10/100 (시·군·구)
-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

㉡ 개발부담금

일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

○ 개발부담금 제도의 개요

- 재원사용 범위 : 전국토·전지역의 균형적 개발을 위해 사용
- 납부의무자 :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개발사업하는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
 - 국가 : 전액면제
 - 자치단체
 - ┌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 ├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심지재개발사업 - 면제
 - └ 이외의 사업 - 50% 감면

- 일정한 범위의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
이 상기 자치단체의 택지개발사업 등 5개사업 시행시 - 50% 감면

• 부과대상사업

- 택지개발사업
- 공업단지조성사업
- 관광단지조성사업
- 도심지재개발사업
- 유통단지조성사업
- 온천개발사업
-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 골프장 건설사업
-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 위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특정지역
의 단지조성사업, 기타 토지형질변경사업

※ 부과대상 개발사업 규모

{	도시계획내지역 : 990m ² 이상
	도시계획외 지역 : 1,650m ² 이상
	개발제한구역 : 1,650m ² 이상

• 개발부담금의 산정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0.25
- 개발이익 = 개발사업완료시점의 지가 -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지가 + 개발기간중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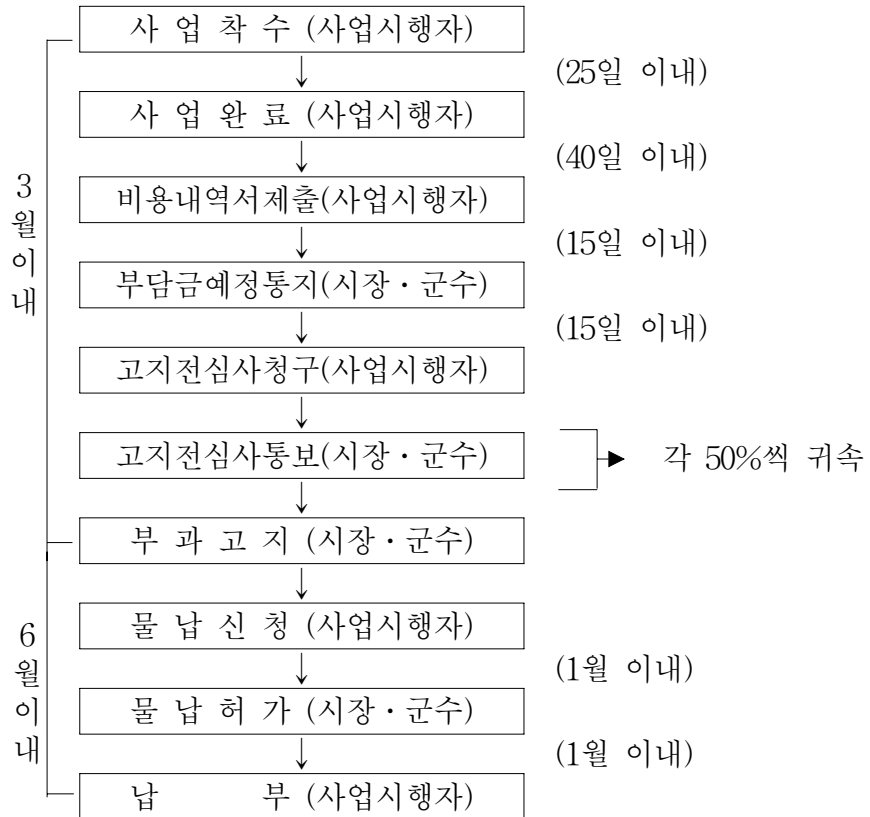
• 부과 및 징수

- 부 과 : 개발사업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납 부 :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납부방법 : 현금원칙 (현물납부 인정)

· 개발부담금의 배분

-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시·군·구
-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절차



㉞ 농지전용부담금

- 각종 주택건설 및 개발사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농지를 농지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하는 수익금액

㉟ 환경개선부담금

-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환경개선을

- 위한 소요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액
- 바닥면적 160㎡이상의 건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 교통유발부담금

- 매년 7월 31일 현재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에게 부과하는 금액
- ※ 교통정비지역이라 함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 지역의 인구가 10만 이상인 도시)와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내에 있는 지역 그리고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된 도시(그 교통권역 포함)를 말함
- 부과대상시설물의 규모는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5. 잡수입

가. 불용품매각대

개 념

사무용 비품, 차량 기타 물품 등의 노후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한 물품을 매각한 수입

1) 매각근거

- 지방재정법 제100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4조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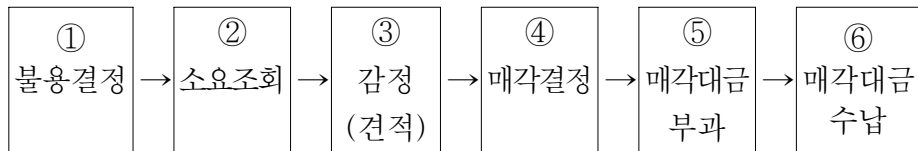
2) 불용품 매각대상

- 사용 또는 활용할 수 없는 물품
- 사용가능 물품으로 소요조회결과 재활용 요청이 없는 불용품

3) 매각처분 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 지방재정법 제61조
- 경매
 - 지방재정법 제124조 제1항, 제2항
- 공익법인에 매각
 - 지방재정법 제124조 제4항

4) 매각절차



5) 기타 유의사항

- 물품매각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할 때 별도의 세외수입 징수 결정을 하여야 함

나. 변상금

개 념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거나 변상명령에 변상되는 수입을 뜻하나 세외수입에서는 국·공유재산을 무단 점용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징벌적 의미에서 부과되는 행정제재금을 말함.

1) 관련근거

○ 징수근거 법령

- 예산회계법 제96조 : 국가의 금전채권 소멸시효(5년)
-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 변상금 산출 및 징수
-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동법 제84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05조 : 변상금 산출 및 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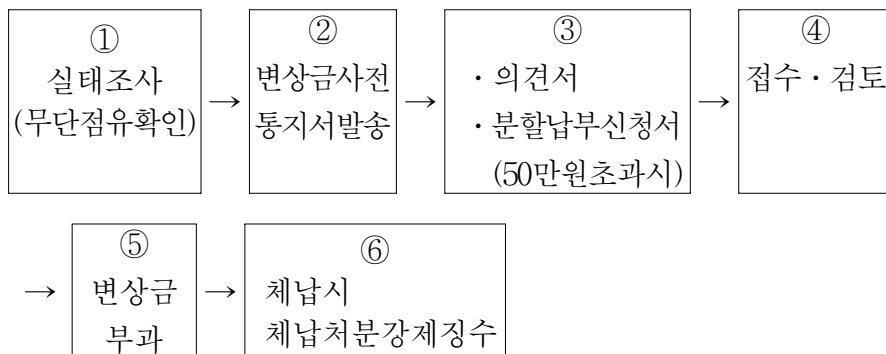
○ 위임근거 법령

- 국유재산법 제21조 제4항 및 동법 제32조 제3항 : 국유재산관리·처분사무 위임
-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사무 위임

2) 종류(대상)

- 국유재산 무단점용 ----> 처리기관 시·군·구
- 공유재산 무단점용 ----> 처리기관 시·군·구

3) 처리흐름도



4) 사무처리내용

- 사무처리기준

- 부과기준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사용료의 100분의 120
 - ※ 연간 변상금 = 연간 대부료(사용료) × 1.2 (최장 5년)
- 징수방법
 -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기전 무단점유자에게 사전통지서 발송
 - 통지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 제출(규칙 제52조의2)
 - ⇒ 변상금에 대한 국민들의 물이해를 개선하고 변상금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함
 -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의 기한동안 연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가능(시행령 제56조)
 - 접수·검토 후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주어 통지
 - ⇒ 분할납부 경우 최초 부과통지시 분할납부할 변상금의 납부일자와 납부금액을 함께 통지
 - ⇒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다툼
 - 미납시 납부금액에 연체료(국유재산 연 15%, 공유재산 연 12%~15%)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 고지
 - 체납시 국유재산의 경우 국세징수법, 공유재산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거 체납처분
- 면제·감면기준(국유재산관리법 제51조)
 - 등기부 기타 공부상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다. 위약금

개 념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책임있는 계약상의 불이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금전을 말한다.

1) 징수근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95.1.5법률제4868호)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95.7.6대통령령제14710호)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5조('95.7.6총리령제51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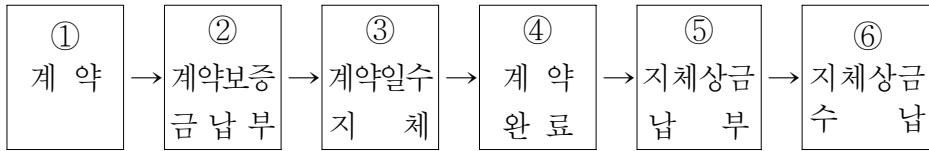
2) 종류(대상)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다음과 같은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국가·지방자치단체 제외)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공사 : 1,000분의 1
- 물품의 제조 : 1,000분의 1.5
- 물품의 수리, 가공, 대여, 용역 및 기타 : 1,000분의 2.5
- 군용 음·식료품 제조, 구매 : 1,000분의 3
- 운송, 보관 및 양곡가공 : 1,000분의 5

3) 처리기관

- 1차기관 - 시·군·구, 시·도, 중앙

4) 처리흐름도



5) 사무처리내용

- 부과기준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지체상금율
- 징수방법 : 검수 및 준공처리 완료후 지체일수를 산정하여 부과
- 주의사항 : 지체상금 부과시 기성부분 또는 기반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 계산하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과태료

개 념

개별법령과 조례상의 의무에 대하여 의무자가 그 의무나 질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자치단체가 행정질서 유지 또는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

1) 세입의 특성

- 법령·조례의 위반자에 대한 제재
 -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
 - 벌금·과료가 아닌 주민 금전적 부담벌
 -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인 경우, 지방세 예에 준한 부과징수
 - 세입과목 임시적 세외수입(잡수입)

2) 부과근거

- 개별법령상의 과태료 규정 조항
- 지방자치법 제20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제130조 제2항
-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제251조(이의신청시)
- 근거법령별

근거법 구분	개별법령 조항	지방자치법 제20조	지방자치법 제130조	비송사건 절차법
부과대상	법령별 의무위반	조례위반사항	사용료·수수료·분 담금 면탈 및 공공시설부정사용	개별법령특별 규정이외
과징절차	개별법령에 규정	조례에 규정	지방세징수의 예 근거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
이의신청절차	관할법원에 송부	관할법원에 송부	지방세법 제73조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세입금 귀속	부과자치단체세입	부과자치단체세입	부과자치단체세입	국고수입

3) 부과대상 : 의무위반의 유형(행정질서법 대상)

- 신고위반
 - 휴업·허가 또는 재개업
 - 신고·허가 또는 등록사항 변경
 - 사업 등의 양도·양수·승계
 - 종업원 임면(법정 고용 의무가 있는 경우)
 - 기타 신고 또는 신청
- 장부의 작성·비치·보존의무 위반
- 허가증·요금표 등 표지물의 게시위반 등
- 허가증·등록증 등 반납불이행
- 보고·자료제출·출석답변 또는 통지 등 명령위반, 정기보고 등의 불이행 및 허위보고

- 검사·조사 또는 임검 등의 기부·방해 또는 기피
- 유사 명칭 사용금지 위반
- 정부투자·출연기관 기타 특수법인 등의
 - 등기 또는 공고의 해태, 시정감독 등 명령위반, 검사방해
- 겸직금지위반
- 조사·측량 등을 토지에의 출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
- 사용료·수수료 등의 요금면탈과 승인된 요금외의 요금수수

4) 개별법령상의 규정조항 과태료

- 부과대상 : 개별법령에 규정한 의무의 위반·미이행
- 부과금액 : 법률에 상한액 규정, 시행령에 항목별 규정 또는 조례, 훈령 등으로 항목별 부과액 세부규정
- 부과권자 : 법률에 규정, 개별조항 또는 조례로 (재)위임
- 과징절차 : 법률에 체납처분, 시행령에 부과절차, 시행규칙에 징수절차 규정
- 이의신청처리 :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이의신청 검토 후 부과취소,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법원 송부
- 세입금귀속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부과자치단체 세입(지방재정법 제28조)
- 개별법령상의 과태료 규정의 정형화 내역

법률조항 규정	시행령조항 규정	시행규칙조항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과대상자 · 부과상한액 · 부과권자 · 이의신청기간, 절차 · 이의신청서 관할법원 송부 · 체납처분 등 	[부과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행위조사 · 청문 · 동기결과 참작 · 징수절차 부령 	[징수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준용 또는 ·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거나 ·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함

※ 표준정형화 법령이외는 부과절차·징수절차 등을 조례에 위임 또는 훈령, 지침의 규정 등으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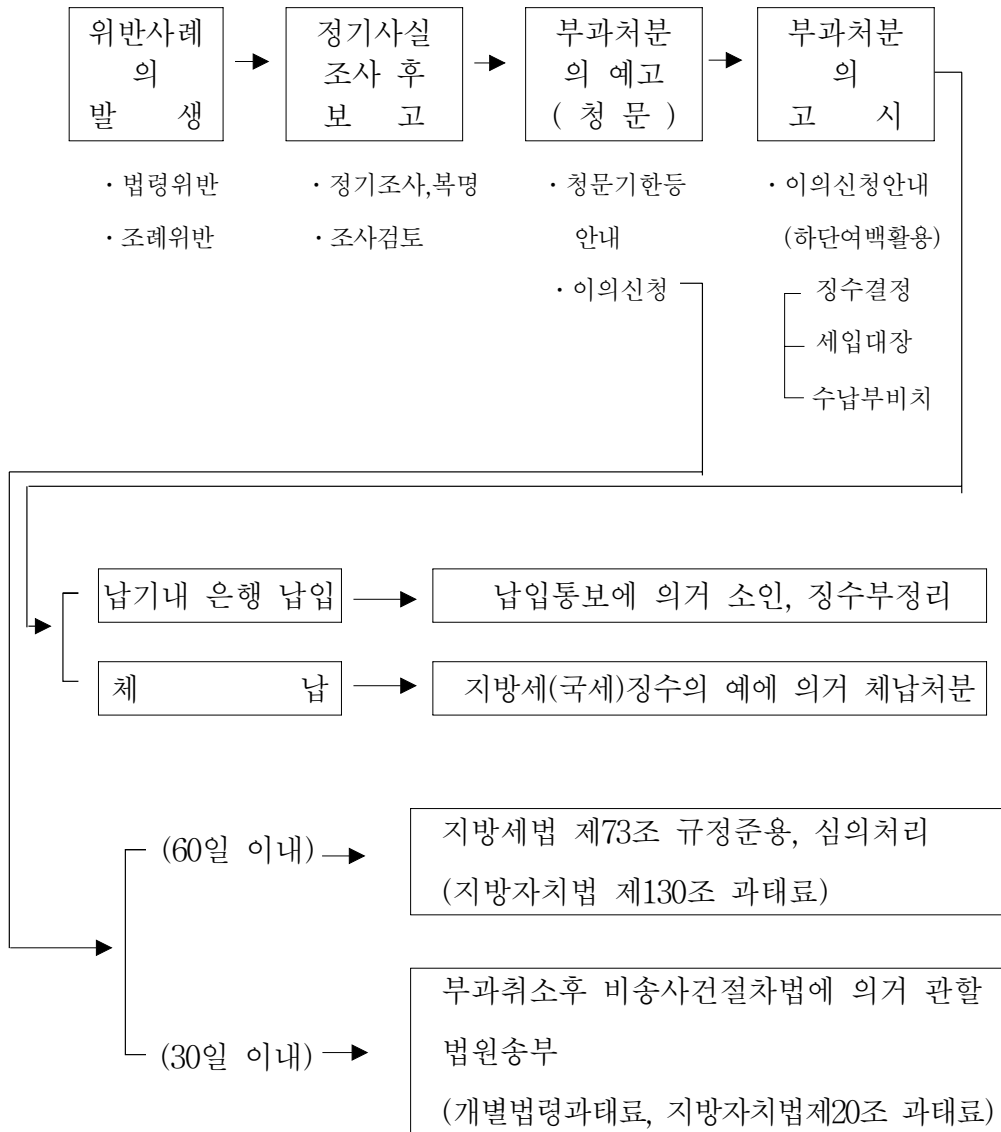
5) 지방자치법 제20조 규정의 과태료

- 부과대상 :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위반 행위
- 부과금액 : 1천만원 이하
- 부과권자 : 지방자치단체장
- 과징절차 : 조례에 부과·징수 절차 규정
- 이의신청처리 :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이의신청 검토후 부과취소, 관할법원에 송부
(국고수입)
- 세입금 귀속 : 부과자치단체 세입(지방재정법 제28조)

6)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의 과태료

- 부과대상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 공공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
- 부과금액 : 사용료 등의 5배, 공공시설 사용자는 50만원 이하
- 부과권자 : 지방자치단체장
- 과징절차 : 지방세 징수의 예에 한함
- 이의신청처리 : 지방세법 제73조 규정준용
- 세입금 귀속 : 부과자치단체 세입

7) 과태료 처분절차



마. 체납처분 수입

개 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공과금 등의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에 붙여 체납처분비로 징수하는 수입

(1) 징수근거

-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2항

(2) 종류(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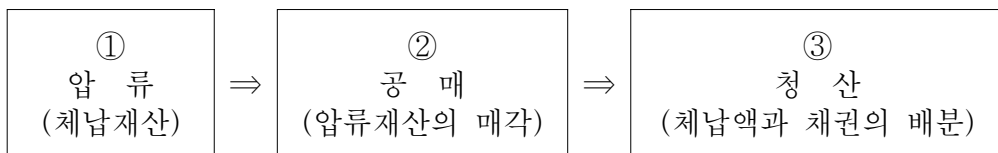
- 독촉 또는 최고를 받고 기간내에 완납하지 않았을 때
- 납기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기한내에 완납하지 않았을 때
- 수시 부과외의 경우 담보제공 요구에 불응하였을 때

(3) 처리기관

- 1차 기관 : 시·군·구, 시·도

(4) 처리흐름도

-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5) 사무처리내용

- 압류된 질권의 인도
- 가압류, 가처분 재산에 대한 효력
-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바. 보상금수납금

개 념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서 수납하는 보상금

(1) 징수근거

- 자치단체조례

(2) 종류

-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서 수납하는 보상금
- 콘돔 및 피임약 위탁판매 수수료 수입

(3) 수수료 징수·불입

- 피보급자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징수 ⇒ 당월분을 시·도 금고에 불입

※ 종전 자치단체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시·도)에 근거한 세입은 '95. 1월 보건복지부의 징수지침폐지 통보에 따라 세입근거가 폐지됨.

사. 시·도비 환금 수입

개 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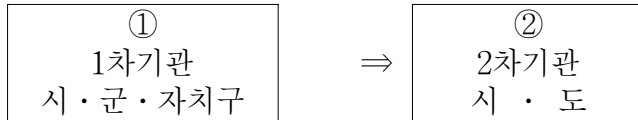
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교부하는 시책 장려를 위한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는 것임

(1) 징수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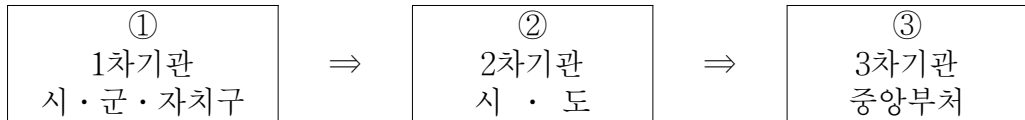
- 지방재정법 제25조(시·도가 시행할 토목 기타 건설사업에 대한 시·군 및 자치구의 부담)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시·군·자치구의 부담 경비의 정산)

(2) 처리기관

○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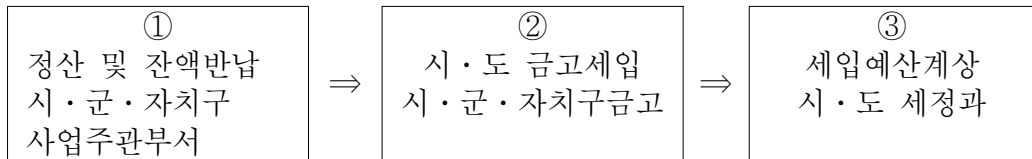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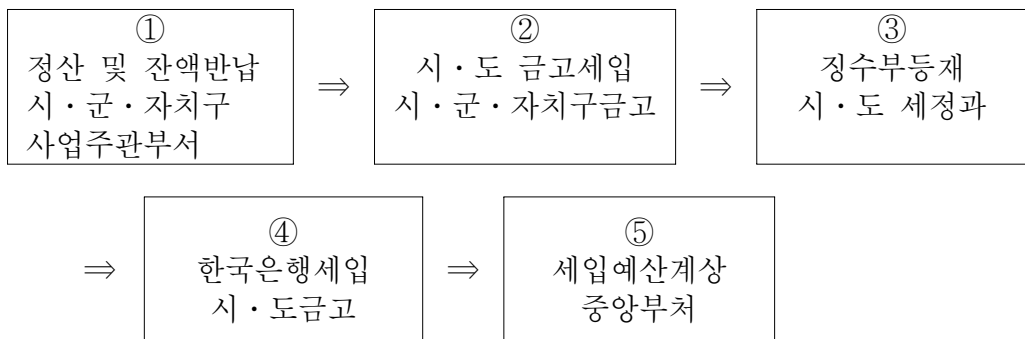


(3) 처리흐름도

○ 시·도비보조금 사용금액



* 국고보조금 사용금액



(4) 사무처리내용

(가) 시·군·자치구에서

-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시 시·군·자치구 세출예산에 계상 후 시·도에 반납
-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시·도 수입원(시·도 세정과)으로 반납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시·도 세입예산에(시·도비 수입반환금 수입) 반납하지 아니하고 시·도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반납

(나) 시·도에서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시·도 세출예산에 편성 후 중앙부처에 반납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군·자치구 국고보조금 반납금을 합하여 중앙부처에 반납

아. 기부금 수입

개 념

주민, 공동체 또는 타기관 등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공여하는 금품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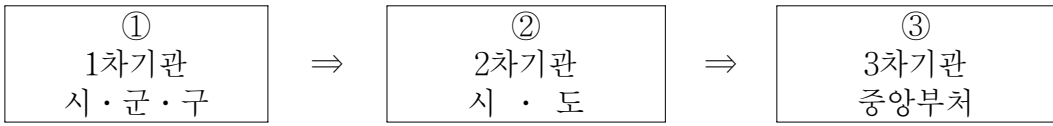
(1) 징수근거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3조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 기부금 및 성금운용관리 개선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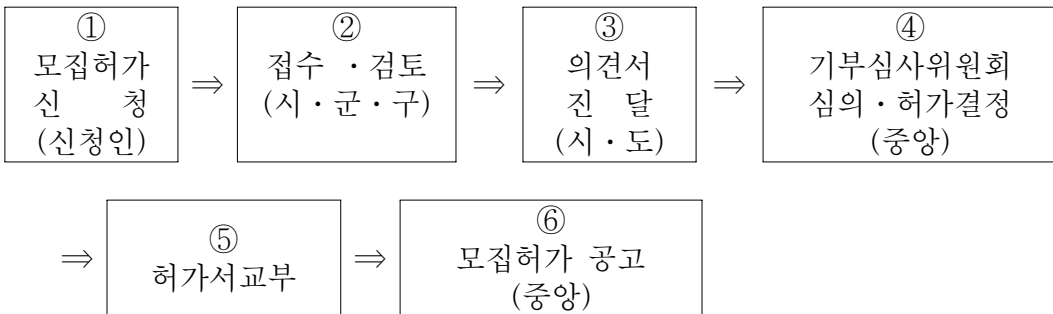
(2) 종류(대상)

- 지정기부금(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기부금)
-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을 제외한 기타 기부금)

(3) 처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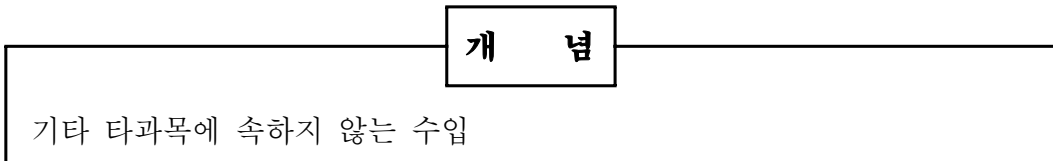
(4) 처리흐름도



(5) 사무처리내용

- 의뢰, 권유, 할당식 반강제적인 금품모집 금지
- 모금액은 허가목적에 한하여 집행
- 모집금품의 법령에 따른 집행·결산 및 공개(관련장부 비치)
- 위법, 부당한 모집행위 철저한 지도, 단속(행정기관, 경찰서 등)

자. 기타잡수입



(1) 징수근거

- 지방세외수입업무편람
- 기타잡수입에 대한 징수근거 및 관계법령사항이 지방세외수입업무편람으로 한정되어 있어 추후 별도 제정이 시급한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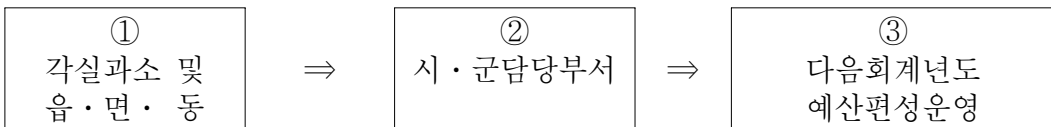
(2) 종류(대상)

- 사무명 및 법적근거
 - 기타잡수입 및 『지방세외수입업무편람』
- 임시적세외수입에는 9개항목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중 잡수입중 불용품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체납처분수입, 보상금수납금을 제외한 기타수입을 말하며, 특별히 기타잡수입에 대한 종류 및 대상 분류가 현재 어려운 상태임.

(3) 처리기관

- 각실과소 및 읍·면에서 기타잡수입 발생시 징수결정후 시·군담당부서에서 징수부 기재처리

(4) 처리흐름도



(5) 사무처리내용

- 기타잡수입은 각실과소 및 읍·면에서 행위발생시 즉시 징수

6. 과년도수입

개 념

징수결정된 수입금이 당해년도의 출납폐쇄기간인 2월말까지 수납되지 않고 그 후에 납부되었을 때 이를 현년도, 즉 그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으로하고 이를 과년도 수입으로 정리

예) 전년도에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된 것이 익년 3월 1일 이후에 징수되어 익년도 수입으로 처리되는 경우

가. 부과근거

- 지방재정법 제47조(1997. 12. 13 법률 제5454호)

나. 과년도수입 관리

- 당해년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세입금은 다음년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 과년도 수입금에 발생한 가산금(연체료)는 과년도수입으로 징수 결정
[예시] 2002년도에 도로점용사용료를 징수결정하여 납입고지를 하였으나 2002년도 세입금의 출납폐쇄기한인 2003년 2월말일까지 수납되지 않고 2003. 3. 1이후에 납부되었을 때에는 이를 과년도수입으로 처리하여 2003년도 세입금으로 정리한다. 즉, 전년도분에 해당하는 수입금을 현년도에 징수하면서 과년도수입으로 정리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서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현년도에 수입한 세입금이 현년도 수입이 되는지 과년도수입이 되는지는 세입금의 회계연도 소속구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세입금의 회계연도 소속구분은 다음과 같다.

— <세입의 회계연도 구분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조> —

-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 소속의 회계연도내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수시수입으로서 기본수입에 부수되는 수입은 그 기본수입이 속하는 연도
-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지방채증권·차입금·부담금·교부금·보조금·기부금·상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수입은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
- 수시수입으로서 계약에 의하여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된 것은 그 계약한 날이 속하는 연도

제3장 세외수입 실무

제1절 체납처분

1. 체납처분의 개념

체납처분이라함은 납입고지된 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내 납부치 않아 독촉하였음에도 독촉장에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수단으로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공매처분하여 체납된 세외수입금을 강제징수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2. 체납처분의 근거

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은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하도록 규정(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되어있고, 각 개별법령과 조례에서도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예: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등)

3. 압류의 요건

세외수입금을 압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독촉이나 납입의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 납기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 수시부과의 경우 담보제공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납부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부의무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압류의 제한과 금지

가. 압류의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압류가 제한된다.

- 독촉을 한 체납세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한 경우
- 행정소송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행정처분정지가처분 명령이 있는 경우
-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에서 조세의 징수 유예를 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중에는 압류 할 수 없음.

나. 압류의 금지

- 초과압류의 금지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체납된조세 및 체납처분 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 할 수 없다.
- 무익한 압류금지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 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 하여야 하며, 또한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 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는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해야 함.(국세징수법 제85조 제2항)

다. 법정압류 금지물건

납세자의 최저생활의 보장, 생업의 유지, 정신적 생활 안녕의 보장, 사회 보장제도의 유지 등을 위한 재산은 압류가 금지된다.

5. 압류대상 재산

가.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

- 동산 및 유가증권 : 체납자가 소지하고 있을 것
- 등록공사채 등 : 등록명의로 체납자일 것
- 등기 또는 등록된 부동산,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및 전화가입권, 지상권, 광업권 등의 권리와 특허권 기타의 무체재산권 등 : 등기 또는 등록의 명의인이 체납자 일 것.
-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 기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미등기의 저작권 : 점유의 사실,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기타 장부서류의 기재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사원의 지분 : 정관 또는 상업등기부상 사원의 명의로 체납자 일 것.
-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 : 정관, 사원명부 또는 상업등기부상 명의인이 체납자 일 것
- 채권 : 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 장부 서류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나. 국세징수법 시행 지역 내에 있는 재산 (외국에 있는 재산은 압류불가)

다.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

라. 양도 또는 추심할 수 있는 재산

마. 압류대상 재산을 선택함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재산이어야 한다.
- 환가에 편리한 재산이어야 한다.
- 보관 또는 운반에 편리한 재산이어야 한다.
- 채납자의 생활유지 또는 사업에 지장이 적은 재산이어야 한다.
- 징수하고자 하는 지방세 채권에 충당할 만한 재산이어야 한다.

6. 압류의 절차

가. 신분증의 제시 등

채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 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 할 때는 채납처분을 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직위, 성명과 생년월일, 질문, 검사, 수색 또는 재산압류의 권한에 관한 사항 등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나. 수색의 권한과 방법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채납자의 가옥, 선박, 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 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열 수 있다.

채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를 거부한 때 또는 제3자의 가옥, 선박, 창고 기타의 장소에 채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하여 강제수색을 하거나 폐쇄된 문, 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열 수 있다.

채납처분을 위한 수색은 해뜰 무렵부터 해질 때까지 하여야 하며, 해가 지기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다. 질문, 검사권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 체납자와 거래 관계에 있는 자,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체납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인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의 검사가능.

라. 출입제한권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재산을 압류할 때, 수색을 할 때, 질문·검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처분 진행 중인 장소에 있는 관계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퇴거를 명하거나 그 장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마. 압류조서

-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압류재산의 종류, 수량, 품질과 소재지, 압류년월일, 조서작성 연월일을 기재한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처분 현장 참여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 조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체납자의 재산 중 동산 또는 유가증권, 채권,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 즉 무체재산권을 압류한 때에는 압류조서 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 한 때에는 그 점유자에게 압류조서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채권압류 통지서에 채권의 추심 기타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7. 압류금지재산

가. 압류금지의 취지

납세자에게 권리가 귀속하고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은 압류의 대상이 됨이 원칙이나 납세자와 그 동거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를 금지하거나 조건부로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나.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 (국세징수법 제31조)

- 납세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 납세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 실인(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 제사, 예배에 필요한 물건, 석비와 묘비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장례에 필요한 물건
- 족보 기타 채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
-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 납세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에 필요한 서적·기구
-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 공표되지 아니한 것
- 법령에 의하여 공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의 재료

다. 조건부 압류금지재산(국세징수법 제32조)

- 다음 재산은 체납자가 조세채권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농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가축류, 사료, 종자와 비료
 - 어업에 필요한 어망, 어구와 어선
 -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와 비품

라. 급여의 압류제한(국세징수법 제33조)

- 채권으로서 급여, 임금, 세비, 퇴직연금, 이와 유사한 급여금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 총액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교육세 및 소득할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다.

8. 압류물건과 처리방법

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 압류절차 :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운반하기 곤란한 재산은 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압류재산의 사용·수익 : 압류한 재산을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사용·수익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유가 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압류된 유가증권의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나. 부동산 등의 압류

- 압류절차 :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압류한다. 그 변경등기 또는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의 구분 및 분할·합병 등 대위등기를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보존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록된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를 압류한 때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관청에 촉탁하여 압류한다. 건설기계·자동차를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에게 문서로서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 압류효력 : 부동산 등(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납세의무가 발생한 지방세가 체납된 것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 압류통지 : 부동산 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통지하고, 저당권·질권·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에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채권의 압류

- 압류절차 : 채권의 압류는 채무자(체납자의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채권자(체납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하는데, 채권자(체납자)에게 압류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지방세·가산금·체납처분비)을 한도로 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즉, 체납액의 한도 내에서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채무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채무를 지는 것이며,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 채권압류의 범위 :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지방세·가산금·체납처분비)을 한도로 하여야 하며, 압류할 채권액이 체납액을 초과할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계속수입인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채권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이 경우의 압류는 지급금액의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으므로 그 2분의 1로써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체납액에 충당될 때 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 통지서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라.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전화가입권·특허권·저작권등) : 무체재산권 등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무체재산권 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은 압류의 등기(등록)을 관계 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 국·공유재산에 대한 권리의 압류 : 체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는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관계관청에 압류에 관한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9. 압류의 효력

가. 일반적 효력

- 채납자는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의 처분은 조세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라든가 사용·수익을 가지고 조세채권자(과세권자)에게 대항 할 수 없으며, 압류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양도·양수는 가능하다.

나. 개별적 효력

-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시 기 여하에 불구하고 그 질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질권자가 그 질물을 인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문서로써 그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인도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질물을 압류할 수 있다. 채납 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당해 법원·집행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그 압류를 해제한 때에도 같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도 미치므로 압류한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채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을 사용·수익을 하는 경우에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0. 압류의 해제

채납자가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거나, 채납처분에 의하여 채납액에 충당 하는 등 압류사유가 소멸하는 때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가. 압류해제의 요건

- 납부·충당·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때
-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제3자가 채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나. 일부해제의 요건

- 압류후 재산가격이 변동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압류재산의 가격이 징수할 채납액의 총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 압류에 관계되는 채납액의 일부가 납부되었거나 또는 충당된 때
-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한 때
- 채납자가 압류가능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다. 일부해제의 절차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고,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관계관청에 압류말소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압류재산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보관자에게도 압류해제 통지를 하고 압류채산을 채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보관하는 자로 하여금 직접 그 재산을 인도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제2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1. 교부청구

교부청구라 함은 납세자(채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강제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동일재산에 대한 중복압류를 피하고 강제환가절차에 참가하여 당해 재산의 환가대금 중에서 조세채권(징수금)을 징수하기 위해 관계 집행기관에 대하여 그 배당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한다.(국세징수법 제56조)

가. 교부청구의 요건

채납자에 대하여 다음의 제기하는 것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압류관서의 장은 관계집행기관에 대하여 조세(징수금)채권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6조)

-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채납으로 채납처분을 받을 때
- 강제집행을 받을 때
- 파산의 선고를 받을 때
- 경매가 개시된 때
- 법인이 해산된 때

나. 교부청구의 절차

납세자(채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타 기관에서 공매·경매 등에 의한 강제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환가대금 중에서 조세채권(징수금채권)의 배당을 받고자 할 때에는 소정사항을 기재한 교부청구서를 관계집행기관에 송달하여야 한다.

교부청구의 상대방과 시기

구 분	시 기	상대방
·채납처분	공매집행기관의 배분서 작성시까지, 금전채권은 추심일까지	공매집행기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	경매기일의 종료시까지	집달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	경락기일까지	집행법원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전부명령:집행법원에신고한 때	집행법원
·파산절차인 경우	파산종결의 결정시까지	파산관재인
·법인이해산하는 경우	청산의 최고 기한까지	청산인

다. 교부청구의 효력

교부청구는 강제환가절차를 하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환가대금 중에서 조세채권을 배당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효력이 있으며, 교부청구를 받은 관계기관은 배당순위에 따라 교부청구한 금액을 배당하여야 한다. 또한 교부청구는 타 집행기관의 강제환가절차에 참가하여 조세채권의 징수목적을 달성하는 일종의

강제환가 절차이므로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지방세 등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며, 조세이외의 징수금에 대한 교부청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효력이 있다.

라. 교부청구의 해제

압류한 자치단체의 장은 교부청구를 한 후에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이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기타사유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참가압류

참가압류라 함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서)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하는 강제징수 절차를 말한다.(국세징수법 제57조)

가. 참가압류의 요건

조세 및 징수금의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거나, 납부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된 납기일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류를 할 수 있으며, 압류하고자 하는 체납자의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을 경우에 참가압류를 하게 된다.

나. 참가압류 절차

참가압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에 이미 압류를 한 기관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참가압류 통지서에 의거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압류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참가압류사실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참가압류 하고자 하는 재산이 권리

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일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다. 참가압류의 효력

참가압류는 다음과 같은 효력이 있다.

첫째, 참가압류를 하면 이미 압류한 다른 압류기관에 대하여 교부청구의 효력과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둘째, 참가압류는 다른 기관이 한 압류가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기며, 압류의 효력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외의 재산은 참가압류의 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참가압류의 등기·등록이 완료된 때

셋째, 참가압류를 한 후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 재산을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

라.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시의 절차

기압류기관이 당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문서로써 참가압류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압류해제시에 그 압류해제된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를 참가압류를 한 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참가압류한 기관이 기 압류해제기관으로부터 동산 유가증권을 인수받는 때에는 인도를 한 기압류기관에 지체없이 인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마. 참가압류의 해제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일반의 압류해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바 참가압류에 관계된 지방세 및 징수금이 납부부과취소, 중당 기타사유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참가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바.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차이

교부청구와 참가압류는 선 집행기관의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는 점과,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반면, 교부청구와 참가압류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 교부청구는 피청구기관의 해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효력을 상실하게 되나, 참가압류는 기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 동산과 유가증권 등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참가압류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부동산 등은 참가압류의 등기·등록시에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참가압류는 압류의 요건을 갖춘 후가 아니면 불가능하나 교부청구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며 특히 징수유예기간 중에도 교부청구는 가능하다.

교부청구는 청구로서 족하지만 참가압류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참가압류의 등기·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1. 매각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은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을 충당하기 위하여 압류한 재산은 금전으로 추심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금전으로 환가하여야 하는데 이와같이 금전으로 환가하는 것을 매각이라 한다.

2. 매각의 성질

매각처분은 압류에 의한 압류재산의 처분권(자력집행권)의 행사로서 체납처분절차의 일환인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다. 그러므로 행정처분으로서의 매각처분은 체납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제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성립하게 하는 것이기는 하나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사법상 매매와 유사하여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행한 매각처분은 체납자가 매각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기고 매각재산에 대한 체납자의 권리는 직접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지방자치단체는 환매대금을 체납액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매수인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매각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로 하여금 권리이전 절차를 밟게 하거나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그 절차를 밟는 외에 매각재산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

매각재산의 매수인은 권리이전에 필요한 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체납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권리이전의 의무를 지는 외에 그 재산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3. 매각의 방법

매각의 방법은 공매와 수의계약이 있는데 공매가 원칙이다.

가. 공 매

- 공매의 의의 : 압류재산의 매각에 있어 불특정 다수인의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자유경쟁을 하게하여 그 결과 형성되는 최고가격에 의하여 매각 가격을 정하여 매수인이 될 자를 결정하는 매각절차를 말한다.
- 공매기관 : 공매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매에 붙이는 것이 원칙이나 압류한 재산의 공매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 공매장소 : 공매는 지방자치단체의 구내에서 행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다.

(1) 공매의 절차

(가)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매각예정가격이란 공매에 있어서 공매재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정한 매각예정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공매재산의 최저가격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격을 참고 할 수 있다.

(나) 공매공고

공매 공고는 지방자치단체·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점 또는 지점의

적절한 장소에서 게시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공매 공고의 목적은 공매재산의 수요를 환가시켜 고가의 유리한 매수신청을 유인하는데 있으며 공매 공고에 의하여 지정기일에 공매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다) 공매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공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에 게시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채납자
- 납세담보물인 때에는 그 소유자
- 공매되는 자산상의 전세권, 질권,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기된 임차권자, 가등기권자, 입주자와 교부청구를 한 자 및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

(2)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가) 공매대행 근거법령

지방세 등 채납으로 압류된 재산은 아래의 근거 법령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나) 공매대행 의뢰절차

- 공매대행 의뢰서 송부
- 대행의뢰 사실의 통지
- 압류재산의 인도

(다) 공매대행의 해제요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매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라) 공매대금의 인계 및 공매수수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재산의 공매대행에 관하여 수령한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과 공매대금은 각각 수령즉시 압류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거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계좌에 납입하여야 하며 계좌 입금 시에는 즉시 그 사실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매대행 수수료는 체납처분비, 감정료, 공매공고료, 송달료, 기타 공매 관련 비용을 말하며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매각시에는 매각금액의 15/1,000(제한액 1,050만원)로하고
- 체납자가 자진납부 하였을 때는 금액의 5/1,000(제한액 350만원)의 금액으로 하며, 최저수수료는 3만원으로 하고 있다.
- 공매대행수수료는 공매대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고, 매각된 재산의 수수료 등은 공매 후 잔여대금을 환급시 공제한다.

나. 수의계약

수의계약이란 특수한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공매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정한 매각조건으로 특정한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즉, 압류재산의 매각을 입찰·경매 등의 경쟁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매수인과 가격을 결정하여 매각하는 계약을 말한다.

수의계약 매각요건은 다음과 같다.

-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
- 부패, 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격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때(생육, 생선, 야채류)

-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때
- 법령에 의하여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때
- 제1회 공매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

제4절 납부의무의 소멸

1. 납부의무 소멸

지방세 및 사용료 등 각종 징수금에 대한 납세(납부)의무는 금전(증권에 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표 등을 포함함)으로 납부하거나 증지첩부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된다.

다만, 부과권자와 납부의무자간에 발생한 채권채무관계가 장기간 이행되지 않고 불확정한 상태에 있게 되면 행정기관은 불필요한 관리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납부의무자 역시 경제적인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게 되므로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납부의무가 소멸되도록 하고 있다.

2. 제척기간의 경과

가. 제척기간의 의의

제척기간이라 함은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납세(납부)의무가 성립되면 납세(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는데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날(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 받은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면 고지서를 발부할 수 없게 되는데 이와 같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납세(납부)의무를 부여할 수 없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 한다.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를 논함에 있어서 그 부과처분의 내용이 적법

한 것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고지서가 제척기간 만료일 전에 납부의무자에게 송달되면 유효하고 제척기간 만료일을 경과하여 송달되면 그 부과처분은 납부의무가 없는 부과처분이 되어 무효가 된다.

나.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사용료 등의 세외수입금 납부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산일로 보아야 하겠다.

도로점용허가, 개발부담금 등과 같이 납부시기가 매년 특정되어 있지 않고 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시로 부과하는 세외수입금에 있어서는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보아야 하겠다.

예를 들면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은 무단점용을 개시한 날의 다음날, 하천점사용허가시에는 허가를 한 날의 다음날, 잡종재산을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허가한 날의 다음날, 개발부담금의 경우에는 개발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하면 부과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지철자의 하자로 인하여 부과취소처분을 받았거나, 불복결정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그 결정에 따라 재고지할 수 있다.

3. 소멸시효의 완성

가. 소멸시효의 의의

소멸시효는 징수에 관련된 것으로서 “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하며, 고지서가 발부되면 납기내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징수할 수 없는 데 이를 소멸시효라 한다.

소멸시효는 고지, 독촉 또는 압류를 하게 되면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면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서의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시효가 새로 진행되며, 압류의 경우는 압류를 해제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나. 소멸시효의 완성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지방재정법 제69조)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납부의무자는 납부의무가 소멸된다.

여기서 소멸시효 적용대상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므로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등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처분을 받아 금전적인 납부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되며, 회계간의 전입금, 이월금, 국비·도비 반환금, 순세계잉여금 등과 같이 행정기관내부의 행정절차에 의한 것은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징수금에 가산된 가산금, 증가산금, 체납처분비, 이자에도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

다. 소멸시효의 기산일

조세 및 징수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되는 바, 권리 즉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를 언제부터 기산할 것인가는 시효의 완성에 직접 관련되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자치단체의 장이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사용료 등의 납부 고지서가 납부의무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발생한다고 하겠으나 이때의 징수권은 수동적인 의미의 징수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것인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의사에 달려 있기 때문에 처분청은 납부기한까지 징수권을 유보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는 강제징수할 수 없고(납기전 징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야 비로소 강제적이고 적극적인 징수절차로서 독촉 및 체납처분에 들어가게 되므로 납부기한이 경과하여야만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적극적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인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조의3)하여야 하겠다.

라. 소멸시효의 중단

시효가 중단된다 함은 소멸시효가 진행되던 중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미 경과한 기간의 효력이 상실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효가 중단되면 그 때부터 시효는 새로 진행하게 된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지방세법 제30조의6).

· 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고지

※ 지방세법상 납부와 납입은 구별되는 바, 납부는 납세의무자가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하고, 납입은 특별징수의무자가 과세권자를 대신하여 납세의무자로부터 조세를 징수하여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 독촉, 납부(납입)의 최고

- ※ 민법상 최고의 의미는 독촉의 의미와 상통하나, 지방세법에서 최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독촉하는 것을 의미한다.

- 교부청구

- 압류

위와 같은 사유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후 납부기간의 경과 등 다음과 같은 기간이 경과하면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된다.

- 고지한 납부기간 또는 고지한 납입기간

- 독촉, 납부 또는 납입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 교부청구중의 기간

-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마. 시효의 정지

시효의 정지라 함은 일정한 기간동안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으로서 시효정지사유가 종료되면 이미 진행된 시효와 시효정지 이후의 시효 진행기간을 합하여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면 시효가 소멸됨을 말한다.

시효가 정지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지방세법 제30조의6제3항).

-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제5절 결 손 처 분

1. 결손처분의 의의

결손처분이라 함은 납세(납부)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되거나 또는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 그리고 압류할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체납세액에 충당할 잔여액이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하게 되는 등 징수할 수 없는 지방세(징수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조세(징수금)채권의 징수절차를 정지 또는 유보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2. 결손처분의 요건 및 절차 (지방세의 경우)

가. 시효결손 (지방세법 제30조의5)

- 최초납부기한의 익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당해 징수권이 소멸된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당해 중단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재차 5년이 경과한 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납부 또는 납입에 대한 고지
 - 독촉 또는 납부최고(제1차에 한함)
 - 교부청구
 - 압류 등

나. 불납결손

- 체납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무자력 등)이 입증될 때
 - 회사정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될 때

다. 결손처분의 절차 (서울시 시세부과징수규칙)

- 체납자 행방조사(시세부과징수규칙 제120조)
 - 세입담당공무원은 결손처분 및 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전산조회하여 거주 여부를 확인조사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전출지에 따라 추적조사를 하여야 한다.
 - 체납된 조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행방 등을 조사하지 않고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체납자 재산조사(시세부과징수규칙 제121조)
 - 세무공무원은 결손처분자 및 부과철회자에 대하여 사후에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 취소 또는 부과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체납된 조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행방 등을 조사하지 않고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결손처분의 결정(시세부과징수규칙 제122조)

-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조사하였으나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확인되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결손결정결의서와 결손처분표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
- 소멸시효 경과시 반드시 결손처분하여야 한다.

○ 결손처분의 취소(시세부과징수규칙 제123조)

- 결손처분을 한 후에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연도폐쇄 후에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징수부 이월액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이월액에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을 기재 하여야 한다.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납세의 부담을 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취소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보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사례: 결손처분취소의 효력 <대법원 95누46043, 1996.3.12> -

○ 부당한 결손처분 금지(시세부과징수규칙 제124조)

- 재산 및 행방조사를 소홀히 하여 현금징수가 가능한 체납액의 결손처분
- 계속사업자에 대한 고의적 결손처분

※ 예외)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압류부동산 중 선순위채권 과다로 체납처분에 실익이 없고 신고내용이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만 있는 경우

○ 부분결손(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4조)

- 부분결손이라 함은 채납자의 소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이해관계자의 강제집행에 참가하여 채납액을 징수함에 있어 당해 재산의 매각액 또는 추산가액이 채납자의 전체 채납액을 충당하기에는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납액의 일부를 결손처분하는 행정절차이다.
- 부분결손의 절차
 - 압류된 재산 등에 대하여 정확한 우선채권조사가 선행되어 충당가능성이 없는 채납액을 파악
 - 결손처분의 본절차기준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부분결손 처분에 대하여 사후관리 철저
- 한도 : 재산의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추산가액을 파악한 후 추산가액에서 채납충당 가능액의 150%에 상당하는 채납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분결손할 수 있다.

[예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매각 추산가액 : 200백만원(선순위 채권 150백만원)· 현재의 채납액 : 150백만원· 충당가능액 : 50백만원· 부분결손가능액 : 150백만원-(50백만원×150%) = 75백만원 |
|--|

라. 결손처분의 효과

결손처분은 처분청이 결손처분 사유가 있을 때 징수행위를 잠정적으로 중지 유보하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납부의무자에게 결손

처분사실을 통지할 의무는 없으며,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납세의무 또는 납부의무가 존속하게 된다.

이와 같이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징수행위가 중지·유보되는 효과가 있으나 결손처분을 한 기간에 대해서도 가산금·증가산금은 가산되며, 소멸시효도 중단 없이 계속 진행하게 된다.

결손처분은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결손처분기간 중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되며, 지방세법 제30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취소에 따른 체납처분시 결손처분시점 이후의 증가산금은 포함됨

- 사례: 결손처분과 가산금(행정자치부 세정13407-504, 2001.5.11) -

3. 사후관리

가. 의 의

결손처분은 체납세액의 징수를 한시적으로 유보하고 체납자의 재산이 발결되거나 행방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징수하기 위하여 기 결손처분된 체납자의 재산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절차를 말한다.

나. 사후관료령 (시세부과징수규칙 제125조)

- 결손처분자에 대하여 사후관리결과 결손처분 당시의 재산을 은닉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결손처분된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한다.

-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기간 만료시까지 6월마다 계속 사후관리(수색조서를 작성하여 결손처분한 경우)

<재산조사의 내용>

- 부동산조사(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과세자료 및 탐문)
 - 차량조사(자동차관리 전산망 이용)
 - 거주지조사(주민등록전산자료 및 탐문)
 - 직장조사(근로소득세 납부자료 및 탐문)
 - 전화, 전기, 수도 등 사용료 조사(해당기관의 자료이용)
 - 소득조사(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세 납부자료, 기타)
 - 금융자산 조사(채납자 거래은행 및 탐문조사)
 - 기타 임차권 · 전세권, 각종 권리와 채권조사(탐문)
- 사후관리과정에서 결손처분된 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속행
 - 재산압류통지서 통지서 비고란에 결손처분 시기 및 그 사유를 기재

지방 세외수입 관련 판례

○ 과 징 금

○ 과 태 료

《과징금 법원판례》

1.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

《판결요지》 - 대법원 2001. 7. 27 선고99두 9490판결

① 제재적 행정처분인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함.

②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이해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함.

③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만화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도서 대여업자가 그 고시일로부터 8일 후에 청소년에게 그 만화를 대여한 것을 사유로 그 도서대여업자에게 금 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그 도서대여업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만화를 청소년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의 무의 해태를 탓하기는 가혹하다는 이유로 그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2. 과징금 처분기준의 법적성격

《판결요지》 - 대법원 2001.3.9 선고 99두 5207판결

① 구 청소년보호법(1999.2.5법률제5817호로개정되기전) 제49조제1항, 제2항과 동법시행령(1999.6.30대통령령제16461호로개정되기전)제40조 별표6의 위반행위의 중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 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임

②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함.

3. 과징금 부과처분 근거규정을 잘못 기재한 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 대법원 2000.12.22 선고99두 11929판결

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 처분에 있어 원칙적으로 제1항이 적용되고, 제3항이나 제4항은 제1항이 정한 유예기간보다 더 유리한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가 주장·입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그 위반행위의 종별을 같은 법 제11조 제4항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그 위반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는 단순한 적용법령의 오류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경우 처분청의 적용법령 변경이 없더라도 법원은 근거법령으로 같은법 제1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거기에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함.

②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전에 이미 명의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자도 같은 법제11조의실명등기의무가 있는 기존명의신탁자에 해당함.

③ 구 외국인토지법(1994.1.7 법률제4726호 외국인의 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제5조, 같은법시행령(1987.8.14 대통령령 제122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외국인의 토지취득및관리에 관한 법률(1998.5.25 법률제5544호 외국인토지법으로 전문개정되기전의 것) 제6조 등 관

런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이 내국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그 판결을 받을 당시 위 법령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토지취득 허가를 받은바 없다면 그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신청시에는 그 허가를 받은 허가증을 첨부하여야하나 외국인의 실명등기에 위와 같은 제한이 있다고 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명의신탁당시에도 외국인이 국내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허가를 받아야하는 제한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제한이 명의신탁 후 법률의 개정 또는 운영상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할 수도 없어서 위의 사유로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실명등기의 유예기간이 연장된다고 할 수 없음.

4. 과징금 부과권자와 전세버스에대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

《판결요지》 - 대법원 2000.2.8 선고 97누3767판결

①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12.13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제1항은 교통부장관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제2항은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은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서울시 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 별표제17호나목에 의하면 같은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권한이 구청장에게 재위임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음.

②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31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1의 제10호 다목 등의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 자동차운수규칙 별표1의 각 준수사항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의 이 법에 의한 명령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1 제10호 다목 소정의 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버스전용차로위반행위는 구 자동차운수규칙별표1 제2호 소정의 차선위반에 해당하므로 운송사업자의 전세버스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였다면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도로교통법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님.

5. 과징금 부과액이 법정최고액을 초과한 경우 그 취소범위

《판결요지》 - 대법원1998.4.10. 선고98두 2270 판결

①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수단으로 사업 정지를 명 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다면 그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권이 부여되었다 할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 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다(금100만원을 부과한 당해 처분중 금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며 그 일부분만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6.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겸 운수종사자에게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여부

《판결요지》 - 대법원 1995.11.10 선고 98누 10228 판결

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7 제1항, 제3항의 입법취지와 당초 위 각 규정이 자동차운송사업자와 그 운수종사자가 다른 경우를 예정하고 입법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개인택시의 운송사업자가 대리운전자를 고용하여 그 대리운전자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33조의7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 제1항, 제31조 제1항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1 제2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금 300천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개인택시의 운송사업자가 동시에 운수종사자인 통상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이자 운수종사자가 운수종사자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33조의4 제1항,제2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3, 같은법시행규칙 제30조의10 제1항 별표3의3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전 자격정지 5일을 부과함은 변론으로 하고, 이를 같은 법 제33조의7 제3항 위반으로 보아 위와 같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7. 경합된 위반행위에 대해 1개의 과징금 부과처분시 부과방법과 상한액

《판결요지》 - 대법원 1995.1.24 선고 94누 6888판결

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은 자동차운수사업자가 같은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면허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 등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의2 제1항은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정지명령에 갈음하여 금500천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회 경합된 위반행위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정지명령을 내림에 있어서는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함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도 그것이 비록 수대의 차량이 수회 위반행위를 한 데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1회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금500천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함.

②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2항에 의거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1, 제2항은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기준금액을 정하고 있는바, 그 기준금액은 1회의 위반행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수회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그 기준에 따른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수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개의 부과처분이 행하여질 경우에는 그 부과할 과징금의 액수는 위 법령상의 각 해당 기준금액을 병과하여 산정하되 그 최고한도액은 위 인정의 금500천원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1개의 부과처분에서 행해질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한도액이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위 법령상의 기준금액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님.

8. 운전기사의 위반행위로 운수회사에 대한 과징금처분시 운전기사가 취소 요구를 할 수 있는지

《판결요지》 - 대법원 1994.4.12 선고93누 24247판결

- ①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함.
- ② 회사의 노사 간에 임금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운전기사의 합승행위 등으로 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면 당해 운전기사에 대한 상여금지급시 그 금액 상당을 공제하기로 함으로써 과징금의 부담을 당해 운전기사에게 전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당해 운전기사의 합승행위를 이유로 회사에 대하여 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말미암아 당해 운전기사의 상여금지급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당해 운전기사로서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9. 1회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최고한도액

《판결요지》 - 대법원 1993.7.27 선고93누 1077판결

- 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은 자동차운수사업자가 동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면허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 등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1조의2 제1항은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사업정지명령에 갈음하여 5,000천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회 경합된 위반행위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정지명령을 내림에 있어서는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함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도 비록 수대의 차량이 수회 위반행위를 한데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1회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5,000천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함.

②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조건 등에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수단으로서 사업정지를 명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키로 하였다면 그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고, 과징금 최고한도액 5,000천원의 부과처분만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여길 경우 사업정지쪽을 택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는 없음.

10. 군 공무원의 종용으로 정차위반하여 도지사가 과징금 부과시 신의칙 위반여부

《판결요지》 - 대법원 1991.7.23 선고90누 5306판결

- ① 군 산하 관계공무원의 종용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정차지 외 정차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도지사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②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위반행위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극히 경미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같은 항 또는 같은법 제31조의2 제1항의 사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임
- ③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원고의 정차지 외 정차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1항,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징금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위의 위반행위에 이르렀고 그때의 상황에 미루어 이를 거부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웠으며 그 위반행위도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를 종용한 공무원은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것이라고 본 사례

11. 사업구역 밖에서 운행한 차량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적부

《판결요지》 - 대법원 1990.3.9 선고 89누 3878 판결

① 자동차운수사업자인 원고의 소유차량이 사업구역 아닌 인접 진주시 상주하여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것이 아니고 원고의 사업구역인 진양군의 지리적,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승객의 편익을 위하여 그 요청에 따라 자기 사업구역 외에서 운행한데 불과하다면 그러한 운행에 대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함.

《과태료 법원판례》

1.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재판

《판결요지》 - 대법원 2001.5.2 2001마 1733결정

①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중 검사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와 제250조중 검사에 관한 부분이 아닌 규정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그 증인에게 과태료재판에 관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 정식재판으로 하는 방법과 증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약식재판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석되고, 당사자는 정식재판에 대하여는 바로 민사소송법 제282조 제2항에 의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나, 약식재판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여 정식재판을 받고 그에 대하여 다시 민사소송법 제282조 제2항에 의한 즉시항고를 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해석됨

② 불출석 증인에 대하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내린 과태료 결정은 증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1항의 약식재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증인이 그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제출한 즉시항고장은 그 제목에 불구하고 같은조 제2항의 이의신청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관할법원은 약식재판을 한 법원이 됨.

2. 과태료 부과시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적용여부

《판결요지》 - 대법원 2000. 8. 24 2000마 1350결정

① 과태료의 제재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므로 그 성질상 처음부터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에 상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이에 상당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일단 한번 과태료에 처해질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결정 후 징수의 시효, 즉 과태료 재판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의 금전채권으로서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그 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이지만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벌권을 국가의 금전채권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정해진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이 과태료의 처벌권에 적용되거나 준용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임

3.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과태료 재판에서 처벌불가

결정이 있는 후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판결요지》 - 대법원 2000. 3. 8 99마 317 결정

- ① 건축법 부칙(91.5.31) 제6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건축법 제56조의2를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 과태료와 개정건축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은 그 최고한도와 부과횟수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처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임
- ②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구 건축법(99.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과태료 재판에서 당사자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당해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과태료에 처할 수는 없음

4. 과태료 산정기준인 과세시가표준액을 당사자의 진술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결요지》 - 대법원 1998. 12. 23. 98마 2866 결정

- ① 과태료처분의 재판은 법원이 과태료에 처하여할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고 관할 관청의 통고 또는 통지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이미 행한 통고 또는 통지의 취하 내지 철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하. 철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개시. 진행하는데 장애가 될 수 없음

② 구 건축법(92. 6. 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건축법시행령 (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4항 (별표14)에서 산정 기준으로 삼고있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 내지 과세시가표준액에는 사건 본인이 위반행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자인하는 금액도 포함됨

③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관할 관청이 부과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행정관청 내부의 부과기준에 기속됨이 없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그 동기, 위반의 정도, 결과 등 여러 인자를 고려하여 재량으로 그 액수를 정할 수 있으며 항고법원이 정한 과태료 액수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그것이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한 그 액수가 많다고 다투는 것은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음.

5. 허위진술자의 과태료재판 청구권

《판결요지》 - 대법원 98. 4. 13 자 98마 413결정

① 선서한 당사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이유로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과태료 제재의 신청을 한 경우 과태료의 제재에 처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서 상대방 당사자에게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외에 과태료 재판을 할 것을 신청할 권리는 없음.

6. 과태료 처분 대신 개정법령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판결요지》 - 대법원97.4.28 96마 1597 결정

① 구 건축법 (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항, 제4항, 제5항과 개정 건축법(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83조 제1항, 제4항 내지 제6항, 제82조 제3항, 제4항의 규정들을 대비하고, 경과규정인 개정 건축법상 부칙 제6조의 규정 취지를 종합해 보면 개정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은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개선 한 것으로서 개정 전후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고, 행정관청이 구 건축법 제56조의2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잘못하여 개정 건축법 제83조 제1항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과태료에 관한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하는 것으로서 행정관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그에 관한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 받은 법원으로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구 건축법 제56조의2에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②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와 개정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그 최고한도와 부과 횟수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처하였다면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7. 풍속영업 휴업 후 영업재개시 과태료 부과여부

《판결요지》 - 대법원 94. 4. 27 자94마 257 결정

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1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시휴업 하였다가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에 처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됨.

8. 영조물관리하자로 인한 손해와 과태료 청구권 배제

《판결요지》 - 대법원 90. 11.13 90 다카 25604판결

①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같은법 제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해석상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반드시 배제되지 아니함.

9. 건축법 위반행위를 사후에 시정한 경우 과태료부과처분 여부
《판결요지》 - 대법원 1990. 10. 20. 90마 699 결정

① 건축법 제56조의2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일단 그 위반행위가 이루어지면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이를 시정하였다 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당연히 벗어나는 것은 아님.

② 건축법 제56조의2에 의한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위반자의 불복으로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는 절차는 부과권자인 행정관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한 이상 부과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건축법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가지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음.

10. 조례에 의한 과태료 등 징수시 지방세법상의 과오납금 환부이자 규정도 준용되는지

《판결요지》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 613 판결

① 지방세법의 환부이자에 관한 규정(제46조, 제47조등)의 추지나 서울시 급수조례중의 수도요금 등에 관한 여러 규정(제23조, 제37조등)을 아울러 생각하여 보면 같은 급수조례 제37조는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 징수 자체뿐만 아니라 징수에 부과되는 과오납금의 환부이자 등에 관하여서까지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취지라고 새겨야함

11.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한 후의 과태료 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 대법원 1982.7.22 82마 337결정

① 비송사건절차법 제279조에 의하면 동조 제1항의 약식재판에 의한 과태료결정은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당사자 또는 검사로부터 이의신청

이 있으면 그 재판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그 결정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음.

12. 과태료금액 결정의 한계

《판결요지》-대법원1971.3.16 70마796 제1부결정

① 법원이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제한 범위 내에서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에 의하여 그 금액을 정하면 족한 것이고 과태료금액의 다과를 정하는 기초로서 참작한 사정까지를 설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13. 과태료 부과시 고의나 과실요건의 고려여부

《판결요지》-대법원1970.10.31 70마 703결정

① 구무역거래법 (67.1.16 법률제1878호) 제30조의 과태료는 행정질서법의 하나이며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세 외 수 입

2008년 2월 일 인쇄

2008년 2월 일 발행

편 집 :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기획지원부

집 필 : 행정자치부 교부세팀
담당관 한상정

교 정 : 경기도 이영
경기도 신재은

인 쇄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신생인쇄조합
TEL : (02) 426-4415
FAX : (02) 429-9562

※ 이 책자의 전문(全文)은 지방혁신인력개발원 홈페이지
(www.logodi.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비매품>>

2008 공통교재
세외수입